

#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2002. 9



|연구원

## 序 言

연결납세제도는 법률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경제적 또는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기업그룹을 마치 하나의 법인인 것처럼 간주하여 그 기업그룹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제이다. 연결납세제도는 OECD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현재 2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1997년부터 허용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지주회사제도를 세제면에서 뒷받침하는 연결납세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지주회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기업이 경영전략상 분사화 또는 사업부제 중 어느 하나의 사업형태를 선택함에 있어서 세제는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이다.

정부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의해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많으며, 둘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대기업이 부실 자회사를 지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셋째, 연결납세제도를 악용하여 조세회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재계와 인식을 같이하게 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여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세수감소가 어느 정도가 될지를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

특통산형과 손익대체형으로 구분되는 주요 선진국의 연결납세제도를 파악해 보고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김진수 박사와 경희대학교의 이준규 교수가 집필하였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의견을 주신 경희대학교의 최명근 교수와 본원의 손원익 박사 및 익명의 두 논평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또한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 및 통계처리에 수고한 심재진 주임연구원, 이은정 연구원, 장정순, 변경숙 연구조원, 그리고 교정을 맡아준 출판담당자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2년 9월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宋大熙

#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I. 주요내용

### 가. 배경

연결납세제도는 모·자회사로 이루어진 기업그룹을 하나의 법인인 것처럼 간주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제도로서 현재 OECD 회원국 중에서는 3분의 2 정도가 시행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허용되면서부터였다. 정부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기업의 입장에서 분사화 형태가 사업부제 형태에 비해 세제상 불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기업이 경영 전략상 분사화 또는 사업부제 중 어느 하나의 사업형태를 선택함에 있어서 세제는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러한 주장의 핵심이다.

그 동안 정부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 대기업이 부실 자회사를 지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조세회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이 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연결납세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도

입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이제는 지주회사제도의 도입 초창기와는 달리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재계와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다.

#### 나. 주요국의 연결납세제도

연결납세제도는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대표적인 소득통산형으로서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그룹에 대하여 각 법인의 소득을 통산하고 각 법인간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내부이익을 이연함으로써 연결과세소득 및 연결세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소득통산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그룹의 경제적 일체성을 주목하여 그룹에 속하는 개별회사의 손익을 통산하여 산출한 연결베이스에서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영국과 독일의 연결납세제도는 미국의 소득통산형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손익대체형이다. 손익대체형의 특징은 기업그룹의 경제적 일체성에 주목하기보다는 기업그룹에 속하는 개별회사의 손익을 다른 개별회사에 대체하고, 대체 후의 각 개별사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도록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영국의 연결납세제도의 핵심이 되는 제도는 그룹릴리프(group relief)제도이다. 그룹릴리프는 75% 그룹과 콘소시엄 내의 이익회사가 기업그룹 내 다른 결손회사의 당기에 발생한 결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체받아 자사의 총이익과 상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독일의 연결납세제도는 자회사가 경영에

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사실상 모회사의 한 사업부문에 불과한 경우 자회사의 손익을 모회사에 귀속시키는 계약을 2개의 기업 간에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자회사의 순손익을 그대로 모기업에 이전하는 방법을 통해 자회사손익을 원칙적으로 ‘零(0)’으로 만드는 간편한 제도이다.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의 경우 국가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대체로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보다 연결납세를 하는 목적에 이론적으로 보다 적합한 형태라는 장점이 있다. 이는 소득통산형이 기업그룹의 경제적 일체성을 중시하는 세제로서 손익통산, 결손공제, 내부이익이연 등을 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손익대체형은 연결납세의 목적에 이론적으로 부합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는 대체로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보다 간단·명료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손익대체형이 기업그룹의 과세를 간편하게 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소득통산형은 제도의 성격상 복잡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연결납세의 세액증감효과

본 보고서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세수 감소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추정해 보았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초기에 지주비율을 100%로 하는 경우 이 지주비율을 2000 회계연도에 적용하여 연결납세를 한다고 가정하면 5,169억원의 세수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01 회계연도에 적용하여 연결납세를 한다고 가정하면 2,698억원의 세수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결납세로 인한 세수감소는 2000년도의

법인세 세수 17조 8,784억원의 2.9%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며, 2001년의 법인세 세수 16조 9,751억원의 1.6%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연결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았다.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주비율을 100%로 할 경우 법인세 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세수가 2000년의 경우 750억원, 2001년의 경우 953억원 증가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2~5% 정도의 연결부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결부가세의 부과를 통해 연결납세로 인한 세수감소를 모두 보전하려 한다면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진다는 점과 미국과 일본 모두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초기에 2%의 연결부가세를 부과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2%의 연결부가세를 제안하였다.

## II. 정책시사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모두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의 두 유형 중의 하나를 따르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도 새로운 유형의 연결납세제도를 모색하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형태의 소득통산형 연결납세방안과 손익대체형 연결납세방안을 각각 모색해 보았다.

먼저 본 보고서에서는 영국형이나 독일형보다 훨씬 더 간편한 형태의 손익대체형 연결납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연결범위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1)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의 범위는 지주비율 100%로 한다. 2) 지주비율을 충족하는 자회사 모두를 연결납세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원하

는 자회사만 연결납세하도록 한다. 3) 반드시 모회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만 연결납세하도록 한다. 4) 외국자회사는 연결납세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 이 제도는 모·자회사 간에 단년도만 연결납세를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동안 연결납세를 계속하도록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 과세연도가 다른 경우 사업연도의 대응기간에 안분하여 손익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과세연도를 통일할 필요는 없으며, 회계방법에 대해서는 연결그룹 구성회사별로 다른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손익대체 방법은 자회사의 이익 또는 손실을 모회사로 이전하여 모회사의 손실 또는 이익과 합산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하도록 한다.

다섯째, 자회사의 손익을 모회사에 대체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세액이 결정되면 모회사가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자회사의 이익을 모회사에 대체하는 경우는 자회사도 연대납부의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회사의 손실을 모회사에 대체하는 경우 자회사는 연대납부가 없는 것으로 한다.

여섯째, 연결납세로 인한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2%의 연결부가세를 부과한다.

다음으로 미국정보다 간편한 형태의 소득통산형 연결납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연결범위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1)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를 모두 연결납세하도록 강제한다. 2) 외국자회사는 연결납세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3)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지주비율을 100%로 한정하고 최근 스톡옵션제도 및 종업원지주제도가 부분적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연결납세의 적용 여부를 기업그룹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며, 계속적용을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과세연도가 다른 경우 사업연도의 대응기간에 안분하여 손익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과세연도를 통일할 필요는 없으며, 회계방법에 대해서는 각 회사에 따라 어느 정도 다른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득통산의 방법은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의 규정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개별과세소득에 대하여 연결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가하고, 수정이 가해진 개별과세소득의 합산액에 연결조정을 가하여 연결과세소득을 산정하고, 이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연결산출세액에서 연결기준으로 계산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연결세액을 산정하며 그 연결세액을 개별법인에게 배분한다.

다섯째, 재고자산을 포함한 모든 내부거래를 내부거래손익의 이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양도자측 손익이연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연결결손금의 처리는 1) 결손이 과세소득보다 커서 통산의 결과 결손금이 남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세액은 0이 되고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다. 2) 연결그룹의 구성법인이 된 이후에도 당해 연결그룹이 연결납세신고를 선택하지 아니하여 각 구성법인들이 개별납세신고를 한 경우, 각 구성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하여 그 이후에 연결납세를 하는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연결그룹 구성법인이 되기 전에 개별기업에서 발생

한 결손금은 당해 기업의 과세소득으로 인하여 연결소득이 증가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모회사에서 결손이 발생한 이후에 모회사가 자회사를 취득하는 경우 연결납세신고시 연결과세소득에서 당해 모회사의 결손이 제한적으로만 공제(연결과세소득 중 당해 모회사 및 결손발생 당시에도 구성법인이었던 자회사의 기여액을 한도로 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자회사의 장부가액의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연결대상 자회사가 당해 자회사 주식을 매각할 때에 모회사에 실현된 손익이 주식매각손익으로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여덟째, 연결세액에 대해서는 연결그룹의 모회사가 납세의 무자가 되고 연결그룹 구성회사들은 연대납부의무를 지도록 한다.

아홉째, 연결납세로 인한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손익 대체형에서와 같이 2%의 연결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가 연결납세의 목적에 이론적으로 부합하고, 조세의 공평성 유지, 조세의 중립성 유지, 연결회계제도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손익대체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완벽히 갖추려면 세법이 너무 복잡하게 되고 세무당국의 행정비용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문제를 고려하여 손익대

체형 연결납세제도를 차선(second best)의 방안으로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목 차

I. 서 론 .....	17
II. 연결납세제도의 의의 .....	19
1. 연결납세제도의 유형 .....	19
2.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필요성 .....	20
3.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존의 연구 .....	29
III. 주요국의 연결납세제도 .....	33
1. 미 국 .....	33
2. 영 국 .....	60
3. 독 일 .....	69
4. 일 본 .....	78
5. 시사점 .....	108
IV. 연결납세의 세액증감효과 .....	118
1. 세액증감의 요인 .....	118
2. 세액증감효과의 추정 .....	130
V.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향 모색 .....	142
1. 연결납세제도의 기본방향 .....	142
2. 손익대체형 연결납세방안 .....	145

3. 소득통산형 연결납세방안 .....	164
4. 종합적 의견 .....	198
VI. 요약 및 결론 .....	204
참고문헌 .....	209

## 표 목 차

<표 II-1> OECD 국가의 연결납세제도 운영 현황 .....	19
<표 III-1> 주요국의 연결납세제도 비교 .....	112
<표 IV-1>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 .....	122
<표 IV-2> 연결납세제도가 조세부담에 미치는 직접효과 .....	129
<표 IV-3> 기업그룹의 현황 .....	133
<표 IV-4> 개별납세의 법인세부담액 .....	135
<표 IV-5> 결손통산에 따른 세액감소효과 .....	137
<표 IV-6> 배당과세배제로 인한 세액감소효과 .....	139
<표 IV-7> 연결납세대상 지분율에 따른 기업집단의 수 .....	141
<표 IV-8>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액증감효과 .....	141
<표 V-1> 개별과세소득(2003 사업연도) .....	157
<표 V-2> 개별과세소득(2004 사업연도) .....	158
<표 V-3>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연결부가세율 .....	183
<표 V-4> 연결정산표(2003 사업연도) .....	191
<표 V-5> 연결정산표(2004 사업연도) .....	195

## 그림목차

[그림 V-1] 연결과세소득 계산의 개념도 .....	172
-------------------------------	-----

## I.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많은 정책이 시행되었다. 1998년 1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서 재벌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이 설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이 추진되었다. 기업구조조정의 내용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부문의 설정과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권의 책임 강화 등이었다.

1999년 4월부터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한 것도 기업이 경영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돕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주회사제도를 세제면에서 뒷받침하는 연결납세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지주회사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즉, 정부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기업의 입장에서 분사화 형태가 사업부제 형태에 비해 세제상 불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업이 경영전략상 분사화 또는 사업부제 중 어느 하나의 사업형태를 선택함에 있어서 세제는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연결납세제도란 모·자회사로 이루어진 기업그룹을 하나의 법인인 것처럼 간주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벨기에, 캐나다, 체

코, 그리스, 아이슬랜드, 이탈리아, 스위스, 터키 등 10여개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들이 오래 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2002 회계연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연결납세제도에는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이 있다. 대표적인 소득통산형이 미국형이며, 손익대체형으로는 영국형 및 독일형이 있다.

지주회사제도의 도입 초창기와는 달리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도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정부와 재계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 현재 부실기업의 퇴출을 촉진하고 있는 실정에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대기업이 부실 자회사를 지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연결납세제도를 악용하여 조세회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 때문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도입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본 보고서에서는 제 I 장의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정의 및 유형, 그리고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제 III 장에서는 주요국의 연결납세제도를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소득통산형인 미국형과 손익대체형인 영국형 및 독일형, 그리고 최근에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일본형을 각각 살펴보고 있다. 제 IV 장에서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세액이 어느 정도 증감하는지를 추정해 보았다. 제 V 장에서는 이상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어떤 유형의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VI 장에서는 본 보고서를 요약하고 있다.

## II. 연결납세제도의 의의

### 1. 연결납세제도의 유형

연결납세제도는 법률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경제적 또는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기업그룹을 마치 하나의 법인인 것처럼 간주하여 그 기업그룹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제이다. 즉, 기업의 사업부분이 자회사로서 분사된 기업그룹이나 순수지주회사가 소유한 기업그룹처럼 경제적 일체성을 가지고 경영되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기업그룹에 대해서는 각 법인을 납세단위로 과세하지 않고 그룹전체를 하나의 납세단위로 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연결납세제도는 미국 및 프랑스 등이 시행하고 있는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와 영국 및 독일 등이 시행하고 있는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의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될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

<표 II-1> OECD 국가의 연결납세제도 운영 현황

유형	국가
소득통산형	미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 포르투갈, 멕시코, 룩셈부르크
손익대체형	영국, 독일,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핀란드
미 도입	한국, 이탈리아,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 체코, 그리스, 아이슬랜드, 터키

는 OECD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현재 2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 등이 아직도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는 기업그룹의 경제적 일체성에 주목하여 기업그룹을 단일주체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연결그룹에 속하는 개별회사들의 손익을 통산하여 산출한 연결베이스에서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이다.

반면에 영국 및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는 기업그룹의 경제적 일체성에 주목하기보다는 기업그룹의 과세를 간편하게 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업그룹에 속하는 개별회사의 손익을 다른 개별회사에 대체하고, 대체 후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구조이다. 손익대체형에는 개별회사의 결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의 이익회사에 대체하는 유형이 있고, 자회사 손익의 전액을 모회사에 대체하여 자회사의 손익을 ‘零(0)’으로 하는 유형이 있다. 영국의 손익대체형이 전자에 해당하며, 독일의 손익대체형이 후자에 해당한다.

## 2.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필요성

### 가.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긍정적 측면

#### 1) 세부담의 공평성 유지

세부담의 공평성이란 조세의 부담이 각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조세의 원칙이다. 조세

부담의 공평성은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으로 나누어진다. 수직적 공평성은 담세력이 다른 납세자는 서로 다른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수평적 공평성은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납세자는 동일한 금액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개념이다.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인세에 있어서 실질소득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여기에서 실질소득이란 법적 개념이 아닌 경제적 개념으로서, 만일 법적으로는 독립된 수개의 법인이 모인 기업그룹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단일 기업체인 경우 이 기업그룹에 속한 개별 법인의 조세부담액의 합계가 당초부터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될 때의 조세부담과 다르다면 수평적 공평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개별법인은 법적으로는 독립주체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주식지배를 통하여 모회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모회사의 일부인 지점·사업소와 같이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모회사와 이에 귀속되는 자회사는 실질적으로 단일주체가 되는 것이다. 결국 이들 기업그룹은 단일법인으로 경영되는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연결납세제도를 통하여 그 기업그룹의 구성회사가 결합한 상태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의 수평적 공평성에 부합하는 것이다.<sup>1)</sup>

연결납세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미국에서의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조세부담의 공평성 유지가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제1차 세계대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초과이윤세가 제정되었는데 기업들이 이러한 전시초과이윤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분산하는 행위가 성행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었

1) 이우택(2000). p. 221.

던 것이다. 즉, 법적으로는 독립된 자회사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동일한 통제하에 있는 하나의 기업그룹에 대해서는 기업그룹 전체를 단일주체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이유였다.

## 2) 세제의 중립성 유지

앞에서 논의한 세부담의 공평성 유지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세제의 중립성 유지와 연결된다. 단일기업으로 경영하는 경우와 지주회사로 묶은 여러 기업군으로 경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세액의 차이가 없다면, 기업입장에서는 경영활동에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어떠한 조직형태를 취할 것인지는 기업의 자유선택에 맡겨야 하며, 세제가 과세목적 이외에 기업활동에 주는 영향은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4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허용되면서 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기업이 경영전략상 분사화 또는 사업부제 중 어느 하나의 사업형태를 선택함에 있어서 세제는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기업의 입장에서 분사화 형태가 사업부제 형태에 비해 세제상 불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 적자생존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자본과 인력의 재분배를 행하고 신규분야에 진출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재구축하고 있다. 즉, 독립채산제나 책임

의 명확화에 의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부문의 분사화나 합병 등의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주회사가 허용된 것도 기업의 구조조정이 경영전략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조세법하에서는 동일한 그룹 내에서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간에 손익통산이 불가능하므로 분사화 이전에 비하여 세부담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신규분야에의 진출 또는 적자사업부문의 재편을 위하여 모회사의 사업부문을 분사화하여 사업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수년간은 사업회사의 적자가 예상된다. 현행 조세법하에서는 이러한 자회사의 적자를 모회사의 적자와 상계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분사화를 하는 경우 분사화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결과적으로는 자회사 전체로서의 조세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제상의 불이익 때문에 기업이 전략적인 선택으로서의 분사화를 단념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기업조직의 선택에 대하여 세제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지주회사의 경우 경제적으로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법적 실체이기 때문에 개별 법인별로 과세가 된다.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관계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기업이 자유로운 경영형태를 선택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sup>2)</sup>를 신설하였으나,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를 통한 조정만으로는 지주회사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

2) 법인세법 제18조의 2.

### 3) 연결회계제도의 정착

우리나라는 1997년 말 경제위기를 맞은 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가 우리 경제의 신뢰회복과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는 기업집단에 대한 경영내용 파악, 기업의 해외증권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기업집단의 여신관리 등에 그 유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하여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결납세제도는 이러한 연결재무제표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은 대부분 기업지배구조가 불분명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는 실질소유경영자, 특수관계인,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계열회사를 소유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집단을 모두 지배하는 절대적인 지배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종속회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실질소유경영자가 중심이 되어 있지만, 그도 지배권을 행사할 만큼 절대지분을 소유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을 통한 위장분산, 계열회사를 통한 소유 등을 통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sup>3)</sup>

이러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지배구조하에서는 사실상 연결재무제표가 정착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상 동일한 경영통제하에 있는 단일 경제실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집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지배구조하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압력과 간섭이 필요하게 된다. 연결납세제도는 이러한 관

---

3) 이우택(2000), p. 24.

점에서 연결재무제표 정착을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기업집단은 집단 내 기업 간 손익상계라는 이점으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강화하게 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 4) 세제의 선진화

최근 사회 전반적인 제도의 국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제도 역시 선진화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세제의 국제화 및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회사와 자회사간 손익을 통산하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OECD에 가입해 있는 30개 국가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2년 앞서 지주회사제도를 허용한 일본도 2002년 4월부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국가마다 자국 실정에 맞게 연결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모회사, 자회사 간의 경제적 일치성을 인정하고 세제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손익통산을 인정하는 등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OECD에 가입한 이후 회원국 수준에 맞는 조세제도의 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기업들이 외국의 경쟁기업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의 선진기업들은 연결납세제도를 통하여 조직구조의 선택에 융통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연결기업그룹 내 기업 간의 손익통산으로 인하여 세부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기업과 경쟁하는 내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지주회사제도가 일반화되어 있는 외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국제적인 추세라 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도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사업활동의 장으로서 우리나라를 선택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나. 연결납세제도의 부정적 측면

##### 1) 세수의 감소

연결납세제도는 기업그룹을 하나의 경제주체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동일한 그룹 내의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내부거래이익의 제거와 손익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기 전과 비교할 때 법인세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흑자회사이고 한 회사가 적자회사이며, 흑자와 적자의 규모가 비슷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연결납세를 하기 전에는 흑자회사는 당연히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연결납세 이후에는 손익통산을 통하여 어느 회사도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세수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2002년 4월부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도 제도 도입 이후 법인세 세수의 감소를 우려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에 부가적으로 2%포인트의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연결납세제도의 적용개시 전에 발생한 결손금액 및 연결그룹 가입 전에 발생한 결손금액에 대하여, 모회사 등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구조조정의 지연

연결납세제도는 그 성격상 대기업을 우대하는 세제가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 자체가 지주회사제도와 많은 관련을 갖고 있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이용이 대기업에 편중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기업의 퇴출을 촉진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연결그룹 구성법인 간 손익통산이 가능해짐으로써 오히려 대기업이 부실자회사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으므로 부실기업의 퇴출 등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3) 세무계산의 복잡화 및 조세행정비용의 증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세무계산의 복잡화를 야기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연결납세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계산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연결그룹 간 사업연도 불일치,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세액배분, 감면액 배분 등에 관하여 매우 복잡한 계산 및 조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세무처리가 복잡하게 됨에 따라 연결납세대상기업의 신고작업이 복잡해지고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와 관련된 비용도 많이 들게 된다.

또한 연결납세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세제도를 정교하게 구축해야 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세행정의 복잡성과 유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러한 연결납세제도의 복잡성은 당연히 조세행정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sup>4)</sup>

---

4) 한국공인회계사회(2001), p. 82.

#### 다. 종합적 검토의견

우리나라는 1997년에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법인세 세수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제도의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세수감소의 혜택이 대기업에 돌아가서 중소기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적자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거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기업그룹에 관한 세제에 있어서 세부담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세제의 중립성을 유지하며, 연결회계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최근 정부도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예정임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을 정도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5)</sup> 최근 기업회계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가는 추세와 아울러 각국은 기업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연결납세제도는 현재 OECD 회원국들의 3분의 2 정도가 도입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기업과세제도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도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필요할 것이다.

법인세제의 골격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이 수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가진 후 2002 회계연도부터 미국의 소득통산형과 유사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사사하는 바

---

5) 2002년 세법개정시 향후 준비기간을 거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가 크다. 우리나라도 향후 몇 년간을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준비기간으로 설정하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연결납세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연결납세제도에 따른 세수감소가 우려되므로 세수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3.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존의 연구

#### 가. 김찬섭의 연구

김찬섭(1999)은 우리나라의 세제 및 회계환경 등의 기본적인 여건 내에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가능한지를 연구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실태를 분석하고 연결회계제도의 이론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의 연결납세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도입시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연결그룹의 범위는 외국자회사를 제외하고 지주 비율은 100%가 좋을 것이다. 둘째, 연결납세제도는 기업들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자회사가 모회사의 회계기준과 꼭 일치될 이유는 없다. 다섯째, 연결납세를 하기 이전에 발생한 손실은 당해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상계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연결그룹회사 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매수자측에 이연처리한 후 사후관리하도록 한다.

### 나. 이우택의 연구

이우택(2000)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앞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조세환경상의 논점들을 규명하고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의 연결납세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연결납세제도 자체의 내용과 구성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

첫째, 연결납세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려면 우선적으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장애가 되거나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환경요인을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연결납세제도는 개별의 법인세제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앞서 법인세법 세제의 체제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연결납세형태는 미국식의 소득통산형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우리나라에 적합한 손익대체형의 제도를 가미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구체적인 연결납세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연결의 기준을 처음에는 100% 기준으로 출발하면서 필요시 100% 미만도 인정하는 탄력적인 기준으로 한다. 2) 연결납세의 가입을 선택적으로 하고 차차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을 택한다. 3) 연결납세는 계속적용하도록 한다. 4) 그룹멤버 간 결손금의 상쇄를 인정하되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미국의 세제와 같이 제반 장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5) 내부거래손익의 소거에 있어서는 처음 도입하는 데 따른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해 가급적 단순한 고정자산의 내부손익의 소거에서 출발하고 차차 시행과정에서 재고자산의 내부거래손익의 제거를 하도록 한다.

### 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2001)는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결납세제

도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로는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멕시코 등의 연결납세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연결납세제도의 유형의 선택은 연결회계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소득통산형으로 한다. 둘째, 연결납세 대상 회사의 지분비율은 80% 기준을 적용한다. 셋째,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연결납세 강제성 여부는 임의 선택하도록 한다. 넷째, 연결납세액을 집단 내 회사 간에 배분하는 문제는 일정한 배분기준을 제시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여 각사가 실제로 부담한 세액이 신고한 배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자본출자 또는 배당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다섯째, 연결납세 적용의 계속성 여부는 연결대상 구성회사의 개별적인 탈퇴를 금지하고, 연결납세를 선택한 그룹의 연결정지 및 취소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상계처리되는 결손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연결납세신고 전 개별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연결 후 연결납세소득에서 상계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나, 합병시 허용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승계공제제도와 같이 특정한 이월결손금은 연결 후 당해 회사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의 범위 내에서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라. 김종철·오윤택의 연구

김종철·오윤택(2001)은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의 연결납세제도의 발전 과정과 제도적 특징을 분석·평가하여 우리나라 조세환경에 적합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연결납세 강제성 여부는 임의 선택하도록 한다. 둘째, 해외자회사는 포함하지 않으며 자회사의 가입은 5년 이상 계속 적용한다는 조건하에 임의 선택하도록 한다. 셋째, 연결납세는 5년간 계속적용하도록 한다. 넷째, 사업연도를 통일한다. 다섯째, 연결납세 대상 자회사의 지분비율은 100% 기준을 적용하고 이후 점차 낮춘다. 여섯째, 소수주주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별도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비상각자산인 토지와 관계회사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내부거래로 하며, 내부거래의 손익은 양도자가 인식하고 과세이연시켜서 소수주주와 채권자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여덟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한다. 아홉째, 그룹 내부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열번째, 개별법인의 운영과 관련이 많은 접대비 등은 개별법인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룹 전체의 비용의 성격이 강한 기부금 등은 모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열한번째, 결손법인을 포함하여 연결납세액을 배분하도록 한다.

### Ⅲ. 주요국의 연결납세제도

#### 1. 미 국

##### 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과정<sup>6)</sup>

미국의 법인소득과세에서 연결납세의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17년 미국연방세법(IRC; Internal Revenue Code)에서 위임한 규칙(Regulation)에 의해서였다. 이 규칙에서는 투자자본 및 과세소득을 보다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관련법인<sup>7)</sup>에 대해 순소득 및 투자자본연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규정이 생기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제1차

---

6) 井上久彌(1995) pp. 35~57 참조.

7) 1917년 도입 당시 강제적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방세법 규칙상의 관련법인이란 아래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2개 이상의 법인이다.  
① 한 개의 법인이 한개 이상의 다른 법인의 전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또는 밀접한 관련 지분을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Class A 모자회사관계), 또는 동일한 개인 혹은 파트너쉽이 둘 또는 그 이상의 법인의 주식 전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Class B 관계회사)로서 이 법인들이 동일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② 하나의 법인이 현재 시가 이외의 가격으로 다른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하여 이윤을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인에게 순소득 또는 투자자본을 부당한 비율로 배분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과 금융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계대전 전비 조달을 위해 누진세율구조를 가진 초과이윤세(excess profits tax)를 과세하게 되었는데<sup>8)</sup>, 이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회사를 만들어서 소득을 분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연결납세제도는 조세회피를 방지함으로써 세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서 도입되었으며, 그 적용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장의 판단에 의해 강제 적용되는 제도였다.

그러나 초과이윤세의 연결과세를 법률에 따르지 않고, 시행규칙에 근거하는 것에 대한 위헌소송 등이 있었기 때문에 1918년에 의회는 연방세법으로 법률화함과 동시에 초과이윤세만이 아닌 법인소득세 전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강제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후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에 따라 1921년에 초과이윤세가 폐지됨으로써 조세회피방지 목적으로서의 연결납세제도 기능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초과이윤세가 폐지되어도 일반 법인소득세에 대해서 자회사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었으며, 특히 외국무역회사로서 설립된 자회사 이윤의 자의적인 이전방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1921년 연방세법에서는 기업이 연결신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선택하면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세청장은 이익, 이득, 소득, 공제 또는 자본의 정확한 배분 또는 할당을 하기 위해 관련사업(related trades and business)의 회계를 연결하도록 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1928년의 연방세법에서는 모자회사간의 이윤조작 규제장치로서, 1921년 회계연결방식을 대신하는 소득분배방식(이전가격체계)이 도입되었다(현행 IRC §482). 그후 1932년에 연결세액에 대한

---

8) 1917년의 경우 초과이윤세의 세율은, 매년 이윤 중에서 투하자본에 대한 비율이 15%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 20%, 20%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 25%, 25%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 35%, 33%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 45%, 33%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세율 65%를 적용하는 누진세율구조였다.

부가세(연결순소득에 대해 0.75%)가 적용되었지만, 당시의 불황 하에서 재정수입의 증가를 꾀할 필요성과 불황에 의한 결손회사의 손익통산에 대한 반대론 때문에 연결신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1934년에는 철도회사를 제외하고 연결납세제도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다시 초과이윤세가 제정되었으며 1940년에는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적용제외 규정이 도입되고 초과이윤세에 대하여 납세자의 선택에 의한 연결납세제도가 부활되었다. 1942년에는 법인소득세에 대해 전면적인 연결납세제도가 시행되었고 부당한 조세경감을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2%의 부가세를 부과하였다.

1954년의 연방세법에서는 연결회사의 범위를 종래의 지주기준 95% 이상에서 지주기준 80% 이상으로 완화하여 종전의 제도를 계속 유지함과 동시에, 조세채무의 배분규정 등의 정비가 계획되었다. 이 개정에서는 재무부에 탄력성 있는 규칙 제정권이 부여되었는데(IRC §1502), 재무부의 이러한 규칙 제정권은 미국 연결납세제도의 두드러진 법적 특징이 되고 있다.

1964년에는 연결과세소득에 대한 2% 부가세가 폐지되었으며, 1966년의 대폭적인 규칙개정으로 내부거래손익의 이연에 관해서 종전의 양도자측 장부가액 인계방식에서 양도자측 손익이연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자회사주식의 장부가수정 규정과 이월결손금공제 규정이 정비되었다.

1984년에는 연결탈퇴 자회사의 5년 이내 재가입이 금지되었고, 1986년에는 종전의 의결권비율기준(80% 이상) 이외에 주식시가비율기준이 추가되었으며, 1991년에는 자회사주식의 양도손실을 부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또한 1995년에는 내부거래손익의 이연에 관하여 단일실체개념(a group-wide single entity approach)에

더 근접하는 개정이 이루어졌고, 1997년에는 연결납세에 관한 지분변동규제조항이 일반적인 지분변동규제조항으로 흡수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나. 연결납세제도의 기본구조

### 1) 연결납세의 대상범위

관련법인그룹(affiliated group of corporations)은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각 기업별로 개별신고를 하는 대신 연결신고서(consolidated tax return)를 제출함으로써 연결납세신고를 할 수 있다(IRC §1501). 연결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관련법인그룹은 그 관련법인그룹 내의 모든 구성법인이 연결신고에 참여한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모든 관련법인이 연결신고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연결신고를 납세자 선택제도로 채택한 이후 일관되게 적용해오는 원칙이다.<sup>9)</sup> 한편 기존에 연결신고에 참여하였다가 이탈한 법인은 이탈 후 5년 이내의 기간동안은 기존의 연결신고와 동일한 모회사 관련그룹의 연결신고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IRC §1504(a)(3)).

연결납세를 선택할 수 있는 관련법인그룹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소유관계에 있는 공통의 모회사(common parent company)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자회사로 구성된다(IRC §1504(a)(1) 및 (2)).

---

9) 이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자회사의 개별적 임의참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그룹의 경제적 일체성을 중시하는 논리에서 보면 미국의 제도가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 모자관계(parent-subsiary group)

직접 출자관계에 있는 모자관계의 법인만을 포함하며 동일한 주주에 의하여 소유되지만 서로 직접적인 출자관계가 없는 형제·자매관계의 법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80% 이상 통제(80 percent control)

모회사가 자회사 의결권의 80% 이상을 소유하는 동시에 자회사 주식의 시가총액의 8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80% voting and value test). 이 경우 의결권의 80% 이상 소유요건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의결권주식총수의 80% 이상을 직접소유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가 B의 의결권의 80%를 소유하고 B가 C의 의결권의 80%를 소유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A, B, C 모두 연결납세대상 관련법인그룹에 속한다.

또한 모회사가 다른 자회사와 같이 특정 자회사의 의결권주식 총수의 80%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도 연결납세대상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A가 B의 의결권의 100%를 소유하고 B가 C의 의결권의 30%를 소유하며 A가 C의 의결권의 50%를 소유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A, B, C는 모두 연결납세대상 관련법인 그룹에 속한다.

2) 계속적용의 원칙

직전과세연도에 연결신고를 한 연결그룹은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도,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계속하여 연결납세신고를 하여야만 한다. 즉, 연결그룹이 연결납세신고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계속적용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Reg. §1.1502-75(a)(2)). 이러한 계속적용의 요건은 연결그룹의 구성회사 중 일부에서 결손

이 발생하는 연도에만 연결납세신고를 하고 모든 구성회사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등 자회사를 이용하여 조세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연결납세신고를 해야 하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모회사가 당해 법인의 연결납세신고를 중지하고자 하는 신청을 한 경우에 대하여, 그 중지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결납세신고의 중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g. §1.1502-75(c)(1)). 일반적으로 국세청장은 연방세법 또는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연결납세신고가 개별신고에 비해 실질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에 연결납세 중지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법, 제도의 변화에 따른 요인들을 참고로 하여 연결납세신고의 중지승인을 하게 된다. 그러나 연결납세중지의 승인은 지금까지 엄격하게 운용되어 왔기 때문에 승인사례는 거의 없는 편이다.<sup>10)</sup> 연결납세중지를 위한 신청서는 최소한 연결납세신고기한의 90일 전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 3) 과세연도의 일치 및 분할

원칙적으로 연결그룹의 연결납세신고서는 모회사의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제출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연결그룹의 자회사는 연결납세신고서에 포함될 각자의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세연도를 모회사의 과세연도와 일치시켜야 한다. 그러나 52~53주의 과세연도를 적용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는 경우 그룹의 모든 구성법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같은 7일 기간 이내라는 조건을 만족

---

10) 井上久彌(1995) p. 64.

하면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과세연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g. §1.1502-76(a)).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위한 신청서는 적어도 연결납세신고기한의 30일 전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연결과세연도 중에 자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회사가 연결대상에 새로이 포함되거나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모회사의 소득, 공제, 손실, 감면 등은 전액 연결납세신고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각 자회사들의 소득 등의 항목은 연결 그룹에 속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포함된다(Reg. § 1.1502-76(b)(1)(i) 및 (ii)). 이와 같은 규정은 각 법인의 소득항목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분할된 기간의 소득은 각각 연결과세소득과 개별과세소득에 안분하여 산입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결과세연도 중간에 자회사 주식의 취득 등에 의해 당해 자회사가 관련법인에 해당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취득일까지의 기간은 자회사의 개별신고연도가 되며, 그 다음날부터의 기간이 연결납세신고연도가 된다. 연결이탈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자회사 주식의 양도 등이 이루어진 날까지가 연결납세신고연도가 되는 것이며, 그 다음날부터 그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당해 자회사의 개별신고연도로 분할된다.

#### 4) 회계처리방법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연결그룹의 각 구성법인이 적용하는 회계처리방법은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과세소득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IRC §446). 만약 연결그룹의 특정 구성법인이 연결납세신고기간 중에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요건에 따라야 하며, 선

택적 회계처리방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마다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규정은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각 구성법인마다 적용되는 것이며, 모회사와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을 통일시킬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Reg. §1.1502-17).<sup>11)</sup>

#### 5) 연결과세소득 및 연결세액의 계산

연결과세소득(consolidated taxable income)과 세액은 연결그룹 구성법인의 개별과세소득(separate taxable income)을 기초로 하여 합산한 금액에 연결수정을 가한 후 산출하며(Reg. §1.1502-11(a) 및 12), 여기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연결세액을 산정한다. 연결과세소득 및 연결세액의 구체적인 계산 과정은 [그림 III-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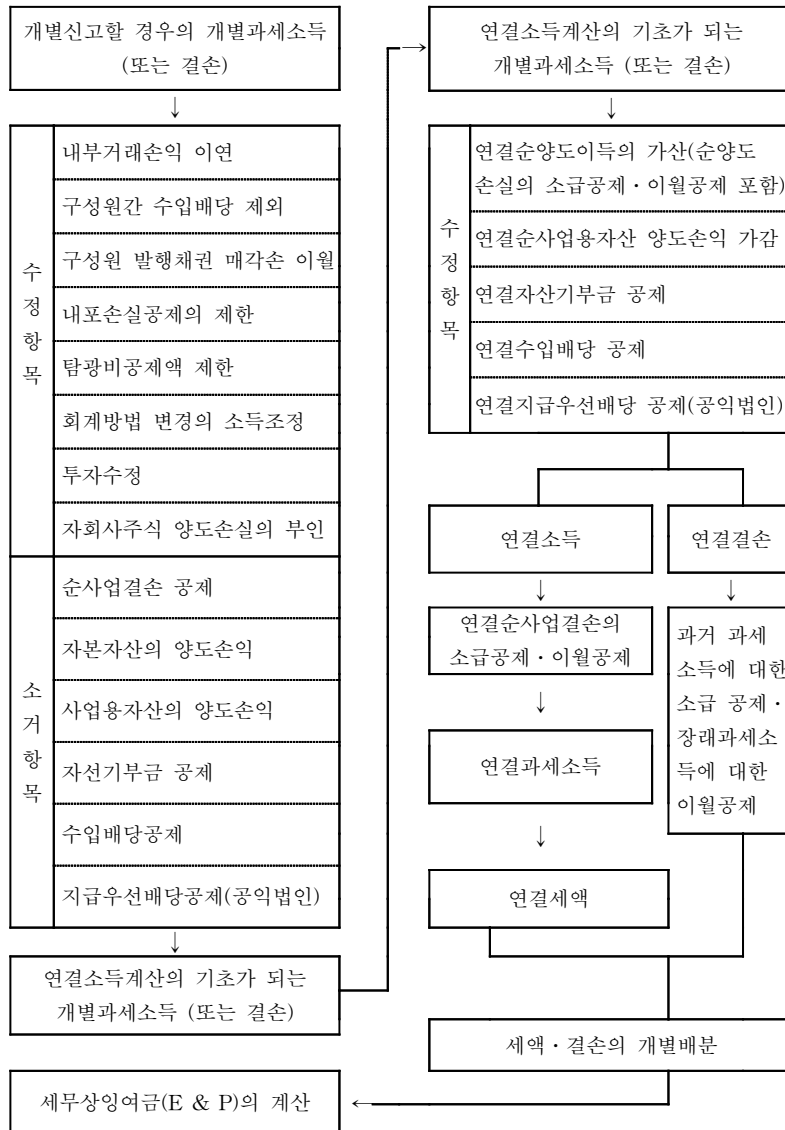
#### 6) 연결납세의무의 이행 및 연결잉여금

모회사를 포함한 연결그룹의 구성법인은 연결세액의 전액에 대하여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진다(Reg. §1.1502-6). 즉, 연결세액에 대하여는 연결그룹의 구성법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연결세액의 배분에 대하여는 연결그룹 구성법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며 세액분담약정(tax-sharing agreements)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개별 법인의 세무상 잉여금(earnings and profits : E & P)을 산정함에 있어서 연결세액의 배분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이는 세무상 잉여금에서 차감될 법인세액을 결정하기

---

11) 1966년 이전에는 모회사사간 회계방법을 통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1966년 연결납세신고규칙의 개정으로 철폐되었다.

[그림 Ⅲ-1] 연결과세소득 계산의 개념도



자료 : 井上久彌(1995) p. 69.

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연결그룹 구성법인간에 연결세액의 실제 배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연결그룹의 모회사는 연결세액의 납부의무에 관하여 자회사와 동일한 의무를 지는 이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룹을 구성하는 각 법인의 독점적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 경우 대리 범위는 과소신고의 통지, 세액환급청구, 불복청구 등에 미친다 (Reg. §1.1502-77).

#### 다. 연결과세소득의 계산

##### 1) 개별과세소득의 수정

연결과세소득은 연결그룹의 개별과세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이지만, 그 합산에 앞서서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의 규정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개별과세소득에 대하여 연결계산에 필요한 특유한 수정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Reg. §1.1502-12).

연결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한 개별 과세소득의 수정항목은 개별 손익항목의 수정과 연결기준으로 재계산되어야 할 항목의 소거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 가) 개별손익항목의 수정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결그룹에 속하는 각 구성법인의 개별과세소득을 산출하여야 한다. 연결목적의 개별과세소득의 계산은 개별납세신고하는 경우의 개별과세소득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연결수정항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결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한 개별손익항목의 수정사항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내부거래에 의한 손익의 이연(Reg. §1.1502-13)

연결납세신고를 하게 되면 연결그룹 구성법인간에 이루어지는 내부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이연하며 연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연된 손익은 연결그룹 구성법인이 아닌 법인에게 자산이 매각되는 등 실현될 때 상각자산, 할부채권 및 할부판매, 처분자산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의해서 인식된다. 손익이 이연되는 연결그룹 구성법인간의 내부거래는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들로 한다.

㉠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

㉡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자본화되는 경우

그러나 연결그룹 구성법인이 다른 구성법인에게 한 배당처분이거나 이익실현이 없는 자본출자, 자본감소 또는 청산에 따른 분배, 다른 구성법인 채무의 매각, 교환, 기타 처분 및 대손은 손익이 이연되는 내부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연결그룹 구성법인간 수입배당의 총소득 제외 및 연결구성법인 발행채권 등의 매각손익의 이연(Reg. §1.1502-13)

연결납세신고기간 중 연결그룹 내의 구성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일종의 내부거래로서 전액 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통상 그 70%(지주비율 20% 미만의 경우), 80%(지주비율 20% 이상 80% 미만) 또는 100%(지주비율 80% 이상)가 공제된다. 따라서 개별납세신고시에는 배당을 하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인정되는 수입배당소득공제를 받고 그 나머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에 포함하여야 하지만 연결그룹 구성법인간의 배당에 대하여는 연결납세신고시 당해 수입배당액의 전부를 소득에서 제외하게 된다.

또한 연결그룹의 구성법인이 소유하는 다른 구성법인의 채권을 또 다른 구성법인에게 매각, 처분함에 따라 개별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 당해 손익은 이연된다. 회사간 채권거래에 따른 이익을 이연하는 각 구성법인은 채권이 비구성법인에게 매각 또는 처분되거나 채권소유법인이 비구성법인으로 전환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들 채권의 잔여기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이연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 (3) 미실현 내포손실 공제의 제한(Reg. §1.1502-15)

내포손실(built-in-loss)이라 함은 자회사의 개별납세신고시 이미 경제적으로 발생한 손실(IRC §382(h)(3))이지만 손실로 인식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즉, 내포손실은 연결그룹이 구성법인이 아닌 타법인을 취득할 때 그 회사에 구조적으로 내재하고 있던 손실을 의미한다.

내포손실은 손실이 실제로 계상되는 과세연도에 그러한 손실이 발생한 구성법인의 소득과 상계시키는 데에 사용할 수 있고 당해 과세연도에 사용할 수 없는 공제부분은 동 구성법인의 다른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내포손실의 공제를 손실이 발생한 법인에 한정하는 것은 연결그룹이 이미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손실로 인식하지 아니한 법인을 취득한 후 손실을 계상하여 다른 구성법인의 소득과 상계하도록 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 (4) 탐광비 공제액의 제한(Reg. §1.1502-16)

연결납세신고기간 내에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연결그룹 구성법인이 지출한 탐광비는 일정한 한도 내의 금액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에 의한 소득조정(Reg. §1.1502-17)

연결그룹의 구성법인이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하였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3,000달러 이상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세액은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과세소득의 3분의 1씩을 직전 2년과 변경연도의 과세소득에 가산하여 산출한 결과 증가하는 총세액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득조정이 필요하다.

(6) 투자수정(Regs. §1.1502-31, §1.1502-32)

미국의 연결과세소득 계산의 특징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는 동시에 가장 복잡한 이론적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자회사 주식 양도손익의 기초가 되는 세무상 장부가액 또는 투자기초가액(basis)의 수정이며, 이를 투자수정(investment adjustment)이라고 한다. 투자수정이란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에 투자할 때 그 투자한 금액(출자불입금액 또는 주식구입금액)이 그 투자(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이 되고, 매기의 자회사 소득의 유보액(이익에서 배당지급액을 차감한 잔액) 중에서 모회사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장부가액에 가산되며, 자회사 결손 중에서 모회사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장부가액에서 차감되는 구조를 말한다(Reg. §1.1502-32(a)).

이와 같은 수정에 따라 자회사 소득이 발생하면 연결과세소득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장래의 자회사 주식양도소득을 감소시키고, 자회사 결손이 그 반대로 작용하도록 함으로써 자회사의 손익이 연결과세소득에 2회(연결과세소득에 산입하는 자회사 손익으로서 1회, 자회사주식을 처분하는 때 연결소득에 산입하는 모회사의 주식양도소득으로서 1회) 산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sup>12)</sup>

12) 井上久彌(1995) p. 117.

즉, 주식의 양도소득은 주식의 양도대가에서 그 주식의 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주식의 시장가액에는 그 주식발행법인의 손익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주주단계의 주식양도손익에 대한 과세는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법인소득과세와 함께 경제적으로 조세부담이 중복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투자수정은 연결납세제도 내에서 자회사의 손익에 기인하는 과세중복을 배제하는 법적 메커니즘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투자수정제도는 다른 국가들의 연결납세제도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로서 연결그룹관계의 본질을 단일주체 개념에서 파악하려는 미국 연결납세제도의 기본적 구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sup>13)</sup>

투자수정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각 연결납세신고연도 기말에 행하여진다. 원래 자회사 주식의 양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 수정의 유무가 과세소득 계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양도 등의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 과거의 기록에 대하여 장부가액 수정을 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매기에 계속 계산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sup>14)</sup>

자회사 결손 중 모회사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됨에 따라 당해 장부가액이 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초과손실계정(excess loss accounts)이라고 한다. 이러한 초과손실계정은 당해 자회사에게 소득이 발생하여 초과손실을 상계할 때까지 존재하게 된다.

#### (7) 자회사 주식양도손실의 부인(Reg. §1.1502-20)

미국의 연결납세신고규칙에서는 자회사 주식의 양도손실을 원칙적으로 부인하는 손실부인규정(LDR: loss disallowance rule)을

13) 井上久彌(1995) p. 118.

14) 井上久彌(1995) p. 120.

두고 있다. 동 규정은 199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에 관계되는 투자수정의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자회사 자산양도이익의 연결베이스 과세를 회피하는 행위가 가능하게 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자회사 주식에 관한 연결그룹 손실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입법화된 것이다.<sup>15)</sup>

손실부인규정(LDR)은 연결그룹 구성법인이 소유한 연결자회사 주식에 대하여 계상한 양도손실의 전액을 부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손실이 내포손실, 자회사 취득 후의 장부가액 상승 등 어느 것에 기인하든 관계하지 않는다. 또한 손실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회사 주식의 양도(disposition)는 통상의 매매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하여 이득 또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는 모든 사건(events)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치를 상실해 상각손을 계상하는 경우의 손실에 관해서도 손실부인규정이 적용되는 등 그 적용범위가 매우 넓다고 하겠다.<sup>16)</sup>

나) 연결기준으로 재계산되어야 할 항목의 소거

순사업결손공제, 자본자산 양도손익, 사업용자산 양도손익, 자산기부금공제, 수입배당공제 등은 연결기준(consolidated base)으로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소득계산상 전부 제거된다(Reg. §1.1502-12(h)~(n)).

2) 연결기준에 의한 재계산

가) 수정항목

연결과세소득은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각 법인의 수

15) 井上久彌(1995) p. 126.

16) 井上久彌(1995) p. 127.

정된 개별과세소득을 합산하고 연결기준으로 재계산되는 항목을 가감조정하여 계산한다. 연결기준으로 재계산되는 항목 및 그 계산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g. §1.1502-11).

(1) 연결순양도손익의 계산(Reg. §1.1502-22)

연결납세신고연도에 있어서 각 구성법인의 자본자산의 순양도손익(capital gain net income)은 개별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연결그룹 전체적인 차원에서 합산되어 연결순양도손익(consolidated capital gain net income)을 구성하게 된다. 즉, 연결그룹 전체적인 차원에서 자본자산의 양도손실(capital loss)은 당해 연도의 자본자산의 양도이익(capital gain) 및 순사업용자산 양도이익과 합산되어 상계된다. 이때 상계차익이 陽(연결순양도소득)이면 연결소득에 추가되어진다. 그러나 그 상계차액이 陰(연결순양도손실)이면 그 연결순양도손실은 연결순사업결손과 구분하고, 이전 3년간의 연결순양도소득에 대하여 소급공제하거나 이후 5년간 연결순양도소득에 대하여 이월공제하는 것만 허용된다.

(2) 연결순사업용자산 양도손실의 공제(Reg. §1.1502-23)

연결납세신고기간 동안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손실 역시 각 구성법인별로 개별적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그룹 전체의 차원에서 계산되어진다. 연결순사업용자산의 양도손실은 통상의 사업손실과 같이 당기의 통상소득(ordinary income)에서 공제된다.

(3) 연결자선기부금공제(Reg. §1.1502-24)

연결그룹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연방세법 제170조에 규정된 자선기부금공제(charitable contribution deductions)가 허용된다. 연

결자선기부금공제는 실제로 지출된 각 구성법인의 자선기부금에 전기로부터 이월된 미공제 자선기부금을 합한 금액과 조정연결과 세소득의 5%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조정연결과세소득(adjusted consolidated taxable income)이란 각 구성법인의 과세소득을 조정 및 통산하여 발생된 연결과세소득으로 분향의 자선기부금공제 및 다음의 연결수입배당공제와 연결지급우선배당공제를 적용하기 이전의 과세소득을 말한다.

또한 자선기부금 지출연도에 공제한도의 초과로 인하여 공제되지 못한 자선기부금은 연결납세신고기준에서 이후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4) 수입배당 공제(Reg. §1.1502-26)

연방세법 제243조, 제244조 및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으로부터의 수입배당공제는 연결납세신고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연결법인그룹 구성원 이외의 내국법인으로부터의 수입배당공제(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70%, 80%, 100%)도 연결그룹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연결수입배당공제의 한도는 각종 연결공제를 하기 이전 연결과세소득의 85%이다.

(5) 연결지급우선배당의 공제(Reg. §1.1502-27)

연방세법 제247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우선주에 대하여 지급된 배당(dividend paid on certain preferred stock of public utilities)의 공제규정도 연결그룹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나) 소급공제 및 이월공제

당해 연결납세신고연도에서 각 구성법인별로 산출된 개별과세

소득과 개별결손이 연결그룹 차원에서 通算됨으로써 각 구성법인의 결손금은 다른 구성법인의 순사업이익과 상계되고 상계 후의 이익이 연결이익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Reg. §1.1502-11(a)(1)(2)).

이 경우 개별과세소득과 개별 결손을 통산한 결과 그 차액이 陰(연결순결손)이 되는 경우에는 이전 2년간 연결소득에 대하여 소급공제되거나 이후 20년간 연결소득에 대하여 이월공제된다(Reg. §1.1502-21, IRC §172(b)(1)(A)). 당해 과세연도에서 소급 및 이월되는 결손금의 공제는 결손금의 발생연도 순으로 먼저 발생한 과세연도분부터 차례로 적용하여야 한다.

### 3) 연결소득계산시 적용되는 원칙 및 규제

미국의 연결세제에서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자회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내부거래손익의 이연 또는 결손통산 규정 등으로 인한 조세혜택만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취득하는 등의 조세회피(tax avoidance)행위에 대하여 이를 규제하는 다양한 규정들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규정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 가) 대등원칙과 촉진원칙

대등원칙과 촉진원칙은 연결그룹 구성법인간의 내부거래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내부거래손익의 인식금액과 인식시기를 규제하며 모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모회사 및 자회사의 세무상 잉여금(E & P)의 증감여부를 정한다.

(1) 대등원칙(Reg. §1.1502-13(c))

대등원칙(matching rule)은 당해 내부거래의 당사자가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단일 법인의 한 부서라고 가정할 때의 조세효과와 연결그룹 구성법인 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조세효과가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연결그룹 구성법인간의 내부거래는 동일한 법인 내의 부서간 행위로 보기 때문에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며 외부의 제3자에게 처분 등으로 실현되는 때까지 손익의 인식을 이연한다. 그러나 동일 법인 내의 부서간 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의 기초가액과 각 개별법인의 세무상 잉여금(E&P)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해 내부거래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공통의 모회사 P와 P가 총발행주식의 80%를 보유하는 자회사 A 및 B로 구성된 연결그룹이 연결납세신고를 하며, A가 B에게 장부가액 70달러인 토지를 2001년 말 100달러에 매각하고, B가 이 토지를 1년 후인 2002년 말 110달러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연결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한다면 A는 B에게 토지를 매각할 때인 2001년 말에 30달러의 이익을 인식하고 B는 제3자에게 매각할 때인 2002년 말에 10달러의 이익을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대등원칙에 의하면 내부거래의 당사자가 동일 법인내의 부서라고 볼 경우 제3자에게 매각될 때의 총이익 40달러와 B의 개별이익 10달러의 차이인 A의 개별이익 30달러는 2001년 말에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였다가 2002년 말에 인식하여야 한다. 즉,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총이익 40달러는 전액 제3자에게 매각될 때인 2002년 말에 인식하고 장기자본이득(long-term capital gain)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A와 B의 토지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내부이익의 이연방식은 1966년 이전에 적용되던 양도자측 장부가액인계방식과 1966년 개정규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적용되는 양도자측 손익이연방식을 들 수 있다. 양도자측 장부가액인계방식(또는 양수자 손익귀속방식)에서는 내부거래시 양도가액을 양도자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내부거래이익이 양수자에게 귀속되는 반면에 양도자측 손익이연방식(또는 양도자 손익귀속방식)에서는 양도가액을 거래 당사자간의 실제거래가액(또는 시가)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거래이익이 양도자에게 귀속된다.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내부거래자의 누구에게 이익이 귀속되건 외부의 제3자에게 매각 등을 통하여 내부이익이 실현되는 때 인식하는 한 당해연도의 연결과세소득에는 영향이 없으나 손익이연방식에 따라 모회사의 자회사주식에 대한 장부가액과 개별법인의 세무상 잉여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래의 조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양도자측 장부가액 인계방식에 의하면 내부거래이익이 실현되기 전에 연결그룹이 해체되는 경우 내부거래이익은 과세될 기회가 상실되는 반면에 양수법인의 자산가액은 내부거래이익을 포함한 가액으로 회계처리됨에 따라 양수법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당해 금액이 소득에서 공제되는 점 때문에 현행 규정은 양도자측 손익이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앞서의 예에서 양도자측 손익이연방식에 의하면 연결그룹의 모회사인 P가 보유하는 A, B 주식의 장부가액과 A, B의 세무상 잉여금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총이익 40달러를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2002년 말에 A의 세무상 잉여금은 30달러만큼 증가하고 B의 세무상 잉여금은 10달러만큼 증가한다. 또한 공통의 모회사인 P가 보유하는 A 및 B의 주식에 대한 장부가액은 2002년 말에 각각 24달러(30달러의 80%)와 8달러(10달러의 80%)씩 증가한다.

(2) 촉진원칙(Reg. §1.1502-13(d))

촉진원칙(acceleration rule)은 대등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내부거래손익의 이연을 중단하고 외부에 매각 등으로 내부거래손익이 실현되기 전에 앞당겨 인식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촉진원칙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사건은 내부거래의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지분비율의 감소 등으로 연결그룹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내부거래손익이 외부매각 등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연결그룹에서 제외되는 시점에 이연되었던 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앞서 대등원칙에서의 예에서 B가 토지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P가 보유하는 A주식의 전부를 2002년 말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고 가정할 때, 촉진원칙에 의하면 2002년의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연되었던 30달러는 2002년의 연결과세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며 P의 A주식에 대한 장부가액은 2002년 말에 24달러(30달러의 80%)만큼 증가하고 A의 세무상 잉여금은 30달러만큼 증가한다.

나) 개별납세제한연도

개별납세제한연도제도는 결손금의 공제를 목적으로 결손기업을 취득하는 등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이월이 허용되는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에도 개별납세제한연도와 유사한 규제가 존재한다. 한편 개별납세제한연도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써 내포손실공제제한(앞서 설명한 바 있음), 모회사의 지분변동에 따른 규제, 역취득에 대한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개별납세제한연도(separate return limitation year: SRLY)는 새로이 취득된 자회사의 취득 전에 존재하던 미공제 결손금 등의 조

세혜택이 당해 자회사를 취득한 후 연결그룹 중 다른 구성법인의 과세소득 및 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연결납세를 하기 전의 개별납세신고연도에 발생한 연결그룹 구성법인의 결손금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법인의 소득과는 상계될 수 없지만 당해 구성법인의 소득만을 한도로 하여 연결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Reg. §1.1502-21).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납세신고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이라고 하더라도 연결과세소득에서 제한없이 공제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즉, 연결그룹의 다른 구성법인의 소득에서도 공제될 수 있는 것이다(Reg. §1.1502-1(f)).

- ① 결손법인이 공통의 모회사인 경우
- ② 결손법인이 결손이 발생한 연도의 전 기간에 걸쳐 당해 연결그룹의 구성법인이지만 연결그룹이 연결납세를 선택하지 아니하여 당해 기간에 대하여 개별납세신고를 한 경우

#### 다) 모회사의 지분변동에 따른 규제

개별납세제한연도의 규제에 의하면 이월결손금이 있는 연결그룹이 이익발생법인을 취득한 후 연결납세신고를 통하여 자신의 결손금을 자회사의 소득에서 공제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공통의 모회사에 대한 지분이 매각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2년의 기간에 걸쳐 50%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경우에는 지분변동 전의 연결그룹의 이월결손금은 당해 지분변동 전의 연결그룹 구성법인들에 의하여 지분변동 후 발생하는 소득을 한도로 하여 공제될 수 있으며 새로이 취득된 자회사의 소득에서는 공제될 수 없다(IRC §382, Reg. §1.1502-91).

라) 역취득에 대한 규제

역취득(reverse acquisition)이라 함은 연결그룹의 구성법인이 새로운 자회사를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되는 법인의 주주가 당해 취득후 취득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즉, 형식적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하는 것이지만, 자회사의 종전 주주들이 모회사의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자회사가 모회사를 취득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회사를 형식적으로 취득한 연결그룹의 공통의 모회사는 세무상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며, 실질적인 취득자인 형식상의 자회사가 새로운 연결그룹의 공통의 모회사인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종전의 연결그룹의 구성법인이 가지고 있던 미공제 결손금 등의 조세혜택에 대하여는 개별납세제한연도규정이 적용된다. 반면에 새로운 연결그룹의 공통의 모회사가 된 형식상의 자회사는 개별납세제한연도의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역취득 이전에 보유하는 조세혜택이 제한없이 적용될 수 있다(Reg. §1.1502-75(d)).

라. 연결세액 및 세무상 잉여금(E & P)

1) 연결세액의 계산

연결과세소득에 대한 세액은 다음에 열거하는 세액의 합계액에서 세액공제(IRC Ch.1, Subchapter A. Part IV)를 차감하여 계산한다(Reg. §1.1502-2).

- ① 연결과세소득에 대한 기본세액(IRC §26(b))
- ② 연결최저한세(Regs. §1.1502-55)
- ③ 연결환경세((Regs. §1.1502-1(h)(2))

- ④ 연결부가세: 지주회사세(IRC §541) 및 초과유보세(IRC § 531, Reg. §1.1502-43)

## 2) 연결세액의 배분

연결납세신고서의 제출 등은 전부 모회사가 행하게 되는데, 이때 모회사는 자회사의 신고납세에 관한 대리인(agent)으로서의 지위에 서는 것이며(Reg. 1.1502-77(a)), 모회사가 납부하는 연결세액은 연결그룹의 각 구성법인에게 배분되어 부담하게 된다. 각 구성법인에 대한 연결세액의 부담기준에 대해서는 연방세법 및 연결납세신고규칙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결그룹의 각 구성법인의 합의에 의하여 각 구성법인의 부담액을 정하게 된다.

## 3) 세무상 잉여금의 계산

세무상 잉여금(E & P: earnings and profits)은 과세소득을 기초로 계산되는 당기배당가능소득이다. 법인이 E & P의 범위 내에서 분배한 금액이 배당(dividend)이 되고(IRC §316(a)), 법인주주에 관해서는 총소득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수입배당공제)가 적용된다(IRC §61(a)(7), §243). 이에 반하여 법인의 E & P를 초과하는 분배는 배당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되지 아니하고, 분배를 받는 주주의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공제되어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때의 주식양도이익을 증가시키게 된다(IRC §301(c)).

각 개별 법인의 E & P 계산에 있어서 법인세액은 공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연결세액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E & P 계산시 적

용되는 연결세액의 배분기준은 연결그룹 소속 법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약정된 배분기준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적정한 배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E & P 계산시 적용되는 배분기준에 의하여 연결세액을 분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E & P 계산시 적용될 수 있는 연결세액의 배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결그룹은 연결납세신고를 최초로 하는 때 다음의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연결그룹이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중 개별소득비례배분법에 의하게 된다(IRC §1552(b)).

가) 결손금 또는 조세혜택을 고려하지 않는 배분방법

연결세액을 일정한 안분기준에 따라 배분하되 개별신고기준에서 볼 때 결손금이 있거나 과세소득 또는 세액의 부족으로 차기로 이월될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가 있는 법인에게 다른 법인이 세액감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의 배분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IRC §1552).

- ① 개별소득비례배분법: 연결과세소득 중 각 연결그룹 구성법인 (결손이 발생한 법인은 배분대상에서 제외)에게 귀속되는 금액에 비례하여 연결세액을 배분하는 방법
- ② 개별세액비례배분법: 각 연결그룹 구성법인이 개별납세신고를 한 경우의 과세소득에 의거한 세액에 비례하여 연결세액을 배분하는 방법
- ③ 증가세액추가배분법: 연결세액 중 개별신고세액의 합계와 연결로 인한 증가세액으로 구분한 후 개별신고세액의 합계는 각 구성법인의 연결과세소득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고, 연결에 의해 증가한 세액은 세액감소가 발생하는 구성법인에 대하여 당해 세액감소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법. 이

경우 세액감소액은 각 구성법인의 개별납세신고시의 납부세액과 연결과세소득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배분된 연결세액의 차액을 말한다.

④ 기타 위에서와 다른 방법으로서 재무장관의 승인을 얻은 방법

나) 결손금 또는 조세혜택을 고려하는 배분방법

연결그룹의 구성법인 중 개별신고기준에서 볼 때 결손금이 있거나 과세소득 또는 세액의 부족으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가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될 수 없어서 차기로 이월되는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연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결손금이 공제되거나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이 추가로 적용됨에 따라 연결세액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손금 또는 이월되는 조세혜택을 가진 법인에게 다른 법인이 세액감소의 대가를 지급(배분금액의 감액)한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배분방법이 허용된다(Regs. §1.1502-33(d)).

- ① 사후정산법(wait-and-see method): 연결세액계산에 있어서 결손금공제 또는 조세혜택이 적용되는 과세연도에는 위의 (가)에서 언급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배분하고 당해 결손금 또는 조세혜택이 있는 법인이 그후의 연도에 있어서 소득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별신고를 하였다고 가정할 때 당해 결손금의 공제 또는 조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확인되면 다른 법인들이 당해 법인에게 세액감소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배분액을 정산하는 방법
- ② 비율법(percentage method): 결손금 또는 조세혜택이 있는 법인이 당해 결손금 또는 조세혜택을 미래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와 관계없이 연결세액계산에 있어서 결손금공제 또는 조세혜택이 적용되는 과세연도에 당해 결손금 또는 조세혜

택으로 인한 세액감소의 대가를 다른 법인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배분하는 방법

- ③ 기타 위에서와 다른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방법

#### 4) 배분액과 실제 부담액의 차액처리

연결그룹 구성법인별로 E & P 계산시 차감되는 연결세액의 배분액보다 세액분담약정에 따른 실제 세액부담액이 더 큰 경우의 차액은 자본의 출자(capital cintribution) 또는 주주에 대한 분배(distribution)로 본다(IRC §1552, Regs. §1.1502-33(d)). 즉, 자회사에게 배분된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모회사가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자회사에 대한 자본의 출자로 보며, 자회사가 자신에게 배분된 세액을 초과하여 모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주주에 대한 분배(일반적으로 배당)로 취급되고 E & P를 감소시킨다.<sup>17)</sup>

#### 마. 개별납세로의 전환

연결납세신고를 하던 연결그룹은 자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연결대상 자회사가 전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개별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연결대상 자회사가 존재하더라도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결납세신고를 중지하고 개별납세신고를 할 수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 있다. 이 경우 공제되지 아니한 연결결손금은 각 구성법인에게 분배되고 각자 분배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월공제 또는 소급공제할 수 있다. 이때 이월결손금의 분배는 개별 법인의 이월결손금에 비례하여 안분한다(Reg. §1.1502-79(a)).

---

17) Crestol et al.(2002), pp. 7-57~7-58.

## 2. 영 국

### 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과정

영국의 세법은 동일한 기업그룹에 속하고 있다고 해도 각 회사를 독립된 과세체(separate legal person)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그룹의 계열사는 배당금과 부과금 등 기업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독립법인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sup>18)</sup> 영국의 연결납세제도는 기업집단에 대한 과세특례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룹릴리프(group relief)라는 특별조치가 그 대표적인 제도이다.

그룹릴리프제도는 1967년에 도입되었으며, 동 제도는 과거 두 가지 형태의 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1953년부터 존재해 왔던 감면납부제도(subvention payments)는 특정기업이 다른 기업의 손실을 지급해 주는 경우 다른 기업의 손실에 상응하는 감면(relief)을 받도록 허가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감면납부제도는 실제로 다른 기업의 손실에 대한 지급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1965년에 법인세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이윤세(profit tax)제도에서 연결기준이 허용되고 있었다. 1936년부터 1965년까지의 기간 동안 영국의 기업들은 소득세(income tax)와 이윤세(profit tax)라고 하는 두 가지 세제에

18) 그룹회사 간의 배당은 지급측과 수취측 쌍방의 선택(ICTA 제247조의 선택'이라고 함)에 의해 선납법인세(ACT: Advance Corporation Tax)없이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배당을 수취하는 법인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모두 영국의 거주법인이어야 하며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 51% 그룹: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배당을 수취하는 법인의 '51% 자회사'인 경우
- ② 75% 그룹: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배당을 수취하는 법인의 '75% 자회사'인 경우

대하여 동시에 과세대상이 되고 있었다.

영국은 1967년 그룹릴리프제도를 도입한 이후 일관되게 손실이전모델(loss transfer model)을 사용하여 왔다. 과거의 감면납부제도(subvention payments system) 역시 기본적으로는 손실이전제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윤세제도에서 존재하였던 연결제도(consolidation system)는 연결신고제도(consolidated return system)였는데 각 기업들의 이윤을 독립적으로 산출하고 모회사에 대한 세액부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전시키는 제도였다. 적어도 그룹내부거래(intra-group transaction)를 제거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시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 나. 연결납세제도의 기본구조

영국의 연결납세제도는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개념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제도는 연결그룹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취급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하다. 반면 영국의 제도는 연결그룹이 다수의 독립적이고도 분리된 기업들로 구성된 것이라는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각 개별 기업들 상호간 특별한 감면(relief)을 이전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이러한 가정을 다소 완화하고 있다.

그룹릴리프(group relief)는 영국의 연결납세제도의 핵심이다. 그룹릴리프는 기업집단 내의 청구회사(claimant company; 이익회사)가 그룹 내의 다른 대체회사(surrendering company; 결손회사)의 당기에 발생한 사업손실 등을 이전받아 자사의 과세소득과 상쇄하는 제도이다.

## 1) 적용기업

그룹릴리프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 75% 그룹회사: 일방이 다른 타방의 75% 자회사인 경우 또는 쌍방이 함께 공통모회사의 75% 자회사인 경우로서 영국 거주법인에게만 적용된다.
- 컨소시엄회사: 컨소시엄회사(보통주식자본의 75% 이상이 단독 또는 복수의 다른 내국법인에 의하여 보유하고, 또한 지분이 각기 5% 이상인 회사)는 청구회사(claimant company) 또는 대체회사(surrendering company)가 되어 다음 중 어느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컨소시엄릴리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 회사는 특정 멤버의 75% 자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 컨소시엄그룹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사업회사
  - 컨소시엄그룹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지주회사의 90% 자회사인 사업회사
  - 컨소시엄그룹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지주회사

## 2) 이전대상이 되는 것

그룹릴리프는 오직 대체회사의 당해 년도 이익과 상계되지 않은 사업손실, 투자회사의 관리비, 감가상각비(자본공제) 및 특정비용 등 4개의 항목만이 그 대상이 된다.

## 가) 사업손실(trading losses)

대체회사의 사업손실은 그에 상응하는 사업연도, 즉 그룹릴리프를 청구할 수 있는 손실이 발생한 대체회사의 사업회계연도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사업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청구

회사의 총이익(각종소득, 과세자본이득, 신탁·조합에 의한 이익 및 청산이익의 합계액)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다(ICTA 1988, s. 403(1)).

만약 대체회사의 사업회계연도와 그에 상응하는 청구회사의 사업회계연도가 일치하지 않게 되면 공제가능한 사업손실은 양 사업회계연도가 일치하는 기간 동안만의 사업손실이 된다. 따라서 A를 두 회사의 사업회계연도 중 일치하는 기간이라고 가정하고, B를 대체회사의 사업회계연도기간이라고 가정하면, 공제 가능한 사업손실은 A/B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업손실이다. 또한 이 경우 대체회사의 사업손실과 상쇄될 수 있는 청구회사의 이익도 감소하게 되는데, A를 두 회사의 사업회계연도 중 일치하는 기간, C를 청구회사의 사업회계연도라고 한다면 A/C기간분에 해당하는 청구회사의 이익만이 대체회사의 사업손실과 상쇄될 수 있다.<sup>19)</sup>

그룹릴리프의 한도는 두 회사의 사업회계연도가 일치하는 기간 동안의 대체회사의 손실분 또는 청구회사의 이익분을 초과할 수가 없다. 또한 그룹릴리프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당기에 발생한 것에 한하기 때문에 차기연도 이후 기간에서의 사업손실 환급분은 그룹릴리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세무상 감가상각비(capital allowances)

대체회사는 당기의 세무상 감가상각비(자본공제) 중에서 당기의 과세소득금액의 계산상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청구회사의 상응기간에 대하여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대체는 당기에 발생한 금액에 한하고 공제부족액의 전기로부터의 이월분은 대체될 수 없다(ICTA 1988, s.403(3)).

대체될 수 있는 감가상각비의 한도는 당해 과세연도 공제와 관

---

19) CCH(1997), p. 2,096.

련된 소득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이다. 예를 들어 임대된 농업용 빌딩의 감가상각비가 20,000파운드이고, 임대에 따른 임대수익이 15,000파운드라고 한다면 청구회사로 대체될 수 있는 금액은 20,000파운드에서 15,000파운드를 차감한 5,000파운드가 된다.<sup>20)</sup>

#### 다) 관리비(management expenses)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의 당기의 관리비 중에서 당기의 총소득금액으로부터 공제되지 않는 금액은 청구회사의 상응기간에 대하여 대체할 수 있다(ICTA 1988, s. 403(4)). 다만 공제부족액(소득금액의 계산상 공제되지 않은 부분)의 前期로부터의 이월분은 이전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회계연도에서 발생한 투자회사의 관리비, 사업손실 및 감가상각비는 모두 대체회사의 이익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회사는 꼭 투자회사가 아니어도 무방하지만 생명보험회사인 경우에는 그룹릴리프가 적용되지 않는다.

#### 라) 특정비용(charges on income)

대체회사가 지출한 당기의 특정비용이 당기의 총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청구회사의 상응기간에 대하여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공제 부족액의 전기로부터의 이월분은 이전되지 않는다(ICTA 1988, s. 403(7)).

### 3) 이전공제의 계산

가) 대체회사(surrendering company)에 있어서의 이전환도액 이전대상이 되는 사업손실 등은 이전회사의 당기소득에서 공제

---

20) CCH(1997), p. 2,097.

되지 않은 금액에 한한다. 위의 '2)'의 이전대상이 되는 것 중에 (나) 투자회사의 관리비, (다) 세무상의 감가상각비 및 (라) 특정비용(charges on income)에 대해서는 이전회사에서 당기 총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전되지만 (가) 사업손실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이 때문에 이전회사는 그룹릴리프 대상이 되는 사업손실을 자회사 당기 기타 이익과 상쇄하지 않아도 이전이 가능하다. 특정비용(charges on income) 등에 대해서는 당기 총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여전히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전이 되지만 이 초과액을 계산(사용되지 않는 금액계산)할 때에는 전기부터 이월되어온 것은 고려되지 않는다.

나) 청구회사(claimant company)에 있어서의 상쇄

청구회사에서의 그룹릴리프 대상이 되는 소득은 자사의 당기 사업손실이나 이월사업손실을 공제하고, 특히 당기에 지불된 특정비용 등을 공제한 후의 소득이다.

다)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그룹릴리프 한도액

그룹릴리프 적용 회사들의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룹릴리프 한도액은 다음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통기간(overlapping period) 동안의 청구회사의 이익과 대체회사의 손실 중에서 적은 금액이 된다.

A사는 2001년 12월 31일 끝나는 사업연도 동안 12,000파운드의 이익을, B사는 2001년 6월 30일 끝나는 사업연도 동안 6,000파운드의 손실을, C사는 2001년 6월 30일 끝나는 사업연도 동안 15,000파운드의 손실을 기록하였다. A사는 200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공통기간에 대해서 처음엔 B사와의 그룹릴리프를 청구하고,

그 다음 C사와의 그룹릴리프를 청구하였다.

이 경우 그룹릴리프는 다음과 같다. B사의 손실에 대한 A사의 그룹릴리프 청구액은 공통기간동안의 A사 자신의 이익( $£12,000 \times 6/12 = £6,000$ )과 B사의 같은 기간동안의 손실( $£6,000 \times 6/12 = £3,000$ ) 중에서 적은 금액인 3,000파운드가 된다.

또한 C사의 손실에 대한 A사의 그룹릴리프 청구액은 공통기간 동안의 A사 자신의 이익( $£12,000 \times 6/12 = £6,000$ )과 C사의 공통기간 동안의 손실( $£15,000 \times 6/12 = £7,500$ ) 중에서 적은 금액인 6,000파운드가 된다. 그러나 A사는 이미 그 공통기간 동안의 B사의 손실에 대해 그룹릴리프를 청구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차감한 3,000파운드( $£6,000 - £3,000 = £3,000$ )가 C사 손실에 대한 A사의 그룹릴리프 청구액이 된다.

#### 4) 인수합병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사업손실은 순수한 인수 또는 합병에 따른 소유권 변경에 따라 아무런 제한 없이 이전된다. 사업손실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변경된 후 3년 이내에 사업의 본질이나 사업활동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때에는 이월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사업손익을 계산할 때에는 감가상각비(capital allowances)가 포함된다. 따라서 기업의 이전에 따른 별도의 미사용 감가상각비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미사용된 자본손실(capital loss)은 그대로 유지되며, 그 기업의 모든 미래수익에 대하여 상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당해 손실을 새로운 그룹 내에서 이용하는 것은 Schedule 7A의 규정에 의해 제한된다.

한편 TCGA 1992의 제179조에 따라 이미 이연된 연결그룹 내

캐피탈게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특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과거 6년 이내에 그룹 내 기업 간에 이전되었던 자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연결그룹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매각되었다가 그룹 내 취득에 따른 시장가격으로 즉시 재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순수한 상업적 목적에 따라 연결그룹 내 기업 간 주식교환(share exchange)이 발생한 때에는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어떠한 자본이득(capital gain)이나 자본손실(capital loss)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별규정(TCGA 1992, 제135조)에 따른 것이다. TCGA 제135조의 일반적인 규정은, 어떠한 자가 특정기업의 주식을 다른 기업의 주식과 교환하는 때에, 그 주식을 교환한 자는 원래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신규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취급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신 원래의 주식 및 교환된 주식은 원래의 주식을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주식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주식교환시점까지의 이득은 신규교환 주식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이는 탈세방지규정에 따른 심사의 대상이 된다.

#### 5) 적용 제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룹릴리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① 그룹릴리프를 조세회피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
- ② 국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 또는 이익획득을 의도하지 않는 비상업베이스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
- ③ 이중거주투자회사(dual resident investment company)의 사업결손

## 6) 그룹 멤버의 가입과 탈퇴

연결그룹에 대한 신규가입을 규율하는 특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 가입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검사절차도 없다. 또한 그룹릴리프 목적의 연결그룹을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건이나 검사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업회계연도가 종료하기 이전에 새로운 기업이 그룹에 가입하거나 기존 가입기업이 그룹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가입회사와 탈퇴회사의 기존사업회계연도는 종료되며, 새로운 사업회계연도가 개시된다. 청구회사(claimant company)와 대체회사(surrendering company)는 대체회사의 사업연도와 청구회사의 상응하는 기간에 동일한 그룹의 멤버이어야만 하는 것이다(ICTA 1988, s. 409). 따라서 그룹릴리프의 청구는 기업이 멤버그룹에 가입하기 이전의 사업회계연도기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경우 청구회사의 이익 또는 대체회사의 결손은 원칙적으로 기간에 안분하여 대응시키지만 기간안분방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ICTA 1988, s. 409(1)).

한편 대체회사가 당해 그룹릴리프 청구와 관련된 사업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그룹에서 탈퇴하게 되어도 그룹릴리프는 청구회사에 대해서 계속 적용될 수가 있다. 따라서 청구회사는 일정한 기한(그 청구와 관련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미 대체회사가 그룹 멤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룹릴리프를 청구할 수 있다.

## 7)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방지책

그룹릴리프에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다(ICTA 1988, s. 409(1)). 두 회사(A사와 B사)가 특정 회계기간 동안 같은 그룹 멤버더라도 아래의 세 경우에는 A사는 B사와 같은 그룹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여 그룹릴리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한다.

- ① A사가 B사의 그룹을 이탈하고 C사의 그룹에 참여하는 경우
- ② 어떤 사람 또는 사람들이 A사에 대해서는 통제력을 가지며 B사에 대해서는 통제력을 가지지 않을 경우
- ③ C사가 A사 또는 B사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3. 독일

#### 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과정

독일의 연결납세제도는 한 개의 기업을 다른 기업에 일체화하여 단일기관(Organschaft)으로 과세하는 제도로서 1969년에 법제화되었다. 특정한 기업이 자본적으로 다른 기업을 완전히 지배하고, 그 결과 지배되는 기업이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사실상 그 지배하는 기업의 한 사업부문에 불과한 경우 법률적인 독립성 여부에 상관없이 피지배기업의 손익을 지배기업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계약을 2개의 기업 간에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관제도는 독일의 독자적인 기업집단세제이며, 법인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및 지방영업세에도 적용된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기관주체(이하 모회사라고 함)와 기관회사(이하 자회사라고 함) 간에 체결된 이익이전계약에 근거하여 자회사 이익의 전액을 모회사에 각출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소득 전부를 모회사에 귀속시키는 제도이다<sup>21)</sup>(법인세법 제14조).

---

21) 이우택(2000), p. 78.

법인세법상의 기관제도는 기업의 입장에서 세부담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업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이에 비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기관제도는 세부담 경감 측면에서는 별 의미가 없으나 기업집단의 세무신고와 관련한 일 부담을 가볍게 해준다는 점에서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2000년에 이루어지고 2001년부터 시행된 독일의 세제개혁에서 독일의 기관과세제도의 변경이 있었다. 법인세법상의 기관과세제도의 요건이 지금까지의 자본적 요건, 경제적 요건, 조직적 요건 그리고 이익이전계약의 네 가지에서 가장 주된 요건이었던 자본적 요건과 이익이전계약의 두 가지로 단순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

## 나. 연결납세제도의 기본구조

### 1) 적용법인

#### 가) 모회사

법인세법에 의하면 기관제도의 모회사는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 법인, 개인연합체와 자산연합체, 혹은 인적회사가 될 수 있으며 실제적인 사업 활동의 중심과 법적소재지를 국내에 두고 있어야 한다. 자연인의 경우 국내에 법적 거주지가 있고 통상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 이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회사의 법적인 형태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법상에 설립근거를 둔 공기업 등과 같이 법인세 과세가 되지 않는 법인은 기관제도의 모회사가 될 수 없다. 외국기업의 국내등기지점과의 관계에서 자회사가 기관제도 성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등기지점의 외국본사가 국내에 실제적인 사업 활동의

중심과 법적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아도 기관제도의 모회사가 될 수 있다(법인세법 제18조).

나) 자회사

기관제도의 자회사는 국내에 실제적인 사업 활동의 중심과 법적소재지를 둔 법인, 즉 주식회사, 주식형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국한된다(법인세법 제14조). 기관제도의 모회사는 설립단계에 있는 법인도 가능한 것에 비하여 이러한 법인이 기관제도의 자회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법인세법 제14-17조). 1970년 1월 21일의 연방재정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기관제도의 자회사는 실제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자산관리 및 지분관리만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2) 기관제도의 성립요건

가) 구법에 의한 성립요건

자회사와 모회사 간에 기관제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민법적으로 유효한 이익이전계약이 존재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4조).

(1) 자본적 요건

모회사가 의결권의 50%를 초과하는 지분비율을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기관제도 성립의 첫 번째이며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법인세법 제14조 1호 1절). 법인세법 제14조 1호 2절에서는 간접적인 지분소유의 경우에도 간접적인 지분소유의 모든 단계에 의결권의 50%를 초과하는 지분보유가 이루어지는 경우 동 요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소유의 경우 그 중간

단계에 자연인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는 동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이 중간단계에 외국기업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는 동 요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Hermann/Heuer/Raupach, 법인세법 주석서, 제14조에 대한 주석 122호).

### (2) 경제적 요건

자회사가 전체적인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에 모회사의 기업 활동에 포함되는 한 부분으로 기능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4조 2호에 의거 경제적 요건이 충족된다. 법에서는 경제적 요건에 대하여 그 이상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50조 1-2항에서는 자회사가 비독립부문으로서 모회사의 경영조직에 편입되거나 그 기능 중에서 모회사의 사업활동을 촉진 또는 보완하는 경우를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로 보았다.

그러나 사업활동을 보완하거나 촉진한다고 하여 모회사와 자회사가 같은 산업분야에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76년 1월 21일 연방재정법원의 판결에서는 모회사가 자회사와 사업내용에서 관련이 없는 분야에 활동한다 하더라도 모회사가 모회사와 자회사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통일적인 지도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동 경제적 요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3) 조직적 요건

자회사가 전체적인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에 조직구조상 모회사에 소속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조직적 요건이 충족된다. 법에서는 조직적 요건에 대하여도 그 이상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14조 2호 2절은 자회사가 지배계약에 의하여 그 자산의 경영을 모회사의 위임하거나 자회사가 주식회사법 제 319-327조의 의미의 모회사의 편입회사인 경우 조직적 요건

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51조는 조직적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기준을 모회사의 의도가 자회사 단계에서도 인식되고 실제로 실행되는지에 두고 있다.

나) 신법에 의한 성립요건

2000년의 독일의 세제개혁으로 인하여 위의 세 가지 요건 중 경제적 요건 및 조직적 요건은 삭제되었다. 또 자본적 조건의 내용도 다소 수정되었다. 과거 구법에서는 자본적 요건의 성립이 직접적 지분소유와 간접적 지분소유에서 모두 가능하되 각각의 방법에 의하여 따로 따로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며 직접적인 지분소유와 간접적인 지분소유를 합하여서만 자회사의 5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를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신법에서는 이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위의 두 가지 요건의 삭제를 통하여 기관과세제도의 요건이 완화된 것이며 이는 조세제도의 단순화에도 기여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본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보다 조직적 요건 및 경제적 요건에 대한 실무가 훨씬 더 어려운 작업으로 평가된 바 있다. 또한 이 두 가지 요건이 삭제됨으로써 순수지주회사도 기관과세제도의 모회사로서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3) 이익이전계약

이익이전계약은 회사법적인 법적 성격을 가지는 계약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민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형식적 요건의 결여로 인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법인세법 제14-19조의 적용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기관제도의 특징은 주식회사법(또는 유한회사법)에서 규정하는 이익이전계약이라는

사법상의 계약에 기초하여 자회사가 가득한 성과가 모회사 소득의 직접적인 구성요소로 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여 세법상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특징의 의미에 있어서 세법의 규정은, 세법상의 부담조정조치를 창설적으로 정하였다는 점보다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에서의 손익귀속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정한 선언규정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관제도에 있어서 자회사의 이익은 자회사와 모회사 간에 전체 이익의 이전에 대한 이익이전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모회사에게로 이전이 가능하다. 또한 이익이전계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모든 기간에 대하여 이익은 실제로 이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익의 실제 이전은 반드시 현금의 이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양쪽에서 채권/부채로서 기장하면 그것으로 이익의 이전이 이행된 것으로 본다.

이익이전계약은 자회사의 이익이 처음으로 모회사에게 이전되는 회계연도의 말까지 최소한 향후 5년의 기간에 대하여 체결되어야 한다. 민법적으로는 이러한 최소/최대기간 규정의 의무가 없지만 세법적으로는 이러한 최소기간이 요구된다. 이 최소기간은 역년이나 회계연도 기준(역년이나 회계연도에는 꼭차지 않은 연도도 포함될 수 있음)이 아니라 12개월이 꼭찬 5년, 즉 60개월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최소기간 동안 이익이전계약이 시행되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계약의 존속기간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다.

이익이전계약이 유효한 경우 자회사인 주식회사 또는 주식형합자회사가 자신의 총이익을 모회사에 이전하는 의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법 제 302조에 의거, 모회사는 자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결손 중에서 그 자회사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보전할 의무를 가진다.

유한회사법에는 이러한 주식회사법 제302조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연방재정법원의 1980년 12월 17일 판결은 유한회사가 자회사인 경우에도 이익이전계약에는 손실보전에 대한 규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계약서에는 이와 관련하여 단순히 주식회사법 제302조를 지적하기만 하여도 충분하다고 하였다.

계약체결은 쌍방 회사의 주주총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주식회사법 291, 293(1), 302;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연방재정법원의 1988년 10월 24일의 판결).

이익이전계약에는 소수주주를 위하여 주식액면가액에 상응하여 반복적인 금전급부에 의한 보전을 하는 것, 즉 배당보증조항을 정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주식회사법 제 304조).

#### 4) 시간적인 제약

시간적으로는 자본적 요건은 법인세법 제14조 1호에 의하면 해당되는 과세연도의 시작부터 중단되지 않고 성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익이전계약도 법인세법 제14조 3호에 의하면 그 자회사의 이익(손실)이 모회사의 이익과 처음 합쳐지게 되는 연도의 말까지는 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연결납세방법

#### 1) 손익의 이전

당해연도 자회사의 총소득금액(이익 및 손실)은 원칙적으로 그 전액이 모회사에 귀속된다(법인세법 제14조). 이와 같은 손익이전은 과세상으로만이 아니라, 자회사의 순손익에 대응하는 순자산 증감만큼 모회사 지분이 증감하게 되는 사법관계를 수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손익을 이전함에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회사로 이전되지 않는다. 첫째, 합리적인 수준의 적립금은 모회사로 이전되지 않는다. 자회사는 일반적으로 상행위를 영위하는 사람의 합리적 판단이라고 판정될 수 있는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연도의 이익잉여금에서 적립금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법인세법 제14-15조). 따라서 이와 같은 유보이익부분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소득으로서 과세된다. 이와 같은 적립금의 유보는 일반적인 이익유보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이전, 설비갱신 등의 정당하고도 구체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금액에 한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5항). 둘째, 소수주주의 배당은 모회사로 이전되지 않는다. 소수주주에 대하여 지불하는 보상금(보증배당) 및 이에 대한 법인세부담(30%)의 납부액은 모회사가 아니라 자회사의 총소득금액으로서 과세된다. 즉, 보상금액의 4분의 3을 자회사의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다(법인세법 제16조). 이 금액이 모회사에서 지불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세는 자회사에 대하여 이루어진다(법인세법 제16조). 즉, 이 보상금과 법인세는 자회사의 소득에서 지불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다만, 자회사에서 과세결손이 발생한 경우에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지불한 배당보상금은 모회사 손실의 증가가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 2) 자회사 결손의 처리

이익이전계약 기간 중의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회사에서 발생한 결손은 계약기간 중에 유보된 자회사의 임의적립금의 소진으로 보전되는 금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당해연도에 있어서 모

회사가 보상하는 것으로 한다(주식회사법 제302조). 이 보상액은 모회사의 손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자회사에서는 결손의 이월·소급환급을 적용받을 수는 없다(법인세법 제15조 1항).

이에 반하여 이익이전계약 전에 발생한 자회사의 결손에 대하여 모회사가 보전의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보전인수액은 자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한 것으로 취급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또한 자회사가 정상적으로 결손을 발생시키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것에 의하여 이익이전계약이 위법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 3) 자회사의 청산 중의 소득

자회사가 해산되면 이는 자회사가 수입을 위한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이익이전계약에 근거 모회사에 이전될 수도 있었던 이익을 더 이상 발생시키지 못하게 된다. 자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 그 청산 중에 발생한 이익(법인세법 제11조)에 대해서는 이익이전계약에 의한 이익이전의무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회사 차원에서 과세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 4) 외국자회사 배당의 면세

외국자회사에 대한 출자(1/4 이상의 지분 소유를 기준으로 함)에 기초한 이익분배는 독일이 맺은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독일 내의 과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기관제도의 규정은 모회사가 동 규정에 의하여 우대를 받는 납세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법인세법 제15조 2호).

#### 5) 이익이전계약의 효력

이익이전계약은 자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최소한 5년의 기간에 대하여 체결되어야 하고, 익년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는 효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당하고 중요한 해약의 사유<sup>22)</sup>가 있는 경우에는 해약통지에 의하여 5년 이내에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가능하다(법인세법 제14조 4호 3절). 이와 같은 중요한 사유가 없이 5년 이내에 해약한 경우에는 이익이전계약이 세법상으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7항).

#### 6) 기부금 인정 기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은 모회사와 자회사에서 독립적으로 계산한다. 모회사로 이전된 자회사의 이익금은 모회사의 손금인정 기부금 계산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 4. 일 본

#### 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과정

일본은 1997년부터 지주회사제도를 시행하면서부터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재무성은 2001년 말 ‘평성 14년도 세제개정’에서 2002 회계연도부터 도입할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일본이 연결납세제도를

---

22) 중요한 해약의 사유는 모회사에 의한 자회사 지분의 양도 또는 출자,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변경, 합병 또는 청산 등의 경우에 인정된다.

도입하게 된 이유는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sup>23)</sup>

첫째, 일본경제가 오랫동안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하에서 일본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다는 측면이다. 정부 및 재계는 2000년 말에 있었던 기업분할·합병 등에 관한 세제의 대폭적인 개편에 이어 연결납세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의 조직재편성이나 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 및 강화, 그리고 경제구조 개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이다.

둘째, 일본의 경제·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걸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였으며, 특히 세제를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해 중립적인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측면이다. 정부는 기업이 경영전략상 분사화 또는 사업부제 중 어느 하나의 사업형태를 선택함에 있어서 세제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자유스러운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이다.

일본은 1999년부터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문제와 관련하여 법인 과세체계 전반에 걸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재무성 산하 세제조사회 내에 법인과세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법인과세소위원회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과연 필요한지를 검토하였으며, 또한 만일 도입한다면 어떤 유형의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에 따라 1999년 말 세제조사회는 「평성 12년도 세제개정에 대한 답신」을 통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본의 기업경영 측면에서 기업집단의 일체적 경영의 경향이 강하다는 점, 기업조직의 유연한 구조조정을 가

23) 税制調査會(2001, a), pp. 1~5 참조.

능하도록 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이나 상법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의 환경변화 적응, 국제경쟁력의 유지·향상, 그리고 기업의 경영형태에 대한 세계의 중립성 유지 등의 관점에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후 2001년 10월 세계조사회는 『연결납세제도의 기본방향』에서 연결납세제도의 기본구조를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세계조사회는 기업집단의 경제적 일체성에 초점을 두고 연결납세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논리하에서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과 같은 유형의 본격적인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재무성은 2001년 말 「평성 14년 세제개정」에서 2002 회계연도부터 도입할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한편, 「법인세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2002년 4월 1일부터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일본은 미국 및 프랑스가 시행하고 있는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와 독일 및 영국이 시행하고 있는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전자의 유형을 채택하였다. 일본 정부는 일체성을 가지고 경영되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기업집단에 대해서 각 법인을 납세단위로 과세하는 것보다 그룹 전체를 하나의 납세단위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보다는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가 기업집단의 경제적 일체성을 중시하는 세제라고 볼 수 있으며 손익상계, 결손공제, 내부손익이연 등을 포괄하여 이론적으로 정비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일본의 연결납세제도는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기업그룹은 실질적으로 단일법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일체성을 가진 경우로 한

정하고 있다. 즉, 하나의 법인에 의해 경영됨과 동시에 이익이 그 하나의 법인으로 귀속되어 완전하게 하나로 인정하는 기업그룹이다. 이에 따라 모회사와 그 모회사가 총발행주식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자회사(100%)를 모두 그 대상범위로 하고 있다. 또한 일단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연결납세제도의 취소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자의적인 조세회피와 연결될 우려가 있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제의 간소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납세자에게 세부담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증하기 위해 연결납세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 제도가 어느 정도 복잡해지는 것은 감수하였다. 또한 다른 여러 국가의 경험을 토대로 기업활동이 국제화되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함과 동시에 적정하고 원활한 세무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였다.

#### 나. 연결납세제도의 기본구조

##### 1) 적용법인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법인은 내국법인인 모회사와, 그 모회사에서 발행주식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내국법인(100% 자회사)이다. 또한 종업원 지주회의 주식 및 스톡옵션에 의해 취득된 주식 중에서 일정한 것에 대해서는 보유비율의 관점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연결납세제도에 가입하는 법인은 연결모회사의 100% 자회사 또는 손회사가 된다.<sup>24)</sup>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되는 법인은 그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

---

24) 井上久彌 外 2人(2002), p. 640.

되며, 당연히 납세의무자가 되는 법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모회사가 되는 법인은 보통법인과 협동조합 등으로 하며, 자회사는 보통법인<sup>25)</sup>에 한한다. 또한 외국법인(내국법인의 100% 자회사 등)은 적용 법인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대상 자회사를 100% 자회사로 하고 있는 이유는, 소수주주지분에 대응하는 자회사의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액까지 기업그룹의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액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 소수주주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 제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sup>26)</sup>

## 2) 적용방법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은 선택제이며,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 전의 날까지 모회사 및 그 모든 100% 자회사의 연명으로 승인신청서를 국세청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까지 승인 또는 각하의 처분이 없었던 경우에는 그 전일에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연결모회사가 그 설립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결납세제도의 승인신청서의 제출기한은 그 설립일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을 경과하는 날과 설립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기산하여 5개월 전의 날 중에서 더 빠른 날짜로 한다.

연결모회사가 설립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제도

---

25) 보통법인이란 공공법인, 공익법인 및 협동조합을 제외한 모든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상호회사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인격이 없는 사단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일본 법인세법 제2조 제9호.

26) 租稅研究協會(2002), p. 86.

를 적용하는 경우, 설립사업연도 종료일의 날짜와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5개월 전의 날 중에서 더 빠른 날짜로 할 수가 있다.

한편 연결납세제도 적용의 승인신청에 대해 승인 또는 각하의 처분이 없었던 때의 간주승인일은, 그 승인신청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5개월을 경과한 날로 한다. 또한 이 특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자산의 시가평가에 의한 평가손익을 계상할 필요가 있는 자회사는 다음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에 연결그룹에 가입한 것으로 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되었다.

연결납세제도 적용의 취소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국세청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실제로는 일단 선택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하는 것이 된다.

일본의 연결납세제도 적용은 선택적이다. 내국법인이 100% 자회사를 보유하고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이 가능한 상황하에서는, 당해 내국법인은 단체신고 또는 연결납세제도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으며,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하게 되면, 적용요건을 만족하는 자회사 등은 연결그룹에 강제가입하게 되며 연결그룹에 대한 가입의 선택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일단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한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할 의무를 가지게 되며, 그 적용의 취소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sup>27)</sup>

### 3) 납세주체 및 사업연도

연결사업연도를 선택한 모회사는 연결소득금액 및 연결세액 등을 기재한 연결납세에 관한 신고서를 모회사의 소관 세무서에 신

27) 井上久彌 外 2人(2002), pp. 641~642.

고하여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연결그룹에 가입하고 있는 자회사 등은 모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결납부책임을 갖게 된다. 또한 각 자회사는 연결소득의 개별귀속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 자신의 소관세무서에 제출한다. 적용법인의 연결사업연도는 모회사와 동일하게 일치시켜야 하며, 간주사업연도로 한다.<sup>28)</sup>

## 다. 연결소득금액 및 연결세액 계산구조

### 1) 개요

#### 가) 연결소득금액 및 연결세액의 계산 개요

연결납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연결소득금액은 연결그룹 내의 법인의 연결소득(소득 및 결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법인세법 제81조). 또한 연결법인세액은 연결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각종 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며(법인세법 제81조의 12~17), 이 금액을 연결모기업이 신고·납부하게 된다(법인세법 제81조의 22 제1항, 제81조의 27).

연결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세무상 익금산입액이나 손금산입액에 대해서는 연결그룹 내의 각 법인이 개별적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항목과 연결그룹 전체로서 계산해야 하는 항목이 있으며, 또한 세액공제에 있어서도 연결그룹 내의 각 법인이 별도로 계산을 행하는 항목과 연결그룹 전체로서 계산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 따라서 계산과정에서 각 법인의 별도 계산과 연결그룹 전체로서의 계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또한 연결납세에서 연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연결법인 간 특정자산의 양도손익의 이연 계상 및 자회사 법인 주식의 장부가

---

28) 井上久彌 外 2人(2002), p. 644.

액 수정에 의한 자회사법인 주식양도손익의 수정과 같은 연결납세 특유의 조정항목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법인세법 제81조의 10 등).

한편 연결소득금액 및 연결납세액의 계산 과정에서 필요한 조정을 행한 결과 산출된 금액 등은 연결그룹 내의 각 법인에게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연결세액에 대해서는 연결그룹 내의 각 법인의 개별소득금액 또는 개별결손금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나) 연결그룹 내의 법인간 거래

연결그룹 내의 법인 간 자산 등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해 행한다. 연결그룹 내의 법인 간에 자산(장부가액이 1,000만원 이상의 고정자산, 토지 등, 금전채권, 매매목적의 유가증권을 제외한 유가증권, 또는 이연자산)의 이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손익은, 그 자산을 연결그룹 외부로 이전할 때 그 이전을 행한 법인에서 계상한다. 또한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 유가증권 및 이연자산에 관한 양도손익은 간편법에 의해 계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결그룹 내의 법인 간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 전액을 손금불산입한다.

다) 이익·손실의 이중계상 방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연결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을 중지하는 경우 등에는 그 양도 등의 시점에서 그 연결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수정한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 투자수정이라고 지칭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모회사에서 자회사 S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이 100이라고 하자. 연결납세신고에 있어서 S사의 소득이 50이

라고 하면, S사 주식의 장부가는 150이 된다. 즉, 모회사가 S사 주식을 150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수정하지 않지만, 주식양도익 50과 S사의 과세소득 50이 이중계상된다. 따라서 S사 주식은 150으로 수정한다.<sup>29)</sup>

라) 연결결손금액<sup>30)</sup>

연결결손금액은 5년간 이월공제한다. 연결납세제도의 적용개시 전에 발생한 결손금액은 다음에 게재하는 것에 한하여 연결납세제도하에서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 ① 모회사의 과거 5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액
- ② 과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주식이전에 의해 설립된 모회사가, 그 주식이전에 관한 완전자회사였던 자회사 주식의 전부를 그 주식이전일부터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회사의 과거 5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액 또는 연결결손금액의 개별귀속액

한편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을 중지하는 경우, 연결자회사가 연결그룹에서 이탈하는 경우 등에는 연결결손금액의 개별귀속액을 그 적용을 중지하는 모회사 또는 연결자회사, 또는 이탈하는 연결자회사에게 인계한다.

일본의 연결납세제도하에서는, 자회사의 연결 전 결손금의 전입을 제한함으로써 연결납세제도의 적용개시 전에 발생한 결손금액 및 연결그룹 가입 전에 발생한 결손금액은, 모회사의 것을 제외하고는, 연결납세제도하에서 이월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29) 井上久彌 外 2人(2002), p. 645.

30) 현행 법인세법상 개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특징이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는 연결납세도를 선택 가능한 상황에 있는 자회사 등의 결손금액은, 그 전액을 연결납세신고에서 연결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연결그룹에 가입한 법인의 단체신고기간 중에 발생한 결손금액은, 당해 법인이 연결납세제도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단체신고기간 중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연결납세제도에서는 동 제도 도입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한 대책으로서 자회사의 연결 전 결손금의 전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sup>31)</sup>

마) 세율<sup>32)</sup>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다(법인세법 제81조의 2). 다만 2년간의 조치에 대하여, 2002년 4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에 2%p를 추가한다(조세특별조치법 제68조의 8).

- ① 모회사가 보통법인인 경우의 세율 : 30%
- ② 모회사가 중소기업인 경우 경감세율(연 800만엔 이하의 부분) : 22%
- ③ 모회사가 협동조합 등인 경우의 경감세율 : 23%
- ④ 모회사가 특정 의료법인인 경우의 경감세율 : 23%
- ⑤ 모회사가 특정 협동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억엔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한 세율 : 26%

바) 신고납부기한

31) 井上久彌 外 2人(2002), pp. 645~646.

32) 현행 법인세법상의 개별법인에 대한 세율은 보통법인 30%,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공익법인 등에 대한 경감세율은 22%이다.

연결세액의 신고납부는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부터 2개월 이내에 행한다. 그러나 연결신고에 대해서는 2개월의 신고기한 연장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2)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 가) 개별법인소득의 계산

연결소득금액의 산출을 위해서는 우선 각 개별법인에 있어서의 개별법인소득이 계산되어야 한다. 개별법인소득의 계산은 개별납세를 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법인의 당기이익금액을 기초로 하여 법인세 신고서의 별표를 작성하고 개별베이스에서의 신고소득을 조정함으로써 산출한다.

원래 연결납세제도에서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연결그룹 전체로서 연결소득을 계산하여야 하지만 각 법인이 개별베이스로 소득조정을 할 수 있는 항목을 남겨두는 이유는, 주로 손금정리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연결베이스에서의 계산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법인이 개별법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법인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소득조정이 되어야 하는 항목으로는 감가상각비와 각종 충당금, 압축기장 및 기타 신고조정항목들이 있다.

#### (1)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개별납세에 있어서 법인이 상각비로서 손금정리한 금액 중에서 상각한도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이 손금산입되며, 연결납세상 감가상각비는 각 법인의 개별계산에 의하는 것이 된다(법인세법 제81조의 3, 제31호).

감가상각비는 과거부터 손금산입의 요건으로서 확정된 결산에

있어서 손금정리가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연결그룹 전체로서 계산되지 않고 연결그룹 내의 각 법인이 별도로 상각한도액의 계산을 하는 것으로 되었다. 즉, 법인세법 제81조의 3에 의하면 연결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액 및 손금액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연결사업연도의 익금액 또는 손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별납세법인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도액을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방법(정액법, 정률법 등)에 대해서는 연결그룹 내에서 통일할 필요는 없으며, 각 연결법인이 선택하고 있는 상각방법에 따르면 된다(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연결납세 적용에 있어서 회계처리방법 등을 연결그룹 내에서 통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가상각방법에 대해서도 회계처리방법의 한 가지로서 통일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 (2)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의 편입한도액의 계산은 연결납세를 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결그룹 내의 각 법인의 개별계산에 의한다(법인세법 81조의 3, 제52조의 제1항 및 2항). 이는 대손충당금의 계산에 대해서는 확정된 결산에 있어서의 손금정리에 의해 계상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과 각 법인의 개별사정에 기초하여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경우 각 연결기업의 대손충당금 계산은 개별납세를 적용하는 법인의 대손충당금 계산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연결납세에서는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이 되는 개별평가금전채권 및 일괄평가금전채권에 대해서는 연결그룹 내의 법

인간의 금전채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법인세법 제 52조 제8항). 따라서 연결그룹 내 상호 간의 금전채권은 대손충당금의 편입한도액의 계산대상이 되는 금전채권에서 제외하게 될과 동시에, 일괄평가금전채권에 관한 대손실적률의 계산에서도 제외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및 제2항)

### (3) 기타 충당금 및 준비금

상여충당금은 1998년도 세제개정에서 폐지되었지만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1998년 4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구 법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편입한도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편입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급은 연결납세에 있어서도 적용되며, 상여충당금 편입한도액의 계산은 연결그룹 내의 각 법인에서 개별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의 충당금 및 준비금도 원칙적으로 연결그룹 내의 법인마다 개별납세와 마찬가지로 편입한도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연결납세제도의 영향은 유지되지 않는다. 다만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연결자회사에 대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조특법 제68조의 43)

### (4) 압축기장

교환 또는 특정자산의 매입대체에 관한 압축기장은 연결그룹 내의 각 법인마다 적용한다. 연결그룹 내의 법인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를 행하고, 이 것에 대하여 압축기장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압축기장을 적용하고 압축손을 공제한 양도익의 잔액에 대하여 연결그룹 내 법인간 거래의 원칙이 되는 매도자측 과세이연 방식을 적용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22, 제1항).

(5) 기타 조정항목

이상에서와 같은 개별소득조정항목 이외에도 법령에 의해 연결소득조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기타의 신고조정항목, 예를 들면 해외투자 등의 손실준비금 등과 같이 조세특별조치법에 규정한 준비금의 적립한도초과액, 임원상여손금불산입액 및 채고자산평가손 등과 같은 각종 신고조정항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연결납세그룹 내의 각 법인의 계산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나)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산된 개별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연결그룹 전체의 연결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연결소득 조정을 통하여 연결납세상의 신고조정을 하여야 한다. 연결그룹 전체로서 계산되어야 하는 소득조정항목은 배당수입 등의 익금불산입,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교제비 등의 손금불산입 등이 포함된다. 또한 연결납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개별납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연결납세 특유의 소득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연결법인 간 특정자산의 양도손익 이연 및 그 계상과 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 수정에 의한 자회사주식 양도손익 수정 항목이다. 아래에서는 연결소득금액의 계산시 고려되어야 하는 소득조정항목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1) 배당수입 등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경우 수입배당 등의 익금불산입액의 계산은 연결그룹 전체로서 계산된다(법인세법 제81조의 4 제1항). 수입배당 중에서 익금불산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입배당의 원인이 되는 주식 등(출자 포함)을 연결법인주식 등, 관계법인주식 등, 기타 이에 해당되지 않는 주식 등의 3가지로 분류하여 별도

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연결그룹 내의 법인으로부터의 수입배당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납세주체 내부에서의 이익의 재분배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시하여 부채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그 전액이 익금불산입된다. 또한 연결그룹 외부로부터의 수입배당에 대해서는, 그 주식이 관계법인주식 동일 경우에는 부채이자를 공제한 금액의 100%, 기타 주식인 경우에는 부채이자 공제한 금액의 50%를 익금불산입한다.

한편 연결법인주식 등이란 단순히 연결그룹 내의 주식 등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연결법인주식 등은 그 배당 등의 계산시기의 개시일부터 그 말일까지 배당을 비불하는 법인이 계속하여 연결 모회사와 연결완전지배관계에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주식을 말한다(법인세법 제81조의 4 제4항). 따라서 배당수령시에는 연결자회사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결법인주식 등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또한 모회사 또는 연결자회사가 보유하는 연결그룹 외부 법인의 주식이 관계법인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연결그룹 전체의 보유주식 수 등에 의해 판정한다. 연결그룹 외부의 법인으로부터의 수입배당에 관한 부채이자의 공제액은 연결그룹 전체로서 계산한다.

## (2) 기부금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을 무제한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조세회피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경비로서의 성질이 반드시 인정되지 않는 것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에 대해서는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손금산입한도액은 소득금액 및 법인의 자본 등의 금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

하지 않는다.

연결납세제도에 있어서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그룹을 일체로 하여 계산한다. 여기에서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 및 자본 등의 금액은 연결소득금액 및 모회사의 자본 등의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제81조의 6, 제3항). 또한 연결납세그룹 내의 법인 간 기부금에 대해서는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그 전액을 손금불산입한다(법인세법 제81조의 6, 제2항). 그러나 실적부진 상태인 자회사의 도산방지 등과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의 연결법인으로의 지출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 (3) 교제비

연결납세제도에 있어서 교제비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은 연결그룹을 일체로 하여 계산된다(조세특별조치법 제68조의 66). 즉, 개별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법인의 자본금액에 따라 교제비의 손금산입한도액이 달라지지만, 연결납세제도에서의 교제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연결모회사의 자본금액에 대응하여 손금산입한도액이 정하여진다. 따라서 연결모회사의 자본금액이 5천만엔을 초과하는 연결납세그룹에 대해서는 그룹의 지출교제비 전액이 손금불산입된다.

한편 각 연결법인에게 귀속되는 교제비 등의 손금불산입액의 계산은 연결그룹 전체의 교제비 등의 손금불산입을, 각 법인의 지출교제비 등의 금액이 연결그룹 전체의 지출교제비 등의 합계액에서 점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출된다(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조의 95).

#### (4) 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의 이연

연결그룹 내의 법인 간 자산의 양도는 하나의 납세단위 내에서의 이전에 불과하므로 그 시점에서는 양도손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이연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자산을 연결그룹 외부에 양도하고 연결그룹 내에서 비용화한 시점에서는 연결그룹이라는 납세단위 외부로 유출된 것이므로 과세하게 된다. 즉, 연결그룹 내의 법인 간 자산의 양도손익은 원칙적으로 일단 이연하고 과세해야 할 현상이 발생한 시점에서 계상하게 되는 것이다(법인세법 제81조의 10 제1항 및 제2항).

또한 자산의 이전을 받은 법인이 그 자산의 양도 등을 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산을 이전한 법인 또는 자산의 이전을 받은 법인 중 어느 쪽이 연결그룹에서 이탈한 경우에도, 그 자산을 이전한 법인은 그 이연한 양도익 또는 양도손의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액 또는 손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81조의 10 제2항 및 제4항, 동법 제61조의 13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55조의 22 제2항 및 제11항).

#### (5) 연결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수정

연결납세에서는 연결그룹 내 법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게 되므로, 연결자회사의 이익·손실은 연결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거나 공제된다. 그후 연결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익을 실현한 자회사의 양도가액은 높고, 손실을 실현한 자회사의 양도가액은 안정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자회사주식의 양도손익에는 그 자회사에서 발생한 이익 및 손실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게 마련이며, 그 부분 중에서 연결납세 참가 중의 이익 및 손실에 대해서는 동일 연결그룹 내에서 이미 과세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런 조정을 하지 않게 되면 자회사주식의 양도손익으로서 연결그룹이라고 하는 동일납세주체가 다시 과세하거나 공제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중과세 또는 이중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연결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원가인 장부가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sup>33)</sup>

구체적으로는 자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익분만큼 장부가액을 인상하고,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만큼 장부가액을 인하하게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의 2 제2항).

### 3) 연결세액의 계산

위에서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출된 연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조정전 연결세액이 산출된다. 연결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인세의 세율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결모회사의 구분에 따라 상이하다.

이와 같은 조정 전 연결세액을 가지고 최종적인 연결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해야 하는 연결세액조정을 거쳐야 한다. 연결세액조정에는 연결그룹의 개별베이스에서의 연결세액조정과 연결그룹 전체베이스에서의 연결세액조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개별베이스의 연결세액조정에는 설비투자에 관한 특별세액공제가 있으며, 연결베이스에서의 연결세액조정에는 증가시험연구비특별세액공제, 소득세액공제 및 외국세액공제가 있다.

또한 연결모회사가 동족회사인 경우에는 연결납세그룹을 일체로 하여 유보금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계산이 필요하게 되는 연결동족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유보금과세와 관련한 세액조정이

33) 税理士法人トーマツ(2002), pp. 456~457.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하에서는 연결세액조정항목들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설비투자에 관한 특별세액공제

청색신고법인이 특정한 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별조치법(제68조의 10~1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액의 특별공제를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의 20%를 초과하는 특별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1년간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결납세에서는 이와 같은 설비투자에 관한 세액공제는 개별법인마다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결세액의 일정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 나) 증가시험연구비 세액공제

청색신고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증가시험연구비에 관한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에 있어서 증가시험연구비의 특별세액공제의 계산은 연결납세그룹을 일체로 하여 적용한다(조특법 제68조의 9 제1항). 이를 위해서는 개별 법인의 시험연구비 금액을 합산하고 연결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공제액을 계산한 다음 개별법인에게 배분한다.

#### 다) 소득세액공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결납세제도에서도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은 연결법인세액에서 공제된다(법인세법 제81조의 14 제1항). 이 경우 공제를 받는 소득세액은 손금불

산입되며(법인세법 제81조의 7), 연결확정신고서에 금액 및 계산과 관련된 명세를 기재하여야 한다. 연결법인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결모회사에 대하여 환급된다(법인세법 제81조의 29 제2항).

공제대상이 되는 소득세액은 이자·배당 등에 대한 소득세, 공사채의 이자, 법인으로부터의 이득, 이자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투자신탁 및 특정목적 신탁의 수익분배, 기타 정기적금의 급부보전금, 저당증권의 이자, 간주배당 등이다. 이들 공제대상 소득세액 중에서 공사채의 이자 및 배당 등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그 원본의 소유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26 제1항, 제140조의 2 제1항).

공제대상금액의 계산은 연결그룹을 일체로 하여 이루어지며, 그룹 내의 법인 간에 원본이 매매된 경우에는 원본소유기간을 통산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26 제2항~제5항).

#### 라) 외국세액공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전세계소득이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외원천인 소득에 대하여 일본의 법인세와 외국의 법인세가 모두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한 가지 방법이 외국세액공제이다.

개별납세제도에서는 내국법인은 공제대상 외국법인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에는 이중과세부분으로 산출된 공제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기납부한 공제대상 외국납부 법인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69조 제1항).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국제적 이중과세를 배제할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개별납세의 경우와 동일한 외국세액공제 제도가 설정되어 있다(법인세법 제81조의 15). 그러나 그 공제한

도액은 연결그룹 전체를 일체로 하여 계산하게 된다는 점에서 개별납세제도와 상이하다.

그러나 연결납세에 있어서 실제로 공제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연결그룹 내의 각 법인의 계산이 필요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연결그룹 전체로 계산한 공제한도액을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하여 각 연결법인에서 공제세액을 계산하며, 그 합계가 연결그룹에 있어서의 외국세액공제세액이 되는 것이다.

#### 마) 동족회사의 유보금과세

동족회사에 유보금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유보금액이 유보공제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법인세 이외에 그 초과하는 금액(과세유보금액)에 대해 특별세율에 의한 법인세가 과세된다(법인세법 제67조).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연결모회사가 동족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족회사의 유보금과세가 적용되지만 연결그룹을 일체로 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 개별납세와 다른 취급을 하게 된다(법인세법 제81조의 13). 즉, 연결소득 전체를 대상으로 연결유보금액을 계산하고, 연결유보공제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연결그룹 전체의 연결소득 및 연결이익적립금액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연결유보공제액을 산정하는 때에 사용하는 기말자본금액은 연결모회사의 것을 사용하게 된다.

한편 이상과 같은 세액공제 등을 거쳐 최종적인 연결법인세액이 결정되면, 연결모회사가 이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법인에 대응하는 연결소득금액 및 연결세액의 개별귀속액 등은 각사에 통지되고, 이 개별귀속액 등을 기재한 서류가 세무서에 제출된다. 또한 이러한 연결세액에 대해서는 연결납세그룹 내의 각 법인의 개별소득금액 또는 개별결손금액을 기초로 하여 배분하게 된다.

## 라. 연결그룹에 대한 가입 및 탈퇴

### 1) 연결납세제도의 적용개시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연결그룹에 가입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적용개시 또는 가입 전후에 간주사업연도를 설정하고, 그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단체납세제도 또는 다른 연결그룹의 연결납세제도하에서 신고납부를 행하며, 그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결납세제도하에서 신고납부를 한다(법인세법 제14조 제7호).

### 2) 적용개시 또는 가입시의 시가평가

적용개시 또는 가입시에 적용개시법인 또는 가입법인의 자산(고정자산, 토지 등, 금전채권, 매매목적의 유가증권을 제외한 유가증권 또는 이연자산)에 대해서는, 직전의 사업연도에서 시가평가에 의해 평가손익을 계상한다(법인세법 제61조의 12 제1항). 또한 평가대상이 되는 자산 중에서 그 내포손익이 자본 등의 금액의 2분의 1 또는 1,000만엔 중에서 더 적은 금액에 만족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동법 시행령 제122조의 12 제1항 제4호).

그러나 다음에 기재하는 법인(가입의 경우는 ④부터 ⑦까지에 기재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자산의 시가평가에 의한 평가손익의 계상을 하지 않는다.<sup>34)</sup>

① 모회사

- ② 모회사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5년 전의 일로부터 당해 개시일까지의 기간에 주식이전에 의해 설립되고, 또한 당해 모회사가 당해 주식이전일부터 당해 개시일까지 계속

34) 井上久彌 外 2人(2002), pp. 647~650.

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완전자회사

- ③ 모회사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5년 전의 일부부터 당해 개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의 주식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법인, 즉 모회사에서 장기(5년 초과) 보유하고 있는 100% 자회사
- ④ 모회사 또는 그 100% 자회사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5년 전의 일부부터 당해 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100% 자회사를 설립하고, 또한 모회사가 당해 설립일부부터 당해 개시일까지 계속하여 당해 100% 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100% 자회사, 즉 장기 보유하고 있는 손회사 등
- ⑤ 모회사가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5년 전의 일부부터 당해 개시일까지의 기간에, 적격합병, 합병유사적격분할형분할 또는 주식이전에 의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되고, 또한 당해 모회사가 당해 합병, 분할 또는 주식이전의 일부부터 당해 개시일까지 계속하여 당해 주식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법인. 또한 이 법인은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완전자회사가 당해 5년 전의 날(당해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완전자회사가 당해 5년 전의 일로부터 당해 합병일의 전일, 분할일의 전일, 또는 주식이전일까지의 기간에 설립한 100% 자회사에 대해서는 당해 설립일)부터 당해 합병일의 전일, 분할일의 전일 또는 주식이전일까지 계속하여 그 주식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한한다. 즉, 이 법인은 적격합병에 관련된 피합병법인이 장기보유하고 있었던 100% 자회사로서 그 적격합병에 의해 모회사의

100% 자회사로 된 것 등이다.

- ⑥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5년 전의 일로부터 당해 개시일  
까지의 기간에 법인의 주주가 보유하는 당해 법인의 단주에  
대한 당해 법인, 모회사, 그 100% 자회사에 의한 매입 및 기  
타 이와 유사한 매입, 또는 법인의 주주가 법령의 규정에 의  
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인의 주식 보유가 제한됨에 따라  
그 주식에 대하여 그 법인, 모회사, 그 100% 자회사에 의한  
매입에 의해 당해 모회사가 당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되고, 또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당해 개시일까지 계속하여 당해 주식의 전  
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법인.  
즉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주식의 매입 등에 의해 모회사의  
100% 자회사로 된 것
- ⑦ 모회사가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5년 전의 일로부터 당  
해 개시일까지의 기간에 주식교환에 의해 법인의 주식 전부  
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되며, 또한 당해  
주식교환일로부터 당해 개시일까지 계속하여 당해 주식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로서, 아  
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때의 당해 법인이다. 즉, 주식교환에 관  
련된 완전자회사(이 완전자회사에서 장기보유되고 있던  
100% 자회사를 포함함)로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이  
에 해당한다. 이 법인은, 완전자회사와 당해 완전자회사가 당  
해 5년전의 일(당해 완전자회사가 당해 5년전의 일로부터 당  
해 주식교환일까지의 기간에 설립한 100% 자회사에 대해서는  
당해 설립일)부터 당해 주식교환일까지 계속하여 그 주식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한한다.  
i) 직전 사업연도 종료시점에서 당해 법인의 자산(채고자

산,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유가 제한되는 것 및 이와 유사한 것 제외함)의 전부에 대하여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이후에 양도, 교환, 대손, 제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의한 이익, 손실의 계상을 행할 것이 예상되지 않는 것

- ii)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그 모든 명세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
- iii) 직전 사업연도 종료시점에 있어서 모회사가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 iv) 법인세를 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당해 법인을 100% 자회사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한 것

연결납제도 적용개시의 경우 자산의 시가평가에 의한 평가손익의 취급과 관련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있어서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5년 전의 날은, 2002년 1월 1일로 한다. 연결그룹에 가입하는 경우의 자산의 시가평가에 의한 평가손익의 취급에 관해서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적격합병 등의 가입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한 법인의 주식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2002년 1월 1일로 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시가평가에 의한 평가손익의 계상을 행하지 않는 가입법인에 있어서 장기보유의 판정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에 관해서는 2002년 1월 1일의 현황에 의해 판정한다. 또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적격합병 등의 가입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한 법인의 주식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2002년 1월 1일로서 5년 초과 판정을 하는 것으로 된다.

3) 연결그룹에의 가입

가입법인은 그 가입 전후로 간주사업연도를 설정하고 가입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개별납세제도 또는 다른 연결그룹의 연결납세제도하에서 신고납부를 행하고, 가입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결납세제도하에서 신고납부를 행한다. 가입법인의 결산일 및 가입일이 모회사의 결산일의 전후 1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입법인에 대하여 간주사업연도의 특례가 설정된다.

4) 연결그룹으로부터의 이탈

연결그룹에서 이탈한 법인은 그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에 이탈한 것으로 간주하고, 5년간 재가입을 인정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4조의 3 제2항 제3호).

5) 기타

그 법인(시가평가의 적용 제외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 제외함)의 직전 사업연도에 있어서 그 이연되는 손익의 계상 또는 그 특별계정의 금액은 소거한다.

- ① 연결납세제도의 적용개시 전 또는 연결그룹 가입 전의 장기 할부판매 등에 관한 손익으로서 이연되어 있는 것(1,000만엔 미만의 것 제외)
- ② 특정자산의 매입대체 등에 관한 특별계정의 금액(1,000만엔 미만의 것 제외)

마. 적용관계 경과조치

연결납세제도는 2002년(평성 14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고 또

한 2003년 3월 3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법인세법 부칙 제2항). 다만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둔다.

#### 1)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4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개시하고, 또한 2003년 3월 3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 전의 일(그 날이 2002년 12월 31일 이후인 경우에는 同日)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사업연도 종료일(그 날이 2003년 6월 30일 이후인 경우에는 同日)까지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수가 있다(법인세법 제4조의 3 제1항, 동법 부칙 제3조 제1항).

이 경과조치는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법령의 정비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과 2002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사업연도가 연결납세제도 적용의 처음 사업연도가 되기 때문에 그 집행에 있어서 탄력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3월 결산법인의 경우에 2002년 4월 1일에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고자 하는 법인(2003년 3월 말 결산)의 경우에 2002년 9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03년 3월 말까지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연도에 있어서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된다. 또한 2003년 4월 1일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2004년 3월 말 결산)이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2002년 12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02년 6월 30일까지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연도에 있어서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2) 적용개시시의 자회사 및 최초의 연결납세제도 중에 가입한 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는 경우, 다음에 기재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에 연결그룹에 가입한 것으로 한다(법인세법 제4조의 3 제5항 및 제10항, 동법 부칙 제3조 제3항).

- ① 적용개시시의 자회사 중에서 자신이 소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시가평가에 의한 평가손익의 계상을 행할 필요가 있는 것
- ②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그룹에 가입한 법인 중에서 자신이 소유한 자산에 대하여 시가평가에 의한 평가손익의 계상을 행할 필요가 있는 것

또한 적용개시시의 자회사로서 모회사와 사업연도가 상이한 것 중에서 자신이 소유하는 자산 중에서 시가평가에 의한 평가손익의 계상을 행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중에 개시하는 최종의 사업연도 개시일에 연결그룹에 가입한 것으로 한다.

한편 연결납세제도의 적용개시의 경우 자산의 시가평가에 의한 평가손익의 취급에 대하여, 2006년(평성1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있어서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5년 전의 일은, 2002년 1월 1일로 하며, 연결그룹에의 가입의 경우 자산의 시가평가에 의한 평가손익의 취급에 관해서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적격합병 등의 가입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한 법인의 주식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2002년 4월 1일이 된다(법인세법 부칙 제9조 제3항, 제10조 제3항).

바. 세수감소에 대한 재원조치

1) 연결납세제도의 구조 내에서의 조치

가) 연결가산세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에, 2002년 4월 1일부터 2004년 (평성 16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2%p를 인상한다(조세특별조치법 제68조의 8).

나) 연결자회사의 연결전 결손금의 전입제한

연결납세제도의 적용개시 전에 발생한 결손금액 및 연결그룹 가입 전에 발생한 결손금액에 대하여, 모회사 등의 것을 제외하고는 연결납세제도하에서의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법인세법 제81조의 9).

다) 도입당초의 가입자회사 등의 적용시기 특례(신규자회사 등의 가입제한)

연결납세제도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최초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그룹에 가입하는 법인 및 연결납세제도의 적용개시시의 100% 자회사 중에서, 그 법인이 갖는 자산에 대한 시가평가에 따른 평가손익의 계상을 행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연결사업연도까지 연결그룹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법인세법 제61조의 11, 동법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3항).

2) 과세베이스의 재검토

가) 수입배당의 익금불산입제도<sup>35)</sup>

수입배당의 익금불산입제도에 대하여 특정이자에 관한 조치를 폐지하며(구 법인세법 제23조 제3항), 특정주식 등<sup>36)</sup> 이외의 주식 등에 관한 수입배당의 익금불산입 비율을 80%로부터 50%로 인하한다.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 2002년에는 70%, 2003년에는 60%로 하는 경과조치를 시행한다(법인세법 제23조, 제81조의 4).

나) 퇴직급여충당금제도

퇴직충당금제도를 폐지하고(구 법인세법 제54조), 폐지 전의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에 대해서는 4년간(2002년도 및 2003년도에 대해서는 각각 그 금액의 10분의 3씩, 2004년도 및 2005년도에 대해서는 각각 그 금액의 10분의 2씩)에 걸쳐 소거한다.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있어서는 10년간(그 금액의 10분의 1씩)에 걸쳐 소거한다(법인세법 부칙 제8조 제2항).

다) 특별수선충당금제도

경과조치에 의해 존치되고 있는 구 특별수선충당금제도를 폐지하고, 그 폐지 전의 구 특별수선충당금계정의 금액에 대해서는 4년간(그 금액의 4분의 1씩)에 걸쳐 소거한다(구 법인세법 부칙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35)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수취한 금액 중에서 특정주식 등 이외의 주식 등(주식, 출자 또는 수익증권을 말함)에 대한 배당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36) 특정주식 등이란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등의 25% 이상의 주식 등을 내국법인이 교부받는 배당 등의 금액 지불의무가 확정되는 날 이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의 2 제1항.

### 3) 재원조치의 재검토

현재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한 연결부가세는 2년간의 조치로서 도입하는 것이므로 2년 후에는 연결납세제도의 실시상황이나 재정상황을 근거로 하여 개정된 재원조치의 재검토를 행할 예정이다.

## 5. 시사점

기업그룹을 단위로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앞에서 논의하였던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연결납세제도를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면 <표 III-1>과 같다. 연결납세제도는 제II장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대표적인 소득통산형으로서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그룹에 대하여 각 법인의 소득을 통산하고 각 법인간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내부이익을 이연함으로써 연결과세소득 및 연결세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이때 모회사를 포함한 연결그룹의 구성법인은 연결세액의 전액에 대해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와 같은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1917년에 누진세율에 의한 초과이윤세제도하에서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기업분할에 대처하고, 기업그룹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간주하여 과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그후 연결회사의 범위를 재조정, 세수감소를 고려한 2%의 부가세의 도입 및 폐지 등 많은 개정과정을 통하여 법인과세제도로 정착하였다.

소득통산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그룹의 경제적 일체성을 주

목하여 그룹에 속하는 개별회사의 손익을 통산하여 산출한 연결 베이스에서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일본이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한 이유도 일체성을 가지고 경영되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기업그룹에 대해서 각 법인을 납세단위로 과세하는 것보다 그룹 전체를 하나의 납세단위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영국과 독일의 연결납세제도는 미국의 소득통산형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손익대체형이다. 손익대체형의 특징은 기업그룹의 경제적 일체성에 주목하기보다는 기업그룹에 속하는 개별회사의 손익을 다른 개별회사에 대체하고, 대체 후의 각 개별사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도록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영국의 연결납세제도의 핵심이 되는 제도는 그룹릴리프(group relief)제도이다. 그룹릴리프는 75% 그룹과 콘소시움<sup>37)</sup> 내의 이익회사(claimant company: 청구회사)가 기업그룹 내 다른 결손회사(surrendering company: 대체회사)의 당기에 발생한 결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체받아 자사의 총이익과 상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영국의 연결납세제도는 1967년에 도입되었으며, 그룹릴리프 이체의 대상이 되는 결손금액은 사업소득의 결손액, 투자회사 관리비, 세법상 특별공제액, 특정소득공제경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69년부터 하나의 기업을 다른 기업과 일체화하여 단일기업체(organschaft)로 과세하는 제도가 법제화되었다. 특정한 기업이 자본적·조직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른 기업을 완전히 지배하고, 그 결과 지배되는 기업이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사실상 그 지배하는 기업의 한 사업부문에 불과한 경우 피지배기

---

37) 5% 이상 주식을 소유한 내국법인들에 의해서 보통주의 75% 이상이 소유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업의 손익을 지배기업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계약을 2개의 기업 간에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형 손익대체형 연결납세 제도는 자회사의 순손익을 그대로 지배기업에 이전하는 방법을 통해 자회사손익을 원칙적으로 ‘零(0)’으로 만드는 간편한 제도이다.

영국형 연결납세제도는 연결납세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가 절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독일형은 영국형과 마찬가지로 연결납세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최소 5년 이상의 이익이전계약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동안 연결납세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의 기본적인 사고에도 어느 정도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으로 구분되는 연결납세제도는 OECD의 30여개 회원국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도입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조세제도이다. 그러나 같은 소득통산형이라도 각국의 세제·경제·사회·문화·법률 등의 차이에 의해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손익대체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의 경우 국가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대체로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보다 연결납세를 하는 목적에 이론적으로 더욱 적합한 형태라는 장점이 있다. 이는 소득통산형이 기업그룹의 경제적 일체성을 중시하는 세제로서 손익통산, 결손공제, 내부이익이연 등을 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손익대체형은 연결납세의 목적에 이론적으로 부합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는 대체로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보다 간단·명료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손익대체형이 기업그룹의 과세를 간편하게 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소득통산형은 제도의 성격상 복잡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유형이 우리나라에 더 적합한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결납세의 도입 목적인 조세의 공정성 유지, 조세의 중립성 유지, 연결회계제도의 정착, 세제의 선진화 등의 각 측면에서 보아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 중 어느 유형이 더 적합한지를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lt;표 III-1&gt; 주요국의 연결납세제도 비교

		미 국	영 국	
배당의 법인·개인이중과 세 배제		이중과세 배제를 위한 조정이 없음.	이중과세배제(imputation)··· 수입배당의 20/80의 소득가산과 세액공제	
법 인 과 세	수입배당의 소득예산방식	지주20% 미만(70%공제), 20% 이상(80%공제), 80% 이상(전액공제)	전액익금불산입(수입배당의 20/80을 지급배당에 관한 ACT에서 공제)	
	결손의 이월· 소급	통상 결손	소급2년, 이월20년	소급1년 (창업결손 3년), 이월무기한
		자본 손실	소급3년, 이월5년(CG와 상계)	소급부적정, 이월무기한(CG과 상계)
	법인 세율	기본 세율	15~38%(특정계층소득 39%)	30만£ 이하 25%, 한계세율, 150만£ 이상 35%
부가 세율		유보이득세·동족지주세 39.6%	(ACT···지급배당의 20/80)	
기업집단과세방식		연결납세신고제도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51% 집단의 배당특례, 75% 집단의 자산이전특례와 GR제도	
연 결 대 상 회 사	모 회사	내국법인	내국법인	
	자 회 사	지주 비율 요건	의결권주의 80%, 동시에 시가의 80% 이상 소유(각 단계마다 판정)	GR은, 보통주소유75% (간접소유는 신회사지배비율) 이상의 회사
		특수 연결 회사	캐나다·멕시코 소재의 전주소유자회사	공동회사(consortia)
		연결 제외 회사	외국법인, 생명보험회사 등, 조세회피목적취득회사	외국법인, 이윤분배비율이 실질적으로 50% 미만인 회사

<표 III-1>의 계속

		독 일	일 본	
배당의 법인·개인이중 과세 배제		이중과세배제(Anrechnungs- verfahren)…수입배당의 30/70의 소득가산과 세액공제	이중과세배제를 위한 조정이 없음.	
법 인 과 세	수입배당의 소득예산 방식	수입배당 및 그 30/70을 익금에 산입하고, 30/70 익금산입액을 세액에서 공제	전액 익금불산입. 특정주식 외 주식 등에 대한 배당은 50% 익금산입	
	결손의 이월· 소급	통상 결손 자본 손실	소급5년, 이월5년	
	법인 세율	기본 세율 부가 세율	30%(경감세율 22%) 2002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2%의 가산세율 추가 적용	
기업집단과세방식		기관제도(Sondervorschriften für die Organschaft)	연결납세신고제도	
연 결 대 상 회 사	모 회 사	(기관주체) 내국법인·거주자기업	내국법인 (보통법인, 협동조합)	
	자 회 사	지주 비율 요건	(기관회사) 의결권주소유 50% 초과의 내국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등	총발행주식의 100% 보유 내국법인
		특수 연결 회사	기관주체는 국내등기를 한 외국기업도 가능	-
		연결 제외 회사	외국법인, 회사 이외의 법인	협동조합, 특별법인 (공공법인, 공익법인), 외국법인

<표 III-1>의 계속

		미 국	영 국	
적 용 요 건	선택 조건	임의선택	임의선택	
	가입자회사의 선택	해당 전 자회사의 가입필요	각 자회사의 임의가입	
	계속적용의 여부	연결취지 내국세입청 승인 필요	규제없음	
	사업연도통일 여부	필요	불필요(GR은 기간按分)	
	회계기준통일 여부	불필요(개별회사기준계속)	불필요(개별회사기준계속)	
개 별 회 사 순 익 의 연 결 계 산	집단회사간의 배당		① 51% 자회사배당은 전액익금불산입 ② 51% 자회사배당은 ACT불징수	
	집 단 회 사 간 의 연 결 계 산	고정자산	매각손익을 이연, 매입자는 거래가격으로 계상 (불이연처리선택가능)	75% 집단 내 양도는 원가인도(강제적용)
		채고자산	위와 같음 (달러가치후입선출법 간이계산)	소유목적계속은 원가인도, 전환은 매도자과세
		환 매 과 세	양도원가· 감가상각	매입자의 양도·감가상각에 대응하여 매도자의 소득계상 매입자의 소득산입
		자회사 탈퇴	탈퇴시에 매각소득계상	탈퇴시에 매입소득산입
	순 익	통상사업 순손익	개별회사순손익을 연결상계, 차액배분	GR에 의해 개별회사 결손에 임의 이전
		자본이득 자본손실	개별회사소득에서 제외하여 연결상계	GR 적용 없음(개별회사의 손익처리)
		특수한 손익	자선기부금(소득의 10%) 등은 연결공제	GR 적용 대상...사업결손, 자본공제부족액, 투자회사관리비등

<표 III-1>의 계속

		독 일	일 본	
적 용 요 건	선택 조건	임의선택	임의선택	
	가입자회사의 선택	각 회사의 임의가입	해당 전 회사의 가입필요	
	계속적용의 여부	5년 이상 계속적인 이익이전계약이 요건	연결취지 국제청 승인 필요	
	사업연도 통일 여부	불필요	필요	
	회계기준 통일 여부	불필요(특별한 규정없음)	-	
개 별 회 사 손 익 의	집단회사간의 배당	특별한 규정없음 (일반주식과 같음)	수입배당을 개별회사수익에서 제거	
	집 단 회 사 간 거 래	고정자산	특별한 규정없음 (시가기준에 의한 거래가격계산)	매각손익 이연
		재고자산		매각손익 이연 (簡便法에 의한 계상 가능)
	환 매 과 세	양도원가· 감가상각	-	-
자회사 탈퇴				
연 결 계 산 손 익	통상사업 순손익	자회사 이익이전액은 모회사의 소득, 자회사 결손보전액은 모회사의 손금	개별회사순손익을 연결상계, 세액배분	
	자본이득 자본손실			
	특수한 손익	자회사소수주주에 대한 배당부담액까지는 자회사소득으로 과세	총당금 및 준비금은 각 법인의 개별계산에 의함.	

<표 III-1>의 계속

		미 국	영 국	
개별회사 손익의	순결손			
	이월·소급	연결베이스계산	GR 이전잔액은 발생회사가 이월등 처리	
	가입시 자회사이월결손금	개별신고연도결손은 개별소득에서 공제	GR 이전불적용	
연결계산액	탈퇴시 이월결손금	개별회사배분액을 개별회사가 공제	각 개별회사 고유의 결손금의 계속	
	세액	외국세액공제	한도액·공제액을 연결베이스로 계산	규정없음(각개별회사의 고유처리)
		투자세액공제		규정없음
기타	최저한세액도 연결베이스 계산	신회사납부 ACT의 자회사이전공제		
기타	연결세액의 개별회사배분	이익잉여금계산에 관한 개별회사 배분기준	GR 등 적용 후의 세액은 개별회사가 부담	
	연결손익과 자산·부채의 조정	자회사 주식투자가액의 수정규정	GR 이전에 의한 감세효과분의 결제는 입의	
	기타 계산		특정제3자회사에의 GR 이전협정가능	
신고의무	모회사가 납세의무 (자회사는 연대납부의무)	개별회사가 고유의 납세의무		
집단의 가입·탈퇴의 특칙				
기타 관련제도				

<표 III-1>의 계속

		독 일	일 본	
개별회사 손익의 연결계산	순결손	이월·소급	자회사는 이월·소급 적용 연결 베이스계산	
		가입시 자회사이월결손금	계약전 자회사 결손금의 보전은 모회사출자처리 개별신고연도결손은 개별소득에서 공제	
		탈퇴시 이월결손금	모회사 고유의 결손금으로 처리 개별회사배분액을 개별회사가 공제	
	세액	외국세액공제	자회사에 인정되는 세액공제는, 모두 모회사가 적용	한도액은 연결 베이스로 계산. 공제액은 조정 후 연결베이스로 계산.
		투자세액공제		
		기타		특별세액공제는 연결 베이스 적용
기타	연결세액의 개별회사배분	규정없음	각 법인의 소득금액, 결손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금액 배분	
	연결손익과 자산·부채의 조정	이전손익상당액의 모자회사간채권관계발생	-	
	기타 계산	자회사는 합리적적립금의 설정 가능	-	
신고의무		손익이전후소득에 대해 개별회사가 납세의무	모회사의 납세의무(자회사의 연대납부의무)	
집단의 가입·탈퇴의 특칙		이익각출계약은, 소수주주 보전조항을 두어야 하며, 주주의 3/4의 동의가 필요(주식법)		
기타 관련제도		부가가치세 및 지방영업세에도 있음.		

주: CG: 자본이득, CL: 자본손실, GR: Group relief, ACT: 선급법인세  
 자료: 미국, 영국, 독일은 井上久彌(1996) 인용하여 일부 수정.  
 일본은 日本 財務省(2002) 참조하여 작성.

## IV. 연결납세의 세액증감효과

### 1. 세액증감의 요인

연결납세제도의 논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의 집단이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실체라는 점에서 당해 기업그룹이 하나의 법인인 것처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단일실체개념(a group-wide single-entity approach)에 입각하여 기업그룹이 하나의 법인인 것처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따라 기업그룹에 소속된 법인들이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에 비하여 부담하는 세액의 합계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 요인으로는 결손의 통산, 배당과세의 근거소멸, 지분기초가액의 수정효과, 내부미실현손익에 대한 과세이연,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여지 소멸, 세법상 손금 및 각종 공제 한도의 통산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결손통산효과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법인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각자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미래에 발생하는 과세소득에서 일정기간(5년)에 한하여 공제하게 된다.<sup>38)</sup> 그러나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법

---

38) 이월공제제도와는 별도로 1997년부터 적용되는 소급공제제도는 당해 사

인에서 발생한 결손은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기 때문에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세액감소효과는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에게 있어서 결손금 공제시한인 5년 내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제도가 없더라도 당해 과세소득이 발생할 때 결손금이 공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조세부담이 이연되는 효과, 즉 세액의 일시적 감소에 그치게 된다. 또한 세율의 상승 등으로 결손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세율보다 개별과세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세율이 큰 경우에는 오히려 연결납세로 인하여 관련 사업연도에 걸쳐 부담할 세액의 합계가 증가할 수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세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로 인한 세액감소효과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에게 있어서 결손금 공제시한인 5년 내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연결납세로 인한 세액감소효과가 영구적인 것인지의 여부는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기초가액의 수정여부에 달려 있다. 즉, 자회사에게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세액증감효과가 일시적이며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구적이다.

#### 나. 배당과세배제효과

##### 1) 배당수입의 익금불산입

---

업연도의 결손을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과거에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지만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할 뿐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하겠다(법인세법 제72조).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법인으로 부터 배당을 받게 되면 당해 배당수입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배당을 받는 법인의 입장에서 별개의 납세의무자인 다른 법인으로 부터 투자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것이 배당이라고 본다면 과세소득을 구성하는 것이 당연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사업을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중복 과세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비효율 또는 기업지배구조의 선택에 있어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제적인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당해 배당수입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배당수입에 대한 법인세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배당수입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는 기관투자자, 지주회사 및 그 이외의 법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동일하지 아니하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기관투자자(금융기관 등)는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세지원의 일환으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인하여 받는 배당소득 중 9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관투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으로 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 나)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sup>39)</sup>에 대한 출자비용

에 따라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액(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의제배당액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제18조의 2). 즉,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40%)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9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8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40%)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6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자회사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한다.

- ① [자회사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에 익금불산입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당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차입금이자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 ② 자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에 출자하였거나 계열회사 외의 다른 내국법인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 당해 자

39) 자회사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 ① 지주회사가 직접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30%) 이상을 당해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 ②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일 것

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①에서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일반 법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기관투자자 및 지주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부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제18조의 3). 즉,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30%)를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5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이 50%(주권상장법

<표 IV-1>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

법인의 유형	수입배당액의 익금불산입율	익금불산입 적용제한
기관투자자	90%	출자비율 10% 초과시 적용배제
지주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비율 100% : 전액</li> <li>· 출자비율 80%(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은 40%) 초과 100% 미만 : 90%</li> <li>· 출자비율 80%(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은 40%) 이하 : 60%</li> </ul>	다음의 금액은 차감 ① 출자관련 차입금이자 ② 계열회사 또는 다른 법인에 1% 초과 출자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입 중 일부
일반법인 (기관투자자 및 지주회사 이외의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비율 50%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은 30%) 초과 : 50%</li> <li>· 출자비율 50%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은 30%) 이하 : 30%</li> </ul>	출자 관련 차입금이자 차감

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30%)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3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주회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에 익금불산입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배당을 지급받은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배당을 지급받은 법인의 차입금이 자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은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감한다.

## 2) 연결그룹 구성법인간의 배당에 대한 과세 제외의 효과

법인간 배당거래에 대한 과세는 각 법인이 별개의 독립된 실체이며 별개의 납세의무자라는 관점에서 범형식적인 논리의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연결그룹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구성법인간의 배당은 내부거래로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즉, 연결그룹 구성법인간의 배당수수는 내부부서간의 자금이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과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인 중복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으로 받은 배당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과세소득에서 제외(익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연결납세로 인한 세액감소효과는 개별납세를 하는 경우에 조정되지 아니하는 중복과세부분에 한하게 된다. 즉,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용에 따라 세액감소효과가 전혀 없거나 수입배당금액의 10% 또는 40%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과세소득이 증가하게 되며, 지주회사 또는 기관투자자 이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배당

금액의 50% 또는 70%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과세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연결납세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결그룹에 속하는 다른 법인으로부터의 수입배당액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액감소효과가 영구적인 것인지의 여부는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지급받았을 때 자회사에 대한 지분의 장부가액(기초가액)을 수정하는지에 달려있다. 즉, 연결납세로 인하여 추가로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수입을 자회사에 대한 지분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배당과세배제로 인한 세액감소효과는 당해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미치며 장부가액을 수정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면 영구적인 효과를 가진다.

#### 다. 지분기초가액의 수정효과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단일실체개념에 따라 연결그룹 구성법인인 모회사와 자회사의 손익이 통산되어 과세된다. 이 때 연결납세신고를 하던 연결그룹의 모회사가 누적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던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대로 유가증권에 대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면 매각가격에는 누적소득의 발생으로 인한 지분가치의 증가분이 포함되고 이로 인하여 증가된 처분이익에 대하여 과세됨에 따라 자회사의 소득이 발생할 때 과세되는 것과 함께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별개의 실체라는 관점에서는 논리적 타당성을 찾을 수 있겠으나 단일실체개념을 채택하는 연결납세제도의 논리를 따른다면 타당하지 않으며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처럼 이중과세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회사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의 장부가액(기초가액)을 증액시켜야 한다. 이렇게 장부가액을 수정하면 지분을 매각하는 때 지분처분이익이 감소하며 연결납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하여 세액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세액 감소효과는 영구적인 것이다.

한편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현금유출)으로 인하여 자회사의 지분가치가 감소하므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모회사의 자회사 주식에 대한 장부가액은 감액되어야 한다. 즉, 모회사가 배당을 지급받을 때 배당액의 전액이 연결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자회사주식에 대한 장부가액의 감액을 통하여 당해 지분을 매각하는 때의 처분이익을 증가시켜 연결과세소득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배당받을 때 과세가 유예된 소득이 지분을 매각하는 때 과세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당과세의 배제로 인한 세액감소효과는 자회사주식이 처분되어 세액증가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일시적인 것이다. 다만, 개별납세신고에 있어서 수입배당액 중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결납세에서와 마찬가지로 과세되지 아니하면서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만 감액되므로 자회사주식을 처분하는 때의 세액증가효과는 영구적인 것이다.

자회사에게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와 반대로 자회사에 대한 지분의 장부가액은 감액하여야 한다. 이는 자회사의 결손이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었는데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때 당해 지분의 취득가액을 전액 공제하여 처분손익을 계산하도록 한다면 이중공제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회사의 결손에 대하여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는 경우 결손으로 인한 세액증

가효과는 영구적이다.

#### 라. 내부미실현손익에 대한 과세이연효과

법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장부가액과 다르게 거래하는 경우에는 손익이 발생하게 된다. 즉, 자산의 매각거래에 있어서는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매각하는 법인이 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하게 되며 장부가액에 미달하게 매각하는 경우 자산처분손실을 계상하게 된다. 이들 처분손익은 개별 법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가감된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연결그룹 구성법인 간의 자산매각거래는 앞서 언급한 배당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실체의 내부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해 자산매각거래에서 개별 법인이 손익을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연결납세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해 손익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내부미실현손익을 연결납세신고시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세액증감효과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당해 미실현손익이 실현되는 때까지 조세부담(또는 경감)이 이연되는 것일 뿐이다. 재고자산 또는 유가증권의 매각거래에 있어서 미실현이익은 당해 재고자산 등을 매입한 법인이 외부의 제3자에게 다시 매각하는 경우 실현되며 고정자산의 매각거래에 있어서는 당해 고정자산을 매입한 법인이 감가상각을 하거나 외부의 제3자에게 다시 매각하는 때 실현된다.

#### 마. 부당행위부인배제효과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

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 제52조). 이러한 부당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에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다.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고가매입에 대하여는 시가와와의 차액에 대하여 매입하는 때 과세하지 아니하고 당해 자산을 감가상각하거나 처분하는 때 과세하며 저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하는 때 시가와와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연결그룹이 하나의 경제적 실체이기 때문에 당해 부당행위도 실체의 내부거래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내부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어진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연결납세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경감될 것이며 이로 인한 세액감소효과는 영구적이다.

#### 바. 세법상 각종 한도의 통산효과

세법에서는 손금 또는 각종 공제의 한도에 대하여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기부·접대비의 손금한도, 각종 준비금의 한도, 세액공제의 한도, 최저한세 등이 그 예이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각종 한도의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소득금액, 매출액, 자산총액 등이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의 해당 항목의 합계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액의 증감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항목별 한도에 비하여 총계기준한도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특정 항목에서는 한도를 초

과하고 다른 항목에서는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총계기준한도를 적용한다면 한도초과액과 한도미달액이 서로 상계되는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항목별 한도를 적용하는 것에 해당할 것이고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총계기준한도를 적용하는 것에 해당할 것이므로 한도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한도율이 달라지지 아니한다면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측면(세액감소효과)이 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초과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최저한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기업집단 전체에 대하여 한도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한도계산의 기준 또는 한도율이 연결납세로 인하여 달라지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접대비는 매출규모에 따라 한도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즉, 접대비 한도율은 매출규모가 클수록 낮아진다.<sup>40)</sup>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연결접대비한도를 계산하도록 한다면 연결그룹 구성법인의 매출이 합산되어 매출규모가 커짐에 따라 낮은 한도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개별납세의 경우에 비하여 한도초과액을 증가시켜 세액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연결납세제도하에서 연결그룹 구성법인간의 재고자산거래가 있다면 당해 내부거래는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연결접대비한도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에 비하여 세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세액증가효과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금한도를 정하는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등의 경우에도 같다.

40)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0.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매출액에 대하여는 0.1%, 500억원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하여는 0.03%.

사. 세율누진효과

현행 법인세법상 세율구조는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즉,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27%가 적용된다.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각 법인별로 과세표준 중 최초 1억원에 대하여 낮은 세율인 15%가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 과세표준 전액 중 1억원에 대하여만 낮은 세율인 15%가 적용되기

<표 IV-2> 연결납세제도가 조세부담에 미치는 직접효과

세액증감의 요인	세액증감 여부	영구적 또는 일시적(과세이연) 효과 여부
결손통산	세액감소, 단 세율상승시 세액증가 가능성 있음	일시적 효과, 단 결손법인에게 5년 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지분기초가액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구적 효과
배당과세배제	세액감소	지분기초가액을 수정하는 경우 일시적 효과(단, 익금불산입부분은 영구적 효과),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구적 효과
지분기초가액의 수정효과	누적 소득발생 (배당 제외 후)시 감소, 누적 결손발생시 증가	소득발생 증액 및 결손발생 감액은 영구적 효과, 배당으로 인한 감액은 일시적 효과(단, 익금불산입부분은 영구적 효과)
내부미실현손익에 대한 과세이연	미실현이익의 경우 세액감소, 미실현손실의 경우 세액증가	일시적(과세이연) 효과
부당행위부인 배제	세액감소	영구적 효과
각종 한도의 통산	세액감소 또는 증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 효과
세율누진	세액증가	영구적 효과

때문에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에 비하여 세액이 증가하게 된다.

<표 IV-2>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조세부담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요약한 것이다.

## 2. 세액증감효과의 추정

### 가. 추정의 목적 및 개요

연결납세로 인한 세액증감효과는 납세자인 연결그룹 구성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며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의 세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연결납세로 인한 세액증감효과를 추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여부, 연결납세의 범위, 도입시기 및 구체적인 도입방법에 대한 정책제안을 제시하려는 데 있다.

연결납세로 인한 세액증감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는 모든 기업그룹에 대한 재무자료, 세무조정, 과세소득 및 세액에 관한 자료는 물론이고 미래의 소득발생 상황 등 현재시점에서 관찰할 수 없는 요소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연결납세로 인한 세액증감효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특히 일시적인 세액증감효과의 경우 조세부담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조세부담의 현재가치가 납세자와 정부의 관심사가 될 것이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은 많은 가정과 전제하에 가능하며 큰 폭의 오차가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세액증감효과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초기에 발생하는 것도 있고 지분기초가액의 수정과 관련한 세액증감효과와 같이 도입 이후 상당기간 후에 발생하는 효과도 있을 것인데 도입 초기에 발생하는 세액증감효과가 도입 여부 및 도입

방법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하여는 세액증감효과의 윤곽 정도는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초기에 있어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입 초기에 주로 발생할 세액증감효과, 즉 결손통산, 배당과세배제, 세율누진효과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내부이익의 이연, 부당행위계산부인배제, 한도통산효과는 그 추정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추정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들 효과는 세액증가효과와 세액감소효과가 혼재해 있어 서로 상계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법인들이 그 규정에 적용되지 않도록 거래형태 및 금액을 정할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연결납세의 세액증감효과에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 나. 기업그룹의 현황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지분관계로 연결된 기업그룹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결채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현황을 검토하기로 한다. 연결채무제표준칙상 연결채무제표의 작성대상기업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기업으로 하되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더라도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회사의 최대출자자인 경우에는 연결채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연결채무제표준칙 제5조). 연결채무제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

템(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이 제공하는 연결감사보고서에서 입수할 수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식에 종속회사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DART에 연결재무제표가 공시되는 기업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들<sup>41)</sup>이므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은 제외된다. 그러나 외부회계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자산규모 7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며 이들이 종속회사를 가지는 경우는 드물 것이기 때문에 DART에 공시된 연결재무제표가 거의 대부분의 기업그룹을 망라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납세로 인한 세액증감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DART에 공시한 기업(기업회계기준상의 지배회사)을 표본으로 하였으며 이들 지배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종속회사 중 다음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① DART에 재무제표가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기업: 이들 종속회사들은 규모가 작아서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아니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업으로 추정된다.
- ② 외국법인: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외국법인은 연결납세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③ 지배회사의 지분율이 50% 미만인 기업: 연결납세의 범위를 최소한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율 50% 이상으로 할 것이므로

---

4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이들 기업을 제외한다.

1) 종속회사의 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한 기업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에서 ‘2000년’이라고 한다) 중 회계기간이 종료하는 기업이 646개였으며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에서 ‘2001년’이라고 한다) 중 회계기간이 종료하는 기업이 713개였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였으나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속회사만을 가진 기

<표 IV-3> 기업그룹의 현황

(단위: 개, %)

구 분	연 도	주권 상장법인	협회 등록법인	기타 외부감사 대상법인	합 계
공시한 지배회사 수 <sup>1)</sup>	2000	323	66	257	646
	2001	335	100	278	713
분석대상 지배회사 수 <sup>2)</sup>	2000	185	22	95	302
	2001	185	49	131	365
종속회사	2000	412	23	155	590
	2001	450	59	198	707
지배회사당 종속회사 수의 평균	2000	2.23	1.04	1.63	1.95
	2001	2.43	1.20	1.51	1.94
종속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	2000	79.1	72.7	79.6	79.0
	2001	79.7	73.4	79.7	79.2

주: 1) DART에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한 지배회사의 수

2) 재무제표가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기업, 외국법인 또는 지분율 50% 미만인 법인만으로 종속회사가 구성된 기업그룹을 제외한 지배회사의 수

업은 2000년에 344개, 2001년에 348개이며 이를 제외하면 2000년에 302개, 2001년에 365개의 기업이 남는다.

이들 지배회사는 2000년에 590개, 2001년에 707개의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어 지배회사당 평균 1.9개의 종속회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회사당 종속회사의 수는 최소 1개부터 최대 23개까지였으며 기업의 유형별로 주권상장법인이 협회등록법인에 비하여 종속회사의 수가 평균적으로 많은 것은 협회등록법인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설립된 지 얼마 안되는 회사들이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79.1%에 달하였다.

## 2) 개별납세시의 법인세부담액

기업그룹의 법인세부담액의 현황은 <표 IV-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는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기업그룹에 속하는 각 개별기업(지배회사와 종속회사)들이 독립적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의 법인세부담액을 말하며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의 연결법인세부담액과 비교될 금액이다.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부담액 또는 법인세수와 시기 및 금액에 있어서 동일하지 아니하다. 즉,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은 이연법인세를 고려한 후의 회계상 수치이기 때문에 당해 사업연도에 실제로 과세당국에 납부 또는 부담하는 세액과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금흐름으로서의 법인세부담 또는 법인세수가 연결납세로 인하여 얼마나 증감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중 ‘법인세비용’에 공시되는 법인세부담액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상의 법인세부담액은 법인이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법인세비

용을 기초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집계하는 법인세 징수 실적과는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추정이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큰 금액이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표 IV-4> 개별납세시의 법인세부담액

(단위: 억원)

법인세 부담액	연 도	주권 상장법인	협회 등록법인	기타 외부감사 대상법인	합 계
총 액	2000	72,785	878	11,319	84,982
	2001	57,773	2,555	4,747	65,075
평 균	2000	393	40	119	281
	2001	312	52	36	178
표준편차	2000	1,720	106	732	1,413
	2001	914	177	83	672

<표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그룹의 법인세부담액은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8조 4,982억원과 6조 5,075억원으로 2000년과 2001년의 총법인세수 17조 8,784억원 및 16조 9,751억원<sup>42)</sup>의 47.53%와 38.33%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기업그룹으로부터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 결손통산효과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어 기업그룹 구성법인의 결손이 다른 구성법인의 소득에서 공제될 경우 감소되는 세수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개별납세시의 법인세부담액과 연결납세로 인하여 결손이 통

42) 재정금융통계, 2002. 2/4분기, 재정경제부, p. 통계13.

산될 경우의 법인세부담액을 비교하여야 한다.

$$\text{세액감소효과}(\Delta\text{TR}) = \text{개별납세기 세액합계(ITR)} - \text{연결납세기 세액(CTR)}$$

이 경우 개별납세기 세액합계는 지배회사의 법인세부담액과 종속회사의 법인세부담액을 합계하여 계산한다. 한편 연결납세시의 세액은 연결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도 있겠으나 감면, 면제, 세액공제 및 최저한세가 고려될 수 없으므로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기로 한다. 즉 연결납세시의 세액은 개별납세기 세액합계에 [연결과세소득이 개별과세소득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개별과세소득의 합계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과세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무시하고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연결과세소득은 개별과세소득의 합계에서 기업그룹 구성법인의 결손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결국 연결과세소득이 개별과세소득의 합계와 다른 점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특정 법인의 결손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있어서 다른 법인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된다는 점이다. 또한 개별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 주식에 표시되어 있는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계산하며 개별과세소득과 연결과세소득의 계산결과가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text{CTR} = \text{ITR} \times \frac{\text{연결과세소득}}{\text{개별과세소득의 합계}}$$

$$\text{개별과세소득} = \text{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pm \text{세무조정}$$

$$\text{연결과세소득} = \text{개별과세소득의 합계} - \text{기업그룹 구성 법인의 결손}$$

위의 산식에 따라 연결납세시 결손통산에 따른 세액감소효과를 계산한 결과는 <표 IV-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V-5> 결손통산에 따른 세액감소효과

(단위: 개, 억원, %)

구 분	연 도	주권상장 법인	협회등록 법인	기타 법인	합 계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	2000	597	45	250	892
	2001	635	108	329	1,072
결손법인	2000	157	13	47	217
	2001	150	49	71	270
개별과세소득의 합계	2000	229,166	7,905	47,498	284,569
	2001	274,920	9,113	24,379	308,412
결손통산후 연결과세소득	2000	216,667	7,755	45,252	269,674
	2001	261,568	8,759	22,887	293,214
결손통산시 연결법인세부담액	2000	61,938	344	10,773	73,055
	2001	54,663	968	4,229	59,860
연결납세로 인한 세액감소액	2000	10,848	534	546	11,927
	2001	3,110	1,587	518	5,215
세액감소비율	2000	14.9	60.8	4.8	14.0
	2001	5.4	62.1	10.9	8.0

주: 세액감소비율 = 세액감소액 ÷ 개별법인의 법인세부담액 합계

<표 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손통산으로 인한 세액감소는 도입초기에 매년 5천억원 내지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러한 세수결손은 전액 영구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손이 발생한 법인에게 있어서 결손금 공제시한인 5년 내 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면 그 때까지 세액감소가 이연될 뿐이다. 따라서 궁극적인 세수결손은 결손발생법인의 5년 내 소득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

#### 라. 배당과세배제효과

연결납세로 인하여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경우 감소되는 세액을 추정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결손통산으로 인한 세수감소효과<sup>43)</sup>의 추정에 사용된 기업을 대상으로 종속회사의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상 배당액에 지배회사의 지분율을 곱하여 지배회사의 수입배당액을 추정하고 이 금액 중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연결과세소득의 감소액으로 한다. 단, 동 익금불산입액<sup>43)</sup>을 제외한 수입배당액이 지배회사의 개별과세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개별과세소득을 연결과세소득의 감소액으로 한다. 세액감소액은 연결과세소득의 감소액에 현행 법인세율 27%<sup>44)</sup>를 곱하여 추정한다.

$$\text{지배회사의 수입배당금} = \text{종속회사의 배당지급액} \times \text{지배회사의 지분율}$$

43) 2000년과 2001년에 지주회사로 전환된 기업은 거의 없으므로 일반 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되 지배회사의 지분율이 50% 이상이므로 익금불산입률은 50%로 한다.

44) 추정에 사용된 기업의 대부분은 과세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므로 높은 단계의 법인세율인 27%가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연결과세소득의 감소액 : 다음 중 적은 금액

- 지배회사의 수입배당금 × (1 - 50%)
- 지배회사의 개별과세소득

$$\text{세액감소액} = \text{연결과세소득의 감소액} \times 27\%$$

위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배당과세배제로 인한 세액감소효과는 <표 I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200억원 내지 3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세액감소효과가 적은 것은 배당수입에 대한 익금불산입규정으로 인하여 배당수입으로 인한 과세수입이 축소되었다는 점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이중과세의 부담 때문에 배당을 회피하게 되고 이에 따른 낮은 배당성향 수준이 더 큰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표 IV-6> 배당과세배제로 인한 세액감소효과

(단위: 억원)

구 분	연 도	지배회사의 배당수입액	세액감소액
주권상장법인	2000	1,724	166
	2001	3,309	305
협회등록법인	2000	9	1
	2001	31	4
기타 외부회계 감사대상법인	2000	399	26
	2001	299	25
합 계	2000	2,132	193
	2001	3,639	334

#### 마. 세율누진효과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될 경우 초과누진세율이 연결납세신고법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즉, 과세표준 1억원까지 적용되는 15%의 낮은 법인세율이 연결납세로 인하여 개별 법인별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기업그룹에 대하여 1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손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의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초과누진세율로 인한 세액증가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세액증가액} &= 1\text{억원} \times (\text{종속회사의 수} - \text{결손법인의 수}) \\ &\quad \times (27\% - 15\%) \end{aligned}$$

위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증가액은 2000년에 45억원, 2001년에 52억원으로 추정된다.

#### 바. 세액증감효과의 종합 및 민감도분석

본 연구에서 추정한 연결납세도입의 세액증감효과는 연결납세대상 종속회사의 범위를 다르게 할 경우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연결납세대상 종속회사의 범위를 지배회사의 지분율이 80% 이상, 95% 이상 또는 100%인 경우로 제한할 경우 연결납세대상 기업그룹의 수는 <표 I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소한다. 또한 연결납세대상 기업그룹의 수가 줄어들어 따라 연결납세로 인한 세액증감효과는 <표 I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소된다.

<표 IV-7> 연결납세대상 지분율에 따른 기업집단의 수

(단위: 개)

연결납세범위	지분율 50% 이상	지분율 80% 이상	지분율 95% 이상	지분율 100%
2000년	302	183	135	99
2001년	365	225	175	128

<표 IV-8>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액증감효과

(단위: 억원)

연결납세범위	결손통산효과	배당과세 배제효과	세율누진 효과	합 계
지분율 50% 이상				
2000년	11,927 감소	193 감소	45 증가	12,075 감소
2001년	5,215 감소	334 감소	52 증가	5,497 감소
지분율 80% 이상				
2000년	9,350 감소	142 감소	27 증가	9,465 감소
2001년	3,444 감소	291 감소	33 증가	3,702 감소
지분율 95% 이상				
2000년	6,159 감소	123 감소	19 증가	6,263 감소
2001년	3,065 감소	261 감소	24 증가	3,302 감소
지분율 100%				
2000년	5,076 감소	107 감소	14 증가	5,169 감소
2001년	2,618 감소	97 감소	17 증가	2,698 감소

## V.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향 모색

### 1. 연결납세제도의 기본방향

연결납세제도는 기업그룹을 하나의 경제주체로 보아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제도이므로 단일 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를 하는 기존의 제도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과세체계 전반에 복잡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제적인 기준과 조화하는 연결납세제도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에 도입될 연결납세제도가 국제적인 기준과 조화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OECD 회원국의 3분의 2 정도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결납세제도는 국제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지주회사가 일반화되어 있고 여러 기업들의 집단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연결납세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기업들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세제상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으며 국제적인 기준과 조화가 되도록 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라 조세회피행위에 의한 조세탈

루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입될 연결납세제도는 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연결납세제도는 연결그룹을 하나의 경제주체로 보아 결손을 통산하거나 손익을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연결납세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이 제도를 완벽하게 마련함으로써 조세탈루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결납세의 내용은 복잡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가지고 있으나, 도입될 연결납세제도는 가능한 한 단순해야 할 것이다. 세제는 평이하고 명료하며 간단해야 과세당국의 행정비용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따라서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단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우려되는 세수감소 문제의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출한 공적자금 156조 2천억원 중에서 69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회수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 공적자금의 손실분담이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향후 재정에서 상당 부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수감소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라 만일 세수감소가 급격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국에서 이미 시행했고 일본에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결부가세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여 세수감소를 보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결납세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 중에서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유형이 어느 것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 이외에 다른 유형의 연결납세제도를 모색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러나 소득통산형은 미국에서 이미 85년 전부터 시행되

었고 손익대체형은 영국에서 34년 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두 유형은 연결납세제도의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으로서 완전히 정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모두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의 두 유형 중의 하나를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새로운 유형의 연결납세제도를 모색하기보다는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 중에서 하나를 채택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준과 조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각국은 소득통산형을 채택했든 손익대체형을 채택했든 자국의 실정에 맞도록 제도를 조금씩 변형하여 운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제도를 변형하여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장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 중에서 어느 한 유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손익대체형을 도입할 경우와 소득통산형을 도입할 경우로 구분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각각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장에서 제시된 손익대체형은 영국형이나 독일형보다 훨씬 간단한 형태이며, 소득통산형은 미국형보다 훨씬 간단한 형태이다. 이 두 유형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유형이 우리나라에 더 적합한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연결납세의 도입 목적에 비추어 보아 손익대체형과 소득통산형 중에서 어느 유형이 더 적합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조세의 공평성 유지, 조세의 중립성 유지, 연결회계제도의 정착, 세제의 선진화 등의 각 측면에서 보아 어느 유형이 더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 2. 손익대체형 연결납세방안

### 가. 기본구조

본 보고서에서 제시되는 손익대체형 연결납세방안은 영국형이나 독일형보다 훨씬 간단한 형태이다. 이 방안은 자회사의 손익을 모회사에 대체하여 모회사의 손익과 합산하여 연결 과세소득과 세액을 산출하는 간단한 구조이다. 즉, 이 방안은 결손의 통산만을 하도록 하는 간편한 제도로서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와 달리 내부거래손익의 이연, 연결그룹 구성회사간 수입배당의 과세 제외,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수정 등과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1) 연결그룹의 범위

##### 가) 지주비율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각국 모두 의결권주의 지주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는 연결그룹 구성법인의 주주의 이익분배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경제적 일체성의 의미를 경영지배력만이 아니라 법적인 지분청구권까지 포함하여 고려한다면 100% 지주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이러한 예는 일본의 100% 지주비율과 오스트리아의 100% 지주비율(운용상으로는 99%) 등에서 볼 수 있다. 또한 프랑스의 95% 지주비율도 5% 내에서 우리사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실제적으로 100% 지주비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연결재무제표원리와 같이 경영지배라는 관점에서는 독일

처럼 50% 초과 지배를 기준으로 하는 국가도 있다. 소수주주는 일반적으로 경영지배력을 갖지 않고 지분청구권자로서만 기능하므로 만일 연결납세제도에 의하여도 소수주주의 지분청구권에 큰 변동은 주지 않는다면 연결납세제도 적용의 지주비율을 반드시 100%로 유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더구나 주식매수선택권제도 및 종업원지주제도의 활성화와 주식회사 3인 주주요건 등의 문제를 감안하면 지주비율을 100%로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연결납세를 간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지주비율을 100%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식매수선택권제도 및 종업원지주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경우는 연결납세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나, 소수주주 문제 등을 피하고 제도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100% 지주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지주비율을 점차로 낮추는 방안은 연결납세제도가 정착된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연결납세의 범위가 되는 100% 자회사는 모회사에 의해서 직접 100% 소유되는 회사뿐만 아니라 모회사를 포함한 연결그룹 구성회사들에 의해서 집합적으로 100% 소유되는 회사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P사가 T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다면 T사는 P사의 100% 자회사로서 연결납세의 대상이 된다. 또한 P사가 S사의 지분을 60% 소유하고 T사가 S사의 주식을 40% 소유한다면 T사는 S사의 간접적인 100% 자회사가 되어 연결납세의 대상이 된다.

#### 나) 연결납세대상회사의 범위

연결납세 대상회사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지분비율을 충족하는 자회사를 모두 연결납세하도록 강제화할 것인가, 아니면 원하는 자회사만 연결납세

하도록 임의적용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해당 자회사 전부를 강제로 대상화하면 번잡한 실무를 야기하게 된다. 반면 임의적용을 인정하게 되면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결손금을 다른 법인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어 절세의 목적으로 연결납세제도가 이용될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소득통산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해당 자회사 전부를 강제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영국이나 독일과 같이 손익대체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임의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기본적으로 소득통산형은 기업그룹의 경제적 일체성에 주목하여 기업그룹을 단일주체로 간주하여 과세하려는 제도이며, 손익대체형은 기업그룹의 경제적 일체성에 주목하기보다는 연결납세를 단순·간명하게 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하에서는 당연히 원하는 자회사만 연결납세하도록 임의적용하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연결납세를 간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하는 자회사만 임의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모회사와 자회사간에만 연결납세를 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동일한 기업그룹에 속하는 기업이면 어느 기업 간에도 연결납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영국형과 독일형 연결납세제도는 간편하기도 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절세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손익이전 대상법인의 범위에 관해서는 큰 차이가 있다. 영국형은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 간에는 이익회사가 결손회사의 손실을 대체받아 자신의 이익과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영국형은 모회사와 자회사 간 뿐만 아니라 자회사 간에도 연결납세가 가능하다. 반면 독일형은 이익이전계약을 맺은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만 연결납세가 가능하다. 동일한 연결그룹에 속하는 경우 어느

연결그룹 구성회사와도 연결납세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 연결그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대한 절세를 할 수 있는 기업 간에 연결납세를 하려고 할 것이므로 모회사가 연결납세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모회사를 포함하지 않은 자회사들 간의 관계를 경제적 일체성이 있는 단일주체로 보는 것은 너무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다면 반드시 모회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만 연결납세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두 개 이상의 자회사라도 연결납세의 요건에 해당하면 모두 모회사와 연결납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 자회사를 연결납세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연결재무제표는 외국 자회사도 연결대상회사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결납세제도는 외국 자회사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모회사 소재국의 과세권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국 자회사에 대해서까지 모회사 소재국의 세제를 적용하는 것은 세제를 극히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며, 외국 거주자인 외국 자회사에 대해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 된다. 외국 자회사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은 외국 자회사를 국내 기업의 외국지점으로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독립된 법인을 지점으로 보아서 과세해서는 안된다는 조세조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 자회사는 연결납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계속적용 요건

연결납세의 방안으로 손익대체를 하기 시작한 자회사에 대하여 연결납세를 계속 의무화할 것인가, 아니면 과세연도별 적용 여부를 임의로 선택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연결납세를 계속 의무화하지 않는 경우 그룹은 각 자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연결

납세를 중단했다가 필요시 다시 시작함으로써 그룹의 손익을 자의적으로 조절하고 조세회피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연결납세를 계속하게 되면 연결납세를 하는 경우의 세액과 연결납세를 하지 않는 경우의 개별 기업들의 납세액의 합계액이 경영활동의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는 대부분 상당 기간 동안 연결납세제도를 계속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의 경우 관련그룹이 연결신고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계속 적용을 조건으로 하고 연결중지를 위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계속 적용기간을 5년 기한으로 한정하여 연결납세하도록 하고 있다.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는 5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익이전계약이 시행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계약의 존속기간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다. 반면 영국의 경우는 적용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에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다면 일정 기간 동안 연결납세를 계속하도록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즉, 모·자회사 간에 단년도만 연결납세를 하는 것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 3) 과세연도

연결그룹 구성회사들 간에 과세연도를 통일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연결납세제도는 연결그룹 구성회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그룹의 담세력을 측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소득측정기간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구성법인

의 회계기간 또는 과세연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도록 강제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하에서는 연결납세를 간편하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연도의 통일을 요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영국의 경우는 사업연도의 대응기간에 안분하여 손익을 이체하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이익이전 계약에 따라 자회사로부터 이체받은 손익은 모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그 전액을 이체받은 것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다면 연결그룹 구성회사간 과세연도의 통일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과세연도가 다른 경우 영국의 경우처럼 사업연도의 대응기간에 안분하여 손익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4) 회계처리방법

기업은 자신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도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이나 감가상각방법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연결그룹의 구성회사간 회계처리방법이나 자산평가방법이 다를 경우 이를 일치시키도록 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별납세신고에 있어서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경우 사업장이 다르면 다른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일치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감가상각방법의 경우에는 항목별<sup>45)</sup>로 하나의 감가상각방법만을 선택(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제4항)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납세시에도 하나의 감가상각방법만

---

45)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은 하나의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을 선택하도록 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종이 상이한 회사들이 하나의 연결그룹을 구성할 경우에 모든 회계처리방법을 통일해야 한다면 매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단기방안으로 제시되는 연결납세제도에서는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연결그룹 구성회사별로 다른 것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5) 납세주체 및 신고

자회사의 손익을 모회사에 대체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세액이 결정되면 모회사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자회사의 소득을 모회사에 대체하여 모회사의 결손과 합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경우는 자회사도 연대납부의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회사의 결손을 모회사에 대체하여 모회사의 소득과 합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경우 자회사는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모회사는 연결소득금액 및 연결세액 등을 기재한 연결납세에 관한 신고서를 모회사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자회사는 연결소득의 개별귀속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 자신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한다.

### 나. 연결납세방법

#### 1) 손익대체방법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본 보고서에서 제시되는 손익대체형 연결납세방안은 영국형이나 독일형보다 훨씬 간단한 형태이다. 연결납세를 원하는 모회사와 자회사는 연결그룹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별과세소득에 대하여 연결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방안은 자회사의 개별손익을 모회사로 대체하는 간편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부거래에 관련된 미실현이익의 제거나 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의 수정 등의 계산을 하지 않도록 한다.

우리나라에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손익대체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연결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은 개별 회사 단위로 과세연도의 과세소득을 산정하고, 자회사의 소득 또는 결손을 모회사에 대체하여 모회사의 결손 또는 소득과 통산하여 연결과세소득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즉, 모회사는 반드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연결납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회사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결손이 발생하는 자회사와 연결납세를 할 수 있고, 모회사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는 자회사와 연결납세를 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자회사는 소득이 발생하고 하나의 자회사는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각 자회사는 자신의 소득 또는 결손을 모회사로 대체하여 연결납세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손익대체형 연결납세방안은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영국형과 차이가 있다. 첫째, 영국형은 소득발생회사가 결손회사의 결손을 대체받아 자신의 소득과 상계하는 방법이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방안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결손 또는 소득을 대체받아 자신의 소득 또는 결손과 상계하는 방법이다. 둘째, 영국형은 동일한 연결그룹에 속하는 연결그룹 구성회사들간에는 연결납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방안은 모회사와 자회사간에만 연결납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손익대체형 연결납세방안은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독일형과 차이가 있다. 첫째, 독일형은 모·자회사간에 일정기간의 이익이전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여기

서 제시되는 방안은 이익이전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둘째, 독일형은 모·자회사 간에 이익이전 계약기간인 5년 동안 연결납세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여기서 제시되는 방안은 모·자회사 간에 연결납세의 적용기간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는다.

## 2) 이월결손금의 처리

연결납세신고에 있어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계처리되는 결손금의 범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연결납세제도 적용 전에 개별기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연결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월결손금은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손익대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연결납세신고를 하기 전에 발생한 자회사의 이월결손금은 자회사의 향후 소득에서만 공제될 수 있다. 그러나 모회사의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후에 자회사를 취득한 후 당해 자회사의 소득을 대체받아 당해 결손금을 사용하는 조세회피 행위가 가능하다. 즉, 연결납세 적용 전에 모회사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연결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조세회피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연결납세 적용 전에 모회사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자회사로부터 대체받은 소득에서는 공제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연결납세를 하고 나서 남은 결손금의 이월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연결납세를 하게 되면 자회사의 손익이 모회사에 이전되는 것이므로 결손금의 이월공제는 모회사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회사 차원에서 결손금은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결손금의 일부대체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모회사나 자회사의 소득 또는 결손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일부대체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자회사가 15억원의 결손이 발생하고 모회사가 10억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자회사는 15억원이 아닌 10억원의 결손을 모회사에 대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3) 회계연도가 다른 경우의 손익대체 방법

연결납세를 하는 기업들의 회계연도가 다른 경우 모회사의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두 개 연도에 걸친 자회사의 과세연도의 손익을 기간에 비례해서 약식으로 안분함으로써 통산될 손익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만, 기간에 비례하는 안분방식이 불리한 경우 자회사의 과세연도를 구분하여 결산을 하고 이를 기초로 연결신고하는 경우에는 인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다. 세율 및 연결부가세

연결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별신고 경우의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초기에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세수의 감소일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결납세에 대하여 연결부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초기에 세수의 감소를 우려하여 가산세를 도입하였다. 미국의 경우 연결납세로 인해 모·자회사 간 결손금 상계로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것보다 과세상 상당한 혜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결과세소득에 대해 2%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1942년부터 1962년까지 시행하였다. 일

본의 경우도 현재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2002 회계연도와 2003 회계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에 부가적으로 2%포인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2년 후에는 연결납세제도의 실시상황이나 재정상황을 근거로 하여 연결부가세의 계속 과세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제IV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그룹의 법인세부담액은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8조 4,982억원과 6조 5,075억원으로 2000년과 2001년의 총법인세수 17조 8,784억원 및 16조 9,751억원의 47.5%와 38.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초기에 지주비율을 100%로 하는 경우 이 지주비율을 2000 회계연도에 적용하여 연결납세를 한다고 가정하면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하에서는 결손통산효과로 인하여 5,076억원의 세수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01 회계연도에 적용하여 연결납세를 한다고 가정하면 2,618억원의 세수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주비율을 100%로 하는 경우 연결납세로 인한 세수감소는 2000년도 기업그룹의 법인세 세수 2조 6,179억원의 19.4%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며, 2001년도 기업그룹의 법인세 세수 2조 9,384억원의 8.9%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세수감소를 연결부가세의 부과로 보전한다면 기본세율에 2000년의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6.7%<sup>46)</sup>, 2001년을 기준으로 할 때 2.7%<sup>47)</sup>의 부가세율을 가산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결부가세의 부과를 통하여 연결납세로 인한 세수감소를 모두 보전하려고 한다면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진다는 점과 미국과 일본 모두 도입 초기에 2%의 연결부가세를 부과하였

---

46) 세수감소 5,076억원 / {(법인세수 2조 6,179억원 - 세수감소 5,076억원) / 28} = 6.7%

47) 세수감소 2,618억원 / {(법인세수 2조 9,384억원 - 세수감소 2,618억원) / 28} =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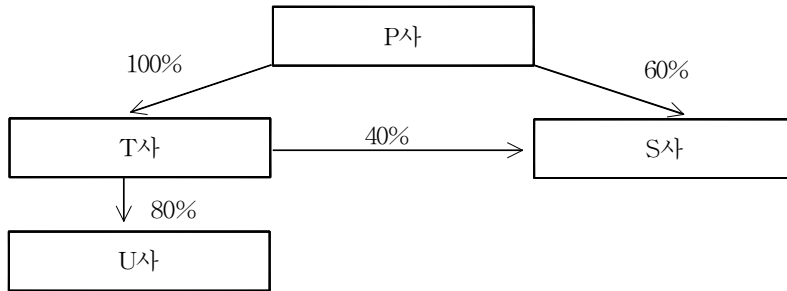
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2%의 연결부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 손익대체형 연결납세방안의 예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손익대체형 연결납세방안을 가설의 사례에 의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1) 지분의 취득 및 출자관계

주권상장법인인 P사는 2003년 3월 1일 T사(주권상장법인)의 지분 100%를 200,000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T사는 2004년 1월 1일 U사(비상장법인)의 지분 80%를 80,000백만원에 취득하였다. 또한 T사는 2002년 12월 중 S사(비상장법인)의 지분 40%를 60,000백만원에 취득하였고 P사는 2004년 2월 1일에 S사의 지분 60%를 85,000백만원에 취득하였다. 이러한 출자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2) 개별기업의 세무조정 및 과세소득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별 당기순이익, 세무조정, 과세소득 및 법인세액은 <표 V-1> 및 <표 V-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V-1> 개별과세소득(2003 사업연도)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 2003. 1. 1 ~ 2003. 12. 31)

계정과목	회 사 명			
	P	S	T	U
매출액	400,000	200,000	150,000	50,000
매출원가	(240,000)	(100,000)	(80,000)	(20,000)
매출총이익	160,000	100,000	70,000	30,000
수입배당금	40,000		20,000	
수입이자	30,000		30,000	
수입임대료	36,000			
고정자산처분손익	5,000		10,000	
급여와 임금	(50,000)	(40,000)	(20,000)	(22,000)
대손상각	(2,000)	(1,000)	(800)	(500)
임차료		(12,000)	(12,000)	(12,000)
지급이자	(15,000)	(10,000)	(18,000)	(5,000)
접대비	(200)	(55)	(110)	(70)
감가상각비	(10,000)	(20,000)	(8,000)	(5,000)
법인세비용	(28,000)	(6,000)	(9,000)	
장부상 당기순손익	165,800	10,945	62,090	(14,570)
세무조정				
수입배당 익금불산입	(20,000)		(10,000)	
법인세비용 손금불산입	28,000	6,000	9,000	
부당행위 계산부인	3,000			
접대비 한도 초과	35		20	10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76,835	16,945	61,110	(14,560)
이월결손금	(50,000)		(24,000)	
과세표준	126,835	16,945	37,110	(14,560)
세율	15%,27%	15%,27%	15%,27%	15%,27%
법인세액	34,233	4,563	10,008	-

## &lt;표 V-2&gt; 개별과세소득(2004 사업연도)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 2003. 1. 1 ~ 2003. 12. 31)

계정과목	회 사 명			
	P	S	T	U
매출액	500,000	300,000	200,000	100,000
매출원가	(280,000)	(160,000)	(180,000)	(45,000)
매출총이익	220,000	140,000	20,000	55,000
수입배당금	81,000		36,000	
수입이자	35,000		5,000	
수입임대료	36,000			
고정자산처분손익			5,000	
급여와 임금	(50,000)	(45,000)	(35,000)	(15,000)
대손상각	(2,000)	(1,000)	(800)	(500)
임차료		(12,000)	(12,000)	(12,000)
지급이자	(15,000)	(10,000)	(18,000)	(5,000)
접대비	(200)	(80)	(120)	(100)
감가상각비	(10,000)	(20,000)	(8,000)	(5,000)
법인세비용	(68,000)	(15,500)		(5,200)
장부상 당기순손익	226,800	36,420	(7,920)	12,200
세무조정				
수입배당 익금불산입	(40,500)		(18,000)	
법인세비용 손금불산입	68,000	15,500		5,200
접대비 한도 초과	5		15	25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54,305	51,920	(25,905)	17,425
이월결손금				(14,560)
과세표준	254,305	51,920	(25,905)	2,865
세율	15%,27%	15%,27%	15%,27%	15%,27%
법인세액	68,650	14,006	-	762

3) 관계회사 간의 주요 거래내역 및 기타 자료

가) 2003 사업연도

2003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과 연결납세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회사간 주요 거래내역 및 기타 자료는 다음과 같다.

- ① 당해 사업연도 3월말에 P사는 70,000백만원, S사는 50,000백만원, T사는 40,000백만원, 그리고 U사는 10,000백만원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배당기준일은 모든 법인에게 있어서 3월 10일이라고 가정한다.
- ② 당해 사업연도에 P사는 T사에게 3월 이후 75,000백만원의 재고자산을 판매하였으며 동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는 50,000백만원이었다.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동 재고자산은 T사에 재공품으로 남아있다. 전기말에도 내부이익이 20,000백만원인 동일한 형태의 거래에서 발생된 재공품이 S사에 있었다.
- ③ 전년도에 P사가 업무용으로 수년간 사용하던 취득원가 30,000백만원인 토지를 당해 사업연도 4월 1일 T사에게 35,000백만원(시가 38,000백만원)에 매각하였다.
- ④ 당해 사업연도 6월 1일, T사는 전년도말에 20,000백만원에 구입한 기계장치(감가상각비 미계상)를 P사에게 30,000백만원에 매각하였다. 동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이며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다. 양사는 동거래를 제3자간의 거래처럼 기록하고 있다.
- ⑤ P사는 S사, T사, 및 U사에게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으며 연간 12,000백만원씩을 임대료로 수취하고 있다.
- ⑥ P사는 2000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50,000백만원이 당해 사업연도로 이월되었으며 T사는 1999년에 발생한 결손금 24,000백만원이 당해 사업연도로 이월되었다.

- ⑦ 전년도 과세표준신고서 작성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상 기말 차가감계(이하에서는 ‘세무상 자기자본’이라고 한다)는 P사 450,000백만원, S사 230,000백만원, T사 120,000백만원, U사는 70,000백만원이었다.

#### 나) 2004 사업연도

2004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과 연결납세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회사간 주요 거래내역 및 기타 자료는 다음과 같다.

- ① 당해 사업연도 3월말에 P사는 80,000백만원, S사는 60,000백만원, T사는 45,000백만원, 그리고 U사는 15,000백만원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배당기준일은 모든 법인에게 있어서 3월 10일이라고 가정한다.
- ② 당해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은 당해 사업연도 중 전부 외부에 판매되었다. 또한 당해 사업연도 중 P사가 T사에게 60,000백만원의 재고자산을 판매하였으며 동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는 40,000백만원이었다. 당해 사업연도 중 동 재고자산도 외부에 판매되었다
- ③ T사는 전년도에 P사로부터 구입한 토지를 40,000백만원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매각하였다.

#### 4) 개별 기업의 세무조정 및 과세표준의 계산내역

##### 가) 2003 사업연도

<표 V-1>에 표시된 2003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과 과세표준의 계산내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① P사는 T사로부터 40,000백만원(40,000백만원의 100%)의 배당금을 수취하였으며 T사는 S사로부터 20,000백만원(50,000

백만원의 40%)의 배당금을 수취하였다. 이 수입배당금 중 50%(P사의 수입배당금 중 20,000백만원, T사의 수입배당금 중 10,000백만원)는 세무조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법인세비용 계상액은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 ③ P사가 T사에게 매각한 토지는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에 해당하며 시가와와의 차액 3,000백만원은 익금에 산입한다.
- ④ 접대비한도는 매출액 중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03%와 6천만원의 합계액으로 이를 초과하는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편의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에 적용하는 낮은 적용율은 무시한다.
- ⑤ 이월결손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내의 것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모두 공제 가능하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⑥ 2003 사업연도 말 세무상 자기자본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ㄱ) P사: 450,000백만원 - 배당 70,000백만원 + 당기순이익 165,800백만원 + 당기유보증감 0 - 당기 손익미계상법인세 6,233백만원 = 539,567백만원
  - (ㄴ) S사: 230,000백만원 - 배당 50,000백만원 + 당기순이익 10,945백만원 + 당기유보증감 0 + 당기 손익과다계상법인세 1,437백만원 = 192,382백만원
  - (ㄷ) T사: 120,000백만원 - 배당 40,000백만원 + 당기순이익 62,090백만원 + 당기유보증감 0 - 당기 손익미계상법인세 1,008백만원 = 141,082백만원
  - (ㄹ) U사: 70,000백만원 - 배당 10,000백만원 - 당기순손실 14,570백만원 + 당기유보증감 0 = 45,430백만원

## 나) 2004 사업연도

<표 V-2>에 표시된 2004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과 과세표준의 계산내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① P사는 T사로부터 45,000백만원, S사로부터 36,000백만원의 배당금을 수취하였으며 T사는 S사로부터 24,000백만원, U사로부터 12,000백만원의 배당금을 수취하였다. 이 수입배당금 중 50%는 세무조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법인세비용과 접대비 한도초과액도 2003 사업연도와 마찬가지로 손금불산입한다.
- ③ U사의 2003 사업연도 결손은 2004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된다.
- ④ 2004 사업연도 말 세무상 자기자본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ㄱ) P사: 539,567백만원 - 배당 80,000백만원 + 당기순이익 226,800백만원 + 당기유보증감 0 - 당기 손익미계상법인세 650백만원 = 685,717백만원
  - (ㄴ) S사: 192,382백만원 - 배당 60,000백만원 + 당기순이익 36,420백만원 + 당기유보증감 0 + 당기 손익과대계상법인세 1,494백만원 = 170,296백만원
  - (ㄷ) T사: 141,082백만원 - 배당 45,000백만원 - 당기순손실 7,920백만원 + 당기유보증감 0 = 88,162백만원
  - (ㄹ) U사: 45,430백만원 - 배당 15,000백만원 + 당기순이익 12,200백만원 + 당기유보증감 0 + 당기 손익과대계상법인세 4,438백만원 = 47,068백만원

## 5)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액

## 가) 2003 사업연도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손익대체형 연결납세방안에서는 연결 대상이 되는 자회사의 지주비율을 100%로 하기 때문에 손익대체의 대상은 모회사인 P사와 자회사인 T사이다. 2003 사업연도에는 P사와 T사 모두 소득이 발생하여 손익대체의 실익이 없으므로 연결납세를 선택하지 아니할 것이다.

## 나) 2004 사업연도

2004 사업연도에 손익대체를 할 수 있는 대상회사는 모회사인 P사와, 모회사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는 T사, P사와 T사가 공동으로 100%의 지분을 소유하는 S사이며 U사는 100% 미만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제외된다. 또한 손익대체 가능회사 중 T사에 있어서 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손익대체를 선택하기로 한다. 즉, P사는 T사의 결손 25,905백만원을 대체받아서 자신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P사의 과세표준은 228,400백만원이 되고 T사의 결손은 소멸한다. 한편 P사에게 적용될 세율은 2%의 연결부가세를 포함하여 17% 또는 29%가 된다.

$$\begin{aligned} \text{P사의 과세표준} &= 254,305\text{백만원} - 25,905\text{백만원} \\ &= 228,400\text{백만원} \end{aligned}$$

$$\text{P사의 법인세액} = 228,400\text{백만원} \times \text{세율} = 66,224\text{백만원}$$

한편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손익대체형 연결납세방안에서는 수입배당금, 내부거래손익, 개별한도초과액, 부당행위, 자회사주식의 기초가액 등에 대하여는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또한 세무상 자

기자본도 결손대체에 불구하고 조정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결손을 다른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결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T사의 입장에서는 당기 이후의 사업연도에 이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을 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P사의 법인세액이 달라짐에 따라 세무상 자기자본은 685,717백만원에서 세액감소액 2,426백만원을 차감한 683,291백만원이 된다. 또한 결손대체를 허용한 것에 대하여 P사가 T사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T사는 동 지급받은 금액은 환급세액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세무상 자기자본에 가산한다.

### 3. 소득통산형 연결납세방안

#### 가. 기본구조<sup>48)</sup>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는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와는 달리 연결납세 대상이 되는 그룹에 속하는 모든 기업을 연결납세하는 것이므로 제도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소득통산형 연결납세방안은 미국형을 기본으로 하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면서도 가능한 간편한 제도가 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1) 연결그룹의 범위

##### 가) 지주비율

---

48) 여기서 논의해야 할 내용 중에서 상당부분은 앞 절의 손익대체형 연결납세방안에서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미 언급했던 내용은 제외하기로 한다.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은 다른 투자자와 계약 합의에 의해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 정관이나 계약에 의해 종속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다. 즉, 연결재무제표는 의결권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50% 미만이라도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작성하는 것이다. 반면 연결납세제도는 연결그룹 구성법인의 주주의 이익분배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경영 지배력만이 아니라 법적인 지분청구권까지 고려하여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기업 간에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연결납세는 100% 지주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특히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지주비율을 100%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소수주주 문제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기업그룹의 경제적 일체성에 주목하는 연결납세의 목적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100%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개인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소유가 많은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소유구조를 고려할 때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대폭 줄어들어 연결납세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sup>49)</sup>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제IV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연결납세의 대상을 지분비율 100%로 할 때에도 2000년에 99개, 2001년에는 128개에 달할 정도로 적지 않은 기업그룹이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수치는 지분비율을 낮추어서 50%로 할 때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기업그룹의 수(2000년 302개, 2001년 365개)와 비교해 보아도 결코 적지 않음을

49) 한국공인회계사회(2001), p. 86.

알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대상기업의 지주비율을 100%에서 그 미만으로 완화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소수주주는 일반적으로 경영지배력을 가지지 않고 지분청구권자로서만 기능하므로 연결납세제도에 의하여도 소수주주의 지분청구권에 큰 변동을 주지 않는다면 연결납세제도 적용의 지주비율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주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연결납세제도에 의하여 소수주주의 지분청구권에 변동을 주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다.<sup>50)</sup>

소수주주 문제 이외에 주식매수선택권제도 및 종업원지주제도의 활성화와 주식회사 3인 주주요건 등의 문제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대상기업의 지주비율을 100%에서 그 미만으로 완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연결납세제도가 정착한 후에 순차적으로 종업원 등에 의한 지주제도의 문제나 실질지배의 문제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지주비율을 프랑스 수준인 95%로 낮추고, 나중에는 미국 수준인 80% 정도까지 점차적으로 낮출 수도 있을 것이다.

#### 나) 연결 대상회사의 범위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를 모두 연결납세 하도록 강제할 것인가, 아니면 자회사의 선택에 의해서 가입 여부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해당 자회사 전부를 강제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적용은 기업그룹의 경제적 일체성에 주목하여 기업그룹을 단일주체로 간주하여 과세하려는 연결납세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50) '7) 소수주주 및 채권자의 보호'에서 논의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의 선택에 의해서 가입 여부를 임의로 정하게 하면 자의적 조세회피 목적으로 연결납세제도가 남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해당 자회사 전부를 강제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하에서는 해당 자회사 전부를 강제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 자회사는 손익대체형 연결납세방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논리로 연결납세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2) 연결납세의 강제적용 여부

연결납세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그룹에 대해서 연결납세를 하도록 강제할 것인가, 아니면 연결납세의 여부를 기업그룹의 선택에 의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결납세의 강제적용보다는 기업그룹의 선택적 적용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선택적 적용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세제가 과세목적 이외에 기업 활동에 주는 영향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연결납세의 적용 여부를 기업그룹의 선택에 맡기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 3) 계속적용 요건

일단 연결납세를 시작한 기업그룹에 대해서 연결납세를 계속 의무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연결납세를 계속 의무화하지 않는 경우 기업그룹은 각 계열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연결납세를 중단했다가 필요시 다시 시작함으로써 손익을 자의적으로 조절하고 조세회피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연결납세를 하는

경우의 세액과 개별 기업의 납세액이 경영활동의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화될 것으로 보고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연결납세를 계속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다면 연결납세의 계속적용을 5년 정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결납세를 하는 기업그룹이 그 기업그룹의 연결납세신고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연결납세의 중지승인을 신청하고 그 중지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결납세신고의 중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4) 과세연도

연결납세제도는 연결그룹 구성법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그룹의 담세력을 측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소득측정기간이 통일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구성법인의 회계기간 또는 과세연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도록 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결그룹의 구성법인들의 회계기간 또는 과세연도를 일치시키도록 강제할 경우 연결납세를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손익대체형 연결납세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모회사의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두 개 연도에 걸친 자회사의 과세연도의 손익을 기간에 비례해서 약식으로 안분함으로써 통산될 손익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5) 회계처리방법

연결그룹의 구성회사간 회계처리방법이나 자산평가방법이 다를 경우 이를 일치시키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손익대체형 연결

납세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를 통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연결그룹 구성회사별로 다른 것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6) 납세주체

모·자회사를 연결하여 세액이 결정되면 당해 연결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연결그룹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개별 기업으로 할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연결그룹 자체는 법적 실체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연결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연결그룹 구성법인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모회사를 납세의무자로 할 것인지 또는 세액을 안분하여 개별 자회사를 납세의무자로 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은 모두 모회사가 연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를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을 받은 자회사는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모회사가 연결소득금액 및 연결세액 등을 기재한 연결납세에 관한 신고서를 모회사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연결그룹에 가입하고 있는 자회사는 연결세액에 대하여 연대납부책임을 가지며, 연결소득의 개별귀속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 자신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한다.

#### 7) 소수주주 및 채권자의 보호

연결납세대상이 되는 자회사의 지주비율을 100% 미만으로 정할 경우 연결납세로 인하여 소수주주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

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 연결그룹의 구성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결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른 구성법인이 연대납부책임을 이행하게 되면 그 다른 구성법인의 소수주주는 기업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된다.

둘째, 결손금 및 조세혜택의 통산으로 미래에 사용될 여지가 소멸됨에 따라 그 구성법인의 소수주주는 기업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특정 구성법인에게 있어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연결납세를 하지 않으면 결손금을 당해 과세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결손이 다른 구성법인의 소득과 통산되어 당해 과세연도에 사용되고 소멸함으로써 당해 과세연도 이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소득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없게 되면 납부할 세금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그 다른 구성법인으로부터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다면 소수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 연결납세에 의해 기업의 가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수주주의 손실 가능성에 대하여 소수주주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주비율을 100% 미만으로 할 경우에는 연결납세에 대하여 모든 구성법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구성법인의 동의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동의 과정에서 연대납세의무로 인한 손실가능성이나 연결세액의 배분방법 등에 관하여 소수주주는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연결납세에 있어서 결손금 또는 조세혜택이 통산됨에 따라 조세부담이 감소하게 되는 구성법인이 결손금 등을 가진 구성법인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면 소수주주가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손금공제 또는 조세혜택의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즉, 당해 결손금 또는 조세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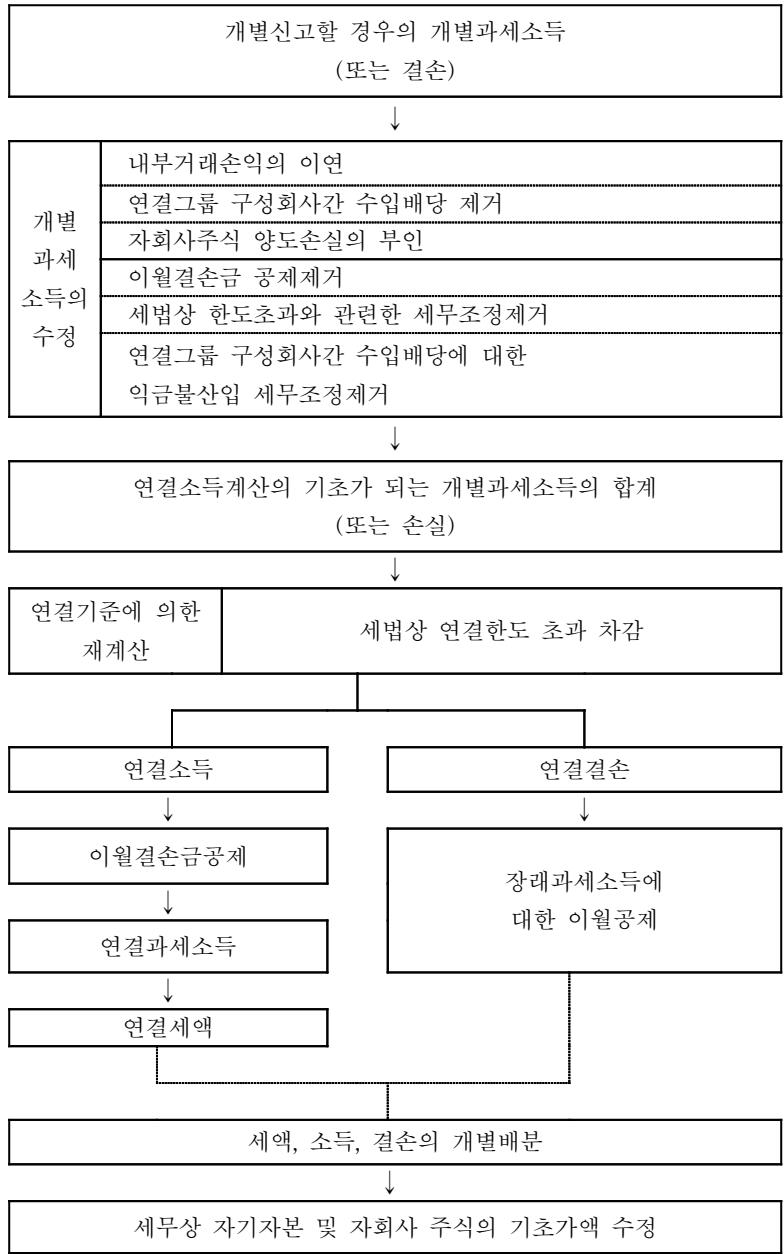
이 연결납세기 통산된다고 하더라도 개별법인의 입장에서 미래에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어차피 결손금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결납세기 통산의 대가는 없다고 볼 수도 있으며 미래에 결손금 등이 공제될 수 있는 경우에도 구성법인 간의 한계세율의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에 따라 적정한 대가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연결세액의 배분이나 결손금 등 조세혜택의 사용대가의 지급 여부 또는 산정방법에 대하여 세법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채권자도 소수주주와 마찬가지로 연결납세로 인하여 원금 및 이자의 안전한 회수가 위협받게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연결납세로 인한 세액배분의 방법을 미리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미래의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연결납세 방법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V-1]과 같다. 우선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의 규정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개별과세소득에 대하여 연결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한 후, 이를 합산하여 개별과세소득의 합계액을 산출한다. 그 다음 개별과세소득의 합계액에서 연결기준으로 계산한 각종 한도초과 및 공제 등을 적용하여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한다.

[그림 V-1] 연결과세소득 계산의 개념도



## 1) 개별과세소득의 수정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의 규정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개별과세소득에 대하여 연결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가하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수정사항은 내부거래손익의 이연, 구성원간 수입배당의 제거, 자회사 주식양도손실의 부인, 이월결손금공제 제거, 세법상 한도초과와 관련한 세무조정 제거, 연결그룹 구성회사간 수입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제거 등이다.

## 가) 내부거래손익의 이연

연결그룹 구성법인간의 내부거래의 유형으로는 자산의 매각이나 교환, 용역의 제공, 기술라이선스, 자산의 임대, 금전대출 등을 들 수 있다. 연결그룹 전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본다면 내부거래에 의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의 이익은 연결그룹 이외의 법인에게 자산이 매각되는 등 실현된 시점에서 발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내부거래손익의 제거는 연결납세제도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다.

내부거래손익의 이연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내부거래손익 이연의 대상범위를 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거래손익을 제거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 먼저 내부거래손익의 이연 대상범위를 내부거래 전부로 할 것인지, 또는 재고자산 등을 대상범위에 포함하지 않을 것인지를 검토해 본다. 미국의 경우 내부거래 모두를 이연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의 경우는 재고자산의 내부거래에 대해 시가로 인식하도록 하여 재고자산의 내부거래에 의한 손익에 대해서는 거래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재고자산을 내부거래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은 제도를 간편하게 한다는 측면 이외에 타당한 논리

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채고자산을 포함한 모든 내부거래를 내부거래손익의 이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내부거래손익을 제거하는 방법을 검토해 본다. 내부거래손익의 제거방법은 제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자측 장부가액 인계방식(또는 양수자 손익귀속방식)과 양도자측 손익이연방식(또는 양도자 손익귀속방식)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양도자측 장부가액 인계방식에서는 내부거래시 양도가액을 양도자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내부거래이익이 양수자에게 귀속되는 반면에 양도자측 손익이연방식에서는 양도가액을 거래 당사자간의 실제 거래가액(또는 시가)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거래이익이 양도자에게 귀속된다. 양도자측 장부가액 인계방식에 의하면 내부거래이익이 실현되기 전에 연결그룹이 해체되는 경우 내부거래이익은 과세될 기회가 상실되는 반면에 양수법인의 자산가액은 내부거래이익을 포함한 가액으로 회계처리됨에 따라 양수법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당해 금액이 소득에서 공제되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에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양도자측 장부가액 인계방식은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와 같이 양도자측 손익이연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미국의 촉진원칙(acceleration rule)에서 볼 수 있듯이 내부거래의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지분비율의 감소 등으로 연결그룹에서 제외되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내부거래손익의 이연을 중단하고 외부에 매각 등으로 내부거래손익이 실현되기 이전에 앞당겨서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 나) 연결그룹 구성법인 간 수입배당의 제거

현행 법인세는 법인주주가 일반법인인 경우와 지주회사인 경우를 구분하여 이중과세를 차별적으로 조정해 주고 있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지분을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는 30%)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배당액의 50%를 익금불산입하도록 허용하고, 다른 내국법인의 지분을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는 30%) 이하 소유하는 경우는 배당액의 30%를 익금불산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는 경우에는 배당액의 전액을 익금불산입하고, 100% 미만이지만 8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는 4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배당액의 90%를 익금불산입하도록 허용하며, 자회사의 지분을 80%(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경우는 40%) 이하 소유하는 경우는 배당액의 60%를 익금불산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별납세신고시에는 배당을 하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인정되는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받고 그 나머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연결납세신고시에는 배당소득 전부를 익금불산입하도록 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 다) 자회사 주식양도손실의 부인

연결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한 개별소득의 수정사항으로서 미국의 연결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자회사 주식양도손실을 부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에 관계되는 투자수정의 구조를 이용하여 자회사 자산양도이익의 연결베이스과세를 회피

하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라) 이월결손금공제의 제거

연결그룹의 구성법인이 개별납세신고시 과세소득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은 연결소득에서의 공제 여부를 연결기준으로 다시 정할 것이므로 이미 이월결손금공제를 적용하였다면 이를 제거하여 공제 전의 과세소득으로 환원시킨다.

마) 세법상 한도초과와 관련한 세무조정 제거

세법상 손금, 익금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한도는 개별 법인별로 적용하는 것이나 연결납세를 하는 경우에는 이들 한도도 연결기준으로 재계산하여야 하므로 개별적으로 계산한 한도 초과 등의 세무조정은 제거한다.

바) 연결그룹 구성법인간 수입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제거

연결그룹 구성법인간 수입배당은 전액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별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한 구성법인 간 수입배당의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은 제거한다.

2) 연결과세소득의 산정

가) 손금한도의 연결기준 재계산 여부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는 개별과세소득의 합산액에 연결조정을 가하여 연결과세소득을 산정하고, 이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연결산출세액에서 연결기준으로 계산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연결세액을 산정하며 당해 연결세액을 개별법인에게 배분하는 구조

로 되어 있다.

연결과세소득은 연결조정항목이 어떠한 범위에 한정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그 한정 범위에 따라 다음 두 가지 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

- ① 연결조정항목을 결손금의 이월공제, 내부손익제거 등에 한정하는 방식: 이 방식은 개별소득계산을 원칙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연결그룹 구성법인의 개별과세소득과 개별결손을 통산하는 것이고, 내부거래손익이 있는 경우만 연결조정을 하는 것이다.
- ② 연결조정항목을 ①의 항목 외에 손익금 또는 공제의 한도가 적용되는 항목의 재계산으로 확대하는 방식: 그룹의 경제적 일체성을 감안하여 소득, 매출, 자본 또는 자산을 기준으로 손익금 및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법인별로 한도계산한 것을 연결실체의 입장에서 총계기준한도로 재계산하여 필요한 연결조정을 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연결조정범위 중 어느 것이 우리나라에 타당한가는 제도 자체로서의 합리성, 조세회피 가능성의 배제, 간편성 등의 요청과 조화하여 현실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세제 중에서 손익금 또는 공제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구성법인이 개별적으로 산정한 특정 항목의 단순합계액으로 해서는 연결납세의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특정 항목의 손익금산입 및 공제액은 연결기준으로 재계산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 나) 재계산이 필요한 항목

소득, 매출, 자본, 자산 등을 기준으로 손익금 및 공제한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실체의 총계기준으로 한도의 재계산이 필요한 항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간주임대료 적용대상법인 여부의 판정(조세특례제한법 제 138조)
- ② 연결그룹 구성법인 이외의 법인으로 받은 배당금액의 익금 불산입액에서 차감되는 출자관련 이자
- ③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한도
- ④ 기부금의 손금한도
- ⑤ 접대비의 손금한도
- ⑥ 기준초과차입금 이자(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차입금과다법인의 이자(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
- ⑦ 국내광고선전비의 손금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 ⑧ 공동경비의 한도(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 ⑨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등의 손금한도
- ⑩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재해손실세액공제

### 3) 연결결손금 공제

#### 가) 연결납세신고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연결납세신고연도에 각 구성법인별로 산출된 개별과세소득과 개별결손이 연결그룹 차원에서 통산됨으로써 각 구성법인의 결손금은 다른 구성법인의 소득과 상계되고 상계 후의 소득이 연결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만약 결손이 과세소득보다 커서 통산의 결과 결손금이 남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세액은 0이 되고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

무상 결손금으로서 그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았거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연결납세신고에 있어서도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연결그룹의 구성법인이 된 이후에 발생한 개별납세신고연도의 결손금

연결그룹의 구성법인이 된 이후에도 당해 연결그룹이 연결납세신고를 선택하지 아니하여 각 구성법인들이 개별납세신고를 한 경우 각 구성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하여 그 이후에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개별납세신고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이므로 연결그룹 구성법인이 되기 전에 발생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그 이후의 공제에 제한을 가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연결그룹의 구성법인이 된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이므로 연결그룹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이후의 연결소득에서 제한없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될 수 있다. 미국 세법에서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 연결그룹 구성법인이 되기 전에 자회사에서 발생한 결손금  
 자회사가 연결그룹 구성법인이 되기 전에 당해 자회사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연결납세신고시 연결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자회사를 취득하는 등 남용의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연결그룹 구성법인이 되기 전에 개별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연결베이스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규제할 경우 당해 이월결손금이 사용되지 못하는 결

과를 초래하므로 연결납세신고를 하더라도 당해 기업의 과세소득으로 인하여 연결소득이 증가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SRLY(separate return limitation year)원칙에 의해 연결그룹 구성법인이 되기 전에 개별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연도에 있어서 연결소득 중 당해 기업의 과세소득이 기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라) 연결그룹 구성법인을 취득하기 전에 모회사에서 발생한 결손금

미국 세법에서는 연결그룹 구성법인을 취득하기 전에 모회사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연결납세신고시 제한없이 연결과세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 즉, 모회사에서 결손이 발생한 이후에 취득된 자회사의 소득에서는 모회사의 결손이 제한없이 공제되는 것이다. 이는 자회사에서 결손이 발생한 이후에 모회사가 당해 자회사를 취득하는 경우 연결납세신고시 연결과세소득에서 당해 자회사의 결손이 제한적으로만 공제(연결과세소득 중 당해 자회사의 기여액을 한도로 함)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렇게 자회사 취득 전 모회사의 결손이 연결납세시 제한없이 공제되는 것은 모회사가 연결실체와 같은 인격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회사와 자회사의 결손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는 여러 가지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야기시키며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세법에서는 모회사의 지분변동에 따른 규제, 역취득에 대한 규제 등 복잡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 도입될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는 결손금공제에 있어서 미국 세법상의 복잡한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도입하지 않고도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연결납세제도의

단순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모회사의 결손금을 자회사의 결손금과 같이 취급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즉, 모회사에서 결손이 발생한 이후에 취득된 자회사의 소득에서는 모회사의 결손이 공제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모회사에서 결손이 발생한 이후에 모회사가 자회사를 취득하는 경우 연결납세신고시 연결과세소득에서 당해 모회사의 결손이 제한적으로만 공제(연결과세소득 중 당해 모회사 및 결손발생당시에도 구성법인이었던 자회사의 기여액을 한도로 함)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결손금의 사용가능성이 축소되는 단점이 있으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는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마) 연결그룹 탈퇴시 이월결손금의 처리

연결그룹 구성법인이 모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주식의 처분 등으로 연결그룹을 탈퇴하는 경우 연결그룹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탈퇴하는 자회사에게 배분하여 이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적자의 연결그룹 구성법인이 존재함에 따라 과세소득을 감액한 후 그룹에서 탈퇴하는 경우 결손금을 분할이전하지 않는다면 결손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연결그룹회사가 그룹을 탈퇴하는 경우 그룹에 남아 있는 연결이월결손금 중에서 이탈하는 회사에 귀속되는 결손금은 이탈 후 승계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4) 내포손실공제 및 이월세액공제의 제한

연결그룹이 새로이 자회사를 취득할 때 그 회사에 구조적으로 내재하고 있던 내포손실은 그후 실현되는 경우 미국의 연결납세

제도에서와 같이 연결납세기 다른 구성법인의 소득과 공제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당해 자회사를 취득할 당시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당해 자회사를 취득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자회사의 자산에 대한 평가액과 내포손실의 여부를 연결납세신고시 같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연결그룹이 새로이 자회사를 취득할 때 당해 자회사가 사용하지 아니한 이월세액공제에 대하여는 결손금의 공제제한과 동일한 제한을 가하여 조세회피목적의 자회사 취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5) 연결세액의 계산 및 배분

연결과세소득이 계산되면 세율을 곱하여 연결세액을 계산하며 연결기준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결세액에서 차감한다. 연결세액에 대해서는 연결그룹의 모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연결그룹 구성회사들은 연대납부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

연결세액의 각 구성법인에 대한 배분은 원칙적으로 연결그룹 구성법인 간의 합의에 의하도록 하되 그 배분방법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6) 세무상 자기자본 및 자회사 주식의 기초가액 수정

연결과세소득 및 연결세액의 계산과 연결세액의 배분과는 별도로 개별 구성법인이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에게 합병될 때 청산소득의 계산기초가 되는 세무상 자기자본과 자회사 주식 양도손익의 기초가 되는 자회사주식의 기초가액(세무상 장부가액)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연결과세소득은 각 구성법인의 기여 정도에 따라 구분되어 각자의 세무상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

산되며 동 금액에 모회사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은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된다.

다. 세율 및 연결부가세

앞서 제안한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하에서도 연결과세표준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연결부가세를 부과할 것인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세수감소를 완전히 보전하기 위한 연결부가세율을 지주비율별로 계산해 보면 <표 V-3>과 같다.

<표 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결납세로 인한 세수감소를 완전히 보전하기 위하여는 2.3% 내지 5.4%의 연결부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에

<표 V-3>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연결부가세율

(단위: 억원, %)

지주비율		기업그룹으로부터의 개별납세시 법인세수(A)	연결납세로 인한 세수감소(B)	연결부가세 1%당 세수증가(C)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연결부가세율(D)
100%	2000	26,179	5,169	750	6.9
	2001	29,384	2,698	953	2.8
95%	2000	46,420	6,263	1,434	4.4
	이상	52,228	3,302	1,747	1.9
80%	2000	55,085	9,465	1,629	5.8
	이상	60,130	3,702	2,015	1.8
50%	2000	84,982	12,075	2,604	4.6
	이상	65,075	5,497	2,128	2.6
평균	2000				5.4
	2001				2.3

주: C = (A - B)/28, D = B/C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른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세수감소를 전액 보전하는 연결부가세율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인 2%의 연결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 라. 법인세법 이외의 다른 세법과 관련 법률의 정비

### 1) 법인세법 이외의 다른 세법

연결납세제도는 기본적으로 법인세계산의 특례조치로서 법인세법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물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대신 별도의 세법을 제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연결납세제도는 현행 법인세법의 개별납세에 관한 규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법에 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연결납세제도가 법인세에 관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연결그룹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과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세법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도입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법상 연결그룹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세법에서도 반드시 같은 입장을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결납세제도의 취지가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인 기업그룹의 구성법인 간의 거래는 내부 거래로 보아 과세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세법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가) 국세기본법

모회사와 자회사는 주주와 주식발행법인의 관계이므로 어느 일방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국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 그러나 연결그룹

이 연결납세를 선택하였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것이 아니라 연결그룹 구성법인에게 부과된 조세에 대하여 다른 구성법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 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간의 거래도 과세거래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연결그룹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더라도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연결납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정비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개별 법인의 사업장간에는 적용되지만 연결그룹에의 구성법인 간에는 적용될 수 없는데 연결그룹이 연결납세를 선택하였다면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갈음하여 모회사에서의 총괄납부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 다) 지방세

연결그룹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인정한다면 지방세도 이에 따라 정비되어야 한다. 정비되어야 할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부동산 등의 자산거래에 대하여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과세되는데 연결납세를 선택한 연결그룹 구성원간의 자산거래에 대하여는 단일 경제적 실체 내부의 거래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논리로 종합토지세와 농업소득세 등 법인의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 연결납세를 선택한 연결그룹에 대하여는 연결그룹 전체가 보유한 토지 또는 농지를 기준으로 과세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조세특례제한법

연결그룹이 연결납세를 선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금액계산과 관련된 규정은 연결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와 아울러 연결납세를 선택하는 경우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인별로 적용하여서는 안되고 연결그룹 전체를 기준으로 재계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자회사에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중소기업에만 특별히 인정되는 각종 조세지원을 연결납세에서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연결납세제도가 모·자회사를 합쳐서 하나의 독립된 경제주체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모·자회사를 합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연결납세를 위한 개별과세소득을 산정하는 때 비록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적용은 배제해야 할 것이다. 즉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연결그룹 전체를 기준으로 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 마) 기타 사항

김중철·오윤택(2001)은 법인세법 이외의 다른 세법에서 연결납세와 관련하여 정비되어야 할 부분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sup>51)</sup>

- ① 주식의 포괄교환·이전을 통한 지주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교환비용 등을 불공정하게 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 ② 연결그룹에 속하는 법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매입세액공제로 인하여 큰 문제가 없으나 금융지주

51) 김중철·오윤택(2001), pp. 28~29.

회사의 경우에는 관리서비스기능을 독립시켜 자회사로 운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연결그룹의 단일실체 개념을 중시한다면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주식의 포괄·이전을 통하여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주식의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데 이에 대하여 비과세될 수 있도록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 ④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지방세법상 자회사가 취득한 부동산 등을 모회사인 지주회사가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연결그룹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본다면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모회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지주회사에도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결납세제도의 목적은 조세의 중립성에 있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지주회사제도의 목적은 기업집중과 불공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양자를 일치시키거나 연결하여 규정을 정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sup>52)</sup>

### 마.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의 예시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의 예시에서 사용한 가설의 사례에 의하여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설명하

---

52) 김종철·오윤택(2001), pp. 29~30.

기로 한다.

#### 1) 2003 사업연도

##### 가) 연결대상회사

소득통산형 연결납세방안에서 연결대상 자회사의 지주비율을 80% 이상으로 하고 연결부가세를 1% 과세한다고 가정하면 연결 그룹 구성회사는 모회사인 P사와 자회사 T사이다.

##### 나) 연결조정

소득통산형 연결납세방안에 의하여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연결조정이 필요하다

- ① 연결그룹의 다른 구성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은 소득계산시 제외하고 당해 수입배당 중 개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불산입한 세무조정을 제거하여 배당으로 인한 소득에의 영향을 모두 제거한다. 따라서 P사가 T사로부터 수취한 배당 40,000백만원을 연결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고 이에 대한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액 20,000백만원을 연결과세표준계산시 가산한다. 그러나 T사가 S사로부터 수취한 배당 및 이로 인한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은 S사가 연결대상이 아니므로 제거하지 아니한다.
- ② 재고자산거래로 인한 내부거래이익 25,000백만원은 당해 재고자산이 외부에 판매될 때까지 그 인식이 이연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결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한다. 그러나 전기 말에 발생한 내부거래이익은 지분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의 것이므로 조정할 필요가 없다.
- ③ P사가 T사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계상한 고정자산처분이익

5,000백만원은 내부거래이익으로 당해 재고자산이 외부에 판매될 때까지 그 인식이 이연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결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한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세무조정한 3,000백만원은 연결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한다.

- ④ T사가 P사에게 기계장치를 매각하고 계상한 고정자산처분 이익 10,000백만원은 내부거래이익으로 당해 기계장치가 외부에 판매될 때까지 그 인식이 이연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결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한다. 또한 P사가 당해 기계장치에 대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 3,000백만원(30,000백만원 ÷ 5년 × 6/12)은 연결그룹 입장에서 볼 때 과대계상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1,000백만원을 연결과세표준 계산시 가산한다.

$$(30,000\text{백만원} - 20,000\text{백만원}) \div 5\text{년} \times 6/12 = 1,000\text{백만원}$$

- ⑤ 접대비한도초과에 대한 세무조정은 연결그룹의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야 하므로 개별 기업이 행한 세무조정액 55백만원은 제거(연결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한 한도초과액을 연결과세표준 계산시 가산한다. 계산의 편의상 접대비는 모두 3월 이후에 지급되었다고 가정한다.

$$\begin{aligned} \text{접대비한도} &= 60\text{백만원} + (550,000\text{백만원} - 50,000\text{백만원}) \times 0.03\% = 210\text{백만원} \end{aligned}$$

$$\begin{aligned} \text{한도초과} &= \text{접대비지출액 } 310\text{백만원} - \text{한도 } 210\text{백만원} \\ &= 100\text{백만원} \end{aligned}$$

- ⑥ 연결그룹 구성회사간의 임대료 수수는 내부이익의 발생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조정이 필요없다.
- ⑦ P사와 T사의 이월결손금은 연결그룹 구성회사가 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연결과세소득 중 각 개별회사의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조정이 필요없다.

- ⑧ 모회사가 자회사주식을 사업연도중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전의 기간에 대한 자회사의 손익은 연결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되지 않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자회사가 개별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 사례에서는 P사가 T사 주식을 3월 1일에 취득하였으므로 연결과세표준 중 T사로 인한 과세표준의 2개월분은 연결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T사로 인한 과세표준은 T사의 개별과세표준에 T사의 손익항목에 대한 연결조정사항을 가감조정하여 계산한다.

$$\begin{aligned} \text{T사로 인한 연결과세표준} &= \text{T사의 개별과세표준 } 37,110 \\ &\text{백만원} - \text{고정자산처분이익 } 10,000\text{백만원} + \text{감가상각비} \\ &\text{과다계상액 } 1,000\text{백만원} - \text{개별접대비 한도초과 } 20\text{백만원} \\ &+ \text{연결접대비 한도초과액 중 개별접대비에 비례하여} \\ &\text{T사에게 안분되는 금액 } 35\text{백만원} = 28,125\text{백만원} \\ \text{연결과세표준에서 차감될 금액} &= 28,125\text{백만원} \times 2/12 \\ &= 4,687\text{백만원} \end{aligned}$$

#### 다) 연결정산표

##### 라) 자회사 주식의 기초가액(세무상 장부가액) 수정

소득통산형 연결납세방안에 의하여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회사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 및 세무상 자기자본을 수정하여야 한다. P사의 T사에 대한 투자주식은 취득가액이 200,000백만원이지만 2003년 말에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표 V-4> 연결정산표(2003 사업연도)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회 사 명			
	P	T	연결조정	연결납세
매출액	400,000	150,000		550,000
매출원가	(240,000)	(80,000)	(25,000)②	(345,000)
매출충이익	160,000	70,000		205,000
수입배당금	40,000	20,000	(40,000)①	20,000
수입이자	30,000	30,000		60,000
수입임차료	36,000			36,000
고정자산처분손익	5,000	10,000	(5,000)③ (10,000)④	-
급여와 임금	(50,000)	(20,000)		(70,000)
대손상각	(2,000)	(800)		(2,800)
임차료		(12,000)		(12,000)
지급이자	(15,000)	(18,000)		(33,000)
접대비	(200)	(110)		(310)
감가상각비	(10,000)	(8,000)	1,000④	(17,000)
법인세비용	(28,000)	(9,000)		(80,000)
장부상 당기순손익	165,800	62,090		105,890
세무조정				
수입배당 익금불산입	(20,000)	(10,000)	20,000①	(10,000)
법인세비용 손금불산입	28,000	9,000		80,000
부당행위 계산부인	3,000		(3,000)③	-
접대비 한도 초과	35	20	(55)⑤ 100⑤	100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76,835	61,110		175,990
이월결손금	(50,000)	(24,000)		(74,000)
취득 전 자회사손익				(4,687) <sup>2)</sup>
과세표준	126,835	37,110		97,303
세율	15%,27%	15%,27%		17%, 29% <sup>1)</sup>
법인세액	34,233	10,008		28,205

주: 1) 연결부가세 2%를 포함한다.

2) T사는 1월 및 2월분 소득 4,687백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세액을 2003 사업연도분으로서 개별납세신고하여야 한다.

$$4,687\text{백만원} \times 12/2 \times \text{세율}(15\%, 27\%) \times 2/12 = 1,263\text{백만원}$$

기초장부가액	200,000백만원
가산: 과세소득	23,438백만원 (= 28,125백만원 - 4,687백만원)
차감: 배당	40,000백만원
기말장부가액	183,438백만원

마) 개별 회사별 세무상 자기자본

세무상 장부가액은 연결납세가 해지되는 경우를 위하여 개별 회사별로 산정한다. 이를 위하여는 법인세부담액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 사례에서는 연결과세표준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배분하기로 한다.

T사에 배분되는 연결법인세액

$$\begin{aligned}
 &= 28,205\text{백만원} \times \frac{28,125\text{백만원} - 4,687\text{백만원}}{97,303\text{백만원}} \\
 &= 6,794\text{백만원}
 \end{aligned}$$

P사에 배분되는 연결법인세액

$$= 28,205\text{백만원} - 6,794\text{백만원} = 21,411\text{백만원}$$

P사의 세무상 자기자본: 450,000백만원 - 배당 70,000백만원  
 + 당기순이익 165,800백만원 + 당기유보증감 0 + 당기 손  
 익과대계상법인세 6,589백만원 = 552,389백만원

T사의 세무상 자기자본: 120,000백만원 - 배당 40,000백만  
 원 + 당기순이익 62,090백만원 + 당기유보증감 0 + 당기  
 손익과대계상법인세 2,206백만원 = 144,296백만원

2) 2004 사업연도

가) 연결대상회사

2003 사업연도에서와 같이 연결대상 자회사의 지주비율을 80% 이상으로 하고 연결부가세를 2% 과세한다고 가정하면 연결그룹 구성회사는 모회사인 P사와 자회사 T사뿐 아니라 2004 사업연도 부터는 S사와 U사도 포함하게 된다.

나) 연결조정

2004 사업연도에는 다음과 같은 연결조정이 필요하다

- ① 연결그룹의 다른 구성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과 당해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소거한다. 따라서 P사가 T사와 S사로부터 수취한 배당 81,000백만원과 T사가 S사와 U사로부터 수취한 배당 36,000백만원을 연결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고 이에 대한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액 40,500백만원 및 18,000백만원을 연결과세표준계산시 가산한다.
- ② 2003 사업연도에 이연시킨 재고자산거래로 인한 내부거래이익 25,000백만원은 당해 사업연도에 외부에 판매되어 실현되었으므로 이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연결과세표준 계산시 가산한다. 당해 사업연도 중 P사가 T사에게 20,000백만원의 이익을 가산하여 판매한 것은 당해 사업연도 중 외부에 판매되었으므로 내부거래이익의 제거는 필요하지 않다.
- ③ T사가 2003년에 P사로부터 구입한 토지를 40,000백만원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 2003 사업연도에 제거한 내부거래이익 5,000백만원을 인식하여야 하며 연결과세표준 계산시 가산한다.
- ④ P사가 T사로부터 2003년 중 구입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

각비는 연결그룹의 입장에서 2003 사업연도에서와 마찬가지로 과대계상되어 있는 것이므로 당해 과대계상액 2,000백만원(= (30,000백만원 - 20,000백만원) ÷ 5년)을 연결과세표준 계산시 가산한다.

- ⑤ 접대비 한도초과에 대한 세무조정은 연결그룹의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야 하므로 개별기업이 행한 세무조정액 45백만원은 제거(연결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한 한도초과액을 연결과세표준 계산시 가산한다. 계산의 편의상 접대비는 모두 3월 이후에 지급되었다고 가정한다.

$$\text{접대비 한도} = 60\text{백만원} + (1,100,000\text{백만원} - 50,000\text{백만원}) \times 0.03\% = 375\text{백만원}$$

$$\text{한도초과} = \text{접대비지출액 } 500\text{백만원} - \text{한도 } 375\text{백만원} = 125\text{백만원}$$

- ⑥ U사의 이월결손금은 U사가 연결그룹 구성회사이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연결과세소득 중 U사의 소득해당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T사의 당기 결손은 연결그룹의 다른 구성회사의 소득에서 제한없이 공제된다.

- ⑦ P사가 S사 주식을 2월 1일에 취득하였으므로 연결과세표준 중 S사로 인한 과세표준의 1개월분은 연결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begin{aligned} \text{S사로 인한 연결과세표준} &= \text{S사의 개별과세표준 } 51,920 \\ &\text{백만원} + \text{연결접대비 한도초과액 중 개별접대비에 비례} \\ &\text{하여 T사에게 안분되는 금액 } 20\text{백만원} = 51,940\text{백만원} \\ \text{연결과세표준에서 차감될 금액} &= 51,940\text{백만원} \times 1/12 \\ &= 4,328\text{백만원} \end{aligned}$$

다) 연결정산표

<표 V-5> 연결정산표(2004 사업연도)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회 사 명				연결조정	연결납세
	P	S	T	U		
매출액	500,000	300,000	200,000	100,000		1,100,000
매출원가	(280,000)	(160,000)	(180,000)	(45,000)	25,000②	(640,000)
매출총이익	220,000	140,000	20,000	55,000		460,000
수입배당금	81,000		36,000		(117,000)①	-
수입이자	35,000		5,000			40,000
수입임차료	36,000					36,000
고정자산처분손익			5,000		5,000③	10,000
급여와 임금	(50,000)	(45,000)	(35,000)	(15,000)		(145,000)
대손상각	(2,000)	(1,000)	(800)	(500)		(4,300)
임차료		(12,000)	(12,000)	(12,000)		(36,000)
지급이자	(15,000)	(10,000)	(18,000)	(5,000)		(48,000)
접대비	(200)	(80)	(120)	(100)		(500)
감가상각비	(10,000)	(20,000)	(8,000)	(5,000)	2,000④	(41,000)
법인세비용	(68,000)	(15,500)		(5,200)		(88,700)
장부상 당기순손익	226,800	36,420	(7,920)	12,200		182,500
세무조정						
수입배당						
익금불산입	(40,500)		(18,000)		58,500①	-
법인세비용	68,000	15,500		5,200		88,700
손금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	5		15	25	(45)⑤	125
					125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54,305	51,920	(25,905)	17,425		271,325
이월결손금				(14,560)		(14,560)
취득 전 자회사손익						(4,328) <sup>2)</sup>
과세표준	254,305	51,920	(25,905)	2,865		252,437
세율	15%,27%	15%,27%	15%,27%	15%,27%		17%, 29% <sup>1)</sup>
법인세액	68,650	14,006	-	762		73,195

주: 1) 연결부가세 2%를 포함한다.

2) S사는 1월분 소득 4,328백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세액을 2003 사업연도분으로서 개별납세신고하여야 한다.

$$4,328\text{백만원} \times 12 \times \text{세율}(15\%, 27\%) \times 1/12 = 1,168\text{백만원}$$

라) 자회사 주식의 기초가액수정

자회사 주식의 기초가액(세무상 장부가액)을 수정하기 위하여 우선 연결과세표준 252,437백만원을 연결그룹 구성회사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P사의 연결과세표준 = 개별과세표준 254,305백만원 + 양도자측 손익이연방식에 따른 내부이익의 실현 25,000백만원 - 수입배당금 소거 81,000백만원 + 내부이익의 실현 5,000백만원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소거 40,500백만원 - 접대비 한도초과 5백만원 + 연결접대비 한도초과액 중 개별접대비에 비례하여 T사에게 안분되는 금액 50백만원 = 243,850백만원
  - ② S사의 연결과세표준 = 개별과세표준 51,920백만원 + 연결접대비 한도초과액 중 개별접대비에 비례하여 T사에게 안분되는 금액 20백만원 - 모회사 취득전 손익 4,328백만원 = 47,612백만원
  - ③ T사의 연결과세표준 = 개별과세표준 (25,905)백만원 - 수입배당금 소거 36,000백만원 + 감가상각비 과대계상 2,000백만원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소거 18,000백만원 - 접대비 한도 초과 15백만원 + 연결접대비 한도초과액 중 개별접대비에 비례하여 T사에게 안분되는 금액 30백만원 = (41,890)백만원
  - ④ U사의 연결과세표준 = 개별과세표준 2,865백만원 - 접대비 한도 초과 25백만원 + 연결접대비 한도초과액 중 개별접대비에 비례하여 T사에게 안분되는 금액 25백만원 = 2,865백만원
- 자회사 주식의 기초가액은 사업연도 초의 기초장부가액에 당해 자회사의 과세소득 중 모회사 지분을 해당액을 가산하고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입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모자회사	P → T	P → S	T → S	T → U
기초장부가액	183,438백만원	85,000백만원	60,000백만원	80,000백만원
가산: 과세소득	(41,890)백만원	28,567백만원	19,045백만원	2,292백만원
차감: 배당수입	(45,000)백만원	(36,000)백만원	(24,000)백만원	(12,000)백만원
기말장부가액	96,548백만원	77,567백만원	55,045백만원	70,292백만원

마) 개별회사의 세무상 자기자본

2003 사업연도에서와 마찬가지로 개별회사의 세무상 자기자본을 산정하기 위하여 우선 연결법인세부담액을 연결그룹 구성회사별로 배분한다. 이 경우 T사는 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연결법인세부담액의 배분에서 제외한다.

P사에 배분되는 연결법인세액

$$= 73,195\text{백만원} \times \frac{243,850\text{백만원}}{243,850\text{백만원} + 47,612\text{백만원} + 2,865\text{백만원}}$$

$$= 60,642\text{백만원}$$

S사에 배분되는 연결법인세액

$$= 73,195\text{백만원} \times \frac{47,612\text{백만원}}{243,850\text{백만원} + 47,612\text{백만원} + 2,865\text{백만원}}$$

$$= 11,840\text{백만원}$$

U사에 배분되는 연결법인세액

$$= 73,195\text{백만원} \times \frac{2,865\text{백만원}}{243,850\text{백만원} + 47,612\text{백만원} + 2,865\text{백만원}}$$

$$= 713\text{백만원}$$

배분된 연결법인세액을 기초로 손익미(과대)계상법인세를 계산하여 세무상 자기자본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P사의 세무상 자기자본: 전기말 잔액 552,389백만원 - 배당

80,000백만원 + 당기순이익 226,800백만원 + 당기유보증감 0  
+ 당기 손익과대계상법인세 7,358백만원 = 706,547백만원

② S사의 세무상 자기자본 = 전기말잔액 192,382백만원 - 배  
당 60,000백만원 + 당기순이익 36,420백만원 + 당기유보증  
감 0 + 당기 손익과대계상법인세 3,660백만원 = 172,462백  
만원

③ T사의 세무상 자기자본: 144,296백만원 - 배당 45,000백만  
원 - 당기순손실 7,920백만원 + 당기유보증감 0 = 91,376  
백만원

④ U사의 세무상 자기자본 = 전기말잔액 45,430백만원 - 배당  
15,000백만원 + 당기순이익 12,200백만원 + 당기유보증감 0  
+ 당기 손익과대계상법인세 4,487백만원 = 47,117백만원

#### 4. 종합적 의견

이상에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형태의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와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각각 모색해 보았다. 제Ⅱ장과 제Ⅲ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소득통산형이 연결납세의 목적에 이론적으로 부합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손익대체형은 연결납세의 목적에 이론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손익대체형은 지분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간에 연결납세의 대상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납세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손익대체형이 연결납세를 단순·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소득통산형은 제도의 성격상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소득통산형은

지분비율을 충족하는 그룹기업들에 대해 모두 연결납세를 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제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유형이 우리나라에 더 적합한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결납세의 도입 목적에 비추어 보아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 중 어느 유형이 더 적합한지를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목적은 제Ⅱ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조세의 공평성 유지, 조세의 중립성 유지, 연결회계제도의 정착, 세제의 선진화 등이다.

먼저 조세의 공평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소득통산형이 더 적합한 유형이라고 판단된다. 조세의 공평성은 경제적으로는 단일기업이지만 법적으로는 독립된 수개의 법인이 모인 기업그룹의 전체 조세부담과 이 기업그룹이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될 때의 조세부담이 같아야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손익대체형은 지주비율을 기준으로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기업 모두가 연결납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기업 중에서 선택에 따라 일부만 연결납세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의 공평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조세의 중립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소득통산형이 더 적합한 유형이라고 판단된다. 기업조직의 형태에 따라 납세의 유·불리가 있다면 기업이 경영에 가장 효율적인 조직구조를 선택할 수 없게 되므로 조세의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손익대체형은 지주비율을 기준으로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기업 중에서 절세를 많이 할 수 있는 기업 간에만 연결납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많다. 이에 따라 손익대체형의 경우는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연결회계제도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소득통산

형이 더 적합한 유형이라고 판단된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있는 기업집단을 단일한 조직체계로 간주하여 모회사가 당해 기업집단의 재무상태나 경영성적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반면 연결납세제도는 집단으로서의 손익과 세액의 계산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자산, 부채의 계산 그 자체에는 직접적인 관심이 없는 것이지만,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있는 기업그룹을 단일한 조직체계로 간주한다는 면에서 연결재무제표와 맥을 같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집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필수적이며, 연결회계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는 연결재무제표의 정착을 위해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세제의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소득통산형이든 손익대체형이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OECD 회원국 중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 포르투갈, 멕시코, 룩셈부르크 등의 국가들이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영국, 독일,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핀란드 등의 국가들이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국은 자국의 세제, 조세행정, 납세자의 협력,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국에 적합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목적과 관련하여 생각해 본다면 대체로 손익대체형보다는 소득통산형이 대체로 우리나라에 더 적합한 제도라고 판단된다. 즉, 소득통산형은 연결납세의 목적에 이론적으로 부합하고, 조세의 공정성 유지, 조세의 중립성 유지, 그리고 연결회계제도의 정착이라는 각 측면에서도 손익대체형보다 더 적합한 제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다면 제3절에서 제안한 소득통산형 연결납세방안이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다.<sup>53)</sup>

그러나 우리나라에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소득통산형을 완벽히 갖추려면 세법이 너무 복잡하게 될 것이며, 세무당국의 행정비용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이다. 소득통산형은 기업그룹의 일체성을 중시하는 세제이므로 결손의 통산만을 하도록 하는 손익대체형과는 달리 내부거래손익의 이연, 연결그룹 구성회사간 수입배당의 제외,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수정 등에 대해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세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의 행정비용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연방세법규칙(IRC Regulation)에 규정하고 있는 연결납세 관련 내용이 우리나라 법인세법 전체보다도 더 분량이 많을 정도이다.

둘째,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완벽하게 갖추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면 앞서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내부거래손익의 이연, 연결그룹 구성회사 간 수입배당의 제외,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수정 등을 완벽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주회사제도의 도입 초창기와 달리 이제 정부도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납세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묵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

53) 제II장에서 살펴 본 김찬섭(1999), 이우택(2000), 한국공인회계사회(2001), 김종철·오윤택(2001)의 연구도 모두 소득통산형 연결납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가 최선의 방안이지만,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차선(second best)의 방안으로서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도 OECD 회원국 중에서 영국, 독일,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핀란드 등이 도입하고 있을 정도로 일반화된 제도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 중에서 어느 한 유형은 옳고 다른 한 유형은 틀린 것이라고 인정된 바는 없으며, 각국은 자국의 세제, 조세행정, 납세자의 협력,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국에 적합한 유형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세제의 선진화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만, 일본과 미국이 영국과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교류가 많고 우리나라의 세제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측면에서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문제는 남아 있다.

다음으로 손익대체형은 복잡한 세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무당국의 행정비용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제도라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통산형이 연결납세의 목적에 이론적으로 부합하고, 조세의 공평성 유지, 조세의 중립성 유지, 연결회계제도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손익대체형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손익대체형은 소득통산형에 비해 연결납세의 이론적 측면에는 덜 부합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복잡한 세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에 따라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세무당국의 행정비용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비해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게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를 차선(second best)의 방안으로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다면 제2절에서 제안한 손익대체형 연결납세방안이 적합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은 자회사의 손익을 모회사로 대체하여 모회사의 손익과 합산하여 연결과세소득과 세액을 산출하는 매우 간단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손익대체형 연결납세방안은 모회사와 자회사간에만 손익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그룹 입장에서는 모회사가 가장 절세를 많이 할 수 있는 자회사와 연결납세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더라도 소득통산형 연결납세방안과 비교해 보아 세수감소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더구나 손익대체형 연결납세방안의 경우는 결손만 통산할 수 있을 뿐, 소득통산형과는 달리 배당과 세나 내부미실현손익에 대한 과세를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 VI. 요약 및 결론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허용되면서부터였다. 정부도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지만,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 현재 부실기업의 퇴출을 촉진하고 있는 실정에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대기업이 부실 자회사를 지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연결납세제도를 악용하여 조세회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연결납세제도를 빠른 시일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이제는 지주회사제도의 도입 초창기와는 달리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체계와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세수 감소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추정해 보았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초기에 지주비율을 100%로 하는 경우 이 지주비율을 2000 회계연도에 적용하여 연결납세를 한다고 가정하면 5,169억원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01 회계연도에 적용하여 연결납세를 한다고 가정하면 2,698억원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결납세로 인한 세수감소는 2000년도의 법인세 세수 17조 8,784억원의 2.9%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며, 2001년의 법인세 세수 16조 9,751억원의 1.6%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연결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았다.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주비율을 100%로 할 경우 법인세 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세수가 2000년의 경우 750억원, 2001년의 경우 953억원 증가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2~5% 정도의 연결부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결부가세의 부과를 통해 연결납세로 인한 세수감소를 모두 보전하려 한다면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진다는 점과 미국과 일본 모두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초기에 2%의 연결부가세를 부과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2% 연결부가세를 제안하였다.

소득통산형은 미국에서 이미 85년 전부터 시행되었고 손익대체형은 영국에서 34년 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두 유형이 연결납세제도의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으로서 완전히 정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모두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의 두 유형 중의 하나를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도 새로운 유형의 연결납세제도를 모색하기보다는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와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를 다음과 같이 각각 모색해 보았다.

먼저 영국형이나 독일형보다 훨씬 더 간편한 형태의 손익대체형 연결납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연결범위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1)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의 범위는 지주비율 100%로 해야 할 것이다. 2) 지주비율을 충족하는 자회사 모두를 연결납세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원하는 자회사만 연결납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반드시 모회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모회사와 자회사간에만 연결납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외국자회사는 연결납세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둘째, 모·자회사 간에 단년도만 연결납세를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연결납세를 계속하도록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 과세연도가 다른 경우 사업연도의 대응기간에 안분하여 손익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과세연도를 통일할 필요는 없으며, 회계방법에 대해서는 연결그룹 구성회사별로 다른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손익대체 방법은 자회사의 이익 또는 손실을 모회사로 이전하여 모회사의 손실 또는 이익과 합산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하도록 한다.

다섯째, 자회사의 손익을 모회사에 대체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세액이 결정되면 모회사가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자회사의 이익을 모회사에 대체하여 모회사의 손실과 합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경우는 자회사도 연대납부의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회사의 손실을 모회사에 대체하여 모회사의 이익과 합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경우 자회사는 연대납부가 없는 것으로 한다.

여섯째, 연결납세로 인한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2%의 연결부가세를 부과한다.

다음으로 미국형보다 간편한 형태의 소득통산형 연결납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연결범위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1)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를 모두 연결납세하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다. 2) 외국자회사는 연결납세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3)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지주비율을 100%로 한정하고 최근 주식매수선택권제도 및 종업원지주제도가 부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연결납세의 적용 여부를 기업그룹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며, 계속적용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과세연도가 다른 경우 사업연도의 대응기간에 안분하여

연결하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과세연도를 통일할 필요는 없으며, 회계방법에 대해서는 각 회사에 따라 다른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득통산의 방법은 먼저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의 규정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개별과세소득에 대하여 연결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가하고, 연결계산에 필요한 수정이 가해진 개별과세소득의 합산액에 연결조정을 가하여 연결과세소득을 산정하고, 이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연결산출세액에서 연결기준으로 계산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연결세액을 산정하며 당해 연결세액을 개별법인에게 배분한다.

다섯째, 재고자산을 포함한 모든 내부거래를 내부거래손익의 이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양도자측 손익이연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연결결손금의 처리는 1) 결손이 과세소득보다 커서 통산의 결과 결손금이 남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세액은 0이 되고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다. 2) 연결그룹의 구성법인이 된 이후에도 당해 연결그룹이 연결납세신고를 선택하지 아니하여 각 구성법인들이 개별납세신고를 한 경우 각 구성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하여 그 이후에 연결납세를 하는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연결그룹 구성법인이 되기 전에 개별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기업의 과세소득으로 인하여 연결소득이 증가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모회사에서 결손이 발생한 이후에 모회사가 자회사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연결납세신고시 연결과세소득에서 당해 모회사의 결손이 제한적으로만 공제(연결과세소득 중 모회사 및 결손발생 당시에도 구성법인이었던 자회사로 인한 부분에 한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자회사의 손익발생 및 배당에 대하여 모회사의 자회사 주식에 대한 장부가액의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연결대상 자회사가 당해 자회사 주식을 매각할 때에 모회사에 실현된 손익이 주식매각손익으로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여덟째, 연결세액에 대해서는 연결그룹의 모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연결그룹 구성회사들은 연대납부의무를 지도록 한다.

아홉째, 연결납세로 인한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손익대체형에서와 같이 2%의 연결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손익대체형과 소득통산형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소득통산형이 연결납세의 목적에 이론적으로 부합하고, 조세의 공정성 유지, 조세의 중립성 유지, 연결회계제도의 정착, 세제의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완벽히 갖추려면 세법이 너무 복잡하게 되고 세무당국의 행정비용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너무 많이 소모될 것이라는 문제를 고려하여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를 차선(second best)의 방안으로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진수, 「일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내용과 시사점」, 『재정포럼』, 4월호, 한국조세연구원, 2002.
- \_\_\_\_\_,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향」, 『재정포럼』, 11월호, 한국조세연구원, 1999.
- \_\_\_\_\_, 『지주회사제도와 조세정책방향』, 정책보고서 99-03, 한국조세연구원, 1999.
- 김종철·오윤택,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연구』, 영화회계법인, 2001.
- 김찬섭, 『연결납세제도의 도입구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9.
- 이우택,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과 실행가능성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7호, 2001.
- \_\_\_\_\_,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과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26집, 한국조세연구소, 2000.
-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2002. 2/4분기.
- 최기호, 「연결납세제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실증 연구」, 『2001년도 동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회계학회, 2001.
-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도입방안』, 연구보고서, 2001.

- 한국조세연구소, 『독일의 법인세법』, 1999.
- 剛崎和雄・望月光南, 『日米對比 連結納税のポイント』, ぎょうせい, 2000.
- 白須信弘, 『アメリカ法人税法 詳解』, 中央経済社, 2002.
- 税理士法人トーマツ(編), 『詳解 連結納税 Q&A』, 清文社, 2002.
- 税制調査會, 『連結納税制度の基本的考え方』, 2001.
- 税制調査會, 『平成14年度の税制改正に関する答申』, 2001.
- 須田徹, 『アメリカの 税法』, 中央経済社, 1991.
- 租税研究協會, 『日本型連結納税制度について』, 2002.
- 日本 財務省, 『法人税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http://www.mof.go.jp>, 2002.
- 井上久彌・柳 裕治・矢内一好, 『法人税の計算と理論』, 税務研究會出版局, 2002.
- 井上久彌, 『企業集團税制の研究』, 中央経済社, 1995.
- 住田孝之, 『連結納税制度の導入に関する検討』, 商事法務, No. 1428, 1996.
- 増井良啓, 『持株會社と租税法』, 商事法務, No.1428, 1996.
- \_\_\_\_\_, 『連結納税制度の國際的側面』, ジュリスト, No.1104, 1997.
- 青山監査法人, 『總解説 連結納税制度: 分社化・持ち株會社の税務と會計』, 日本經濟新聞社, 1998.
- PwCコンサルティング(株) FMSグループ, 『連結納税システム』, 東洋經濟新報社, 2002.

- Bittker, I. Boris and James S. Eustice, *Federal Income Taxation of Corporations and Shareholders*, Warren Gorham & Lamont, 2002.
- Blumberg, Phillip I.; Strasser, Kurt A., “Problems of Parent and Subsidiary Corporations Under State Statutory Law”, *Little & Brown*, 1995. xxxix.
- Bowen, N. and Jon Golding(ed.), *Tolley’s Tax Legislation 1994–95*, Part 1 & Part 2, 1994.
- CCH, *British Master Tax Guide 1997–98*, 1997.
- Clive M. Schmitthoff & Frank Wooldridge, *Groups of Companies*, Sweet & Maxwell, 1991.
- Crestol, Jack, Kevin M. Hennessey and Richard F. Yates, *The Consolidated Tax Return*, Warren, Gorham & Lameont, 2002.
- Dolan, D. Kevin; Walsh, Michael F., “Use of Holding Companies in International Tax Planning”, *Taxes*, vol. 73, Dec. 1995.
- Kesti, J., and P. S. Andersen(ed.), *European Tax Handbook 1998*, IBFD, 1998.
- Lerner, Herbert J. and Richard S. Antes, *Federal Income Taxation of Corporations Filing Consolidated Returns*, Matthew & Company, Inc., 2000.
- Phillip I. Blumberg & Kurt A. Strasser, *The Law of Corporate Groups—Statutory Law(Specific)*, Little & Brown, 1992.
- Phillip I. Blumberg, *The Law of Corporate Groups—Statutory*

*Law(General)*, Little Brown, 1989.

RIA, *RIA's Internal Revenue Code & Regulations*, 2002.

Saunders, G., J. Scott and J. M. Watterston, *Corporation Tax*

*1997-98*, Tolley Publishing Co., 1997.

Sheffield, Jeffrey T., "Holding Company Formations", *Taxes*,

Vol. 64, Dec. 1986.

<국문요약>

##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김진수 · 이준규

기업회계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각국은 기업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모·자회사 간에 각 회사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연결납세제도는 현재 OECD 회원국들의 3분의 2 정도가 도입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기업과세제도이다. 한국도 기업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한국은 1997년에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법인세 세수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이 제도의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경영전략상 사업형태를 선택함에 있어서 조세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그 선택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정부도 가능한 빨리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형태의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와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를 각각 모색해 보았다. 연결납

세제도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소득통산형과 영국과 독일로 대표되는 손익대체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두 유형 중에서 현행 한국의 법인세제에 보다 가깝고 연결납세의 내용이 간단하고 조세회피행위에 의한 조세탈루를 쉽게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영국이나 독일의 손익대체형은 제도가 간단하다는 점에서는 우수하지만, 연결납세의 목적에 이론적으로 부합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소득통산형은 제도가 복잡하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기업집단의 경제적 일체성을 중시한다는 점, 손익상계, 결손공제, 내부손익이연 등을 포괄하여 손익대체형에 비해 이론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법인세제의 골격이 한국과 유사한 일본이 수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가진 후 2002 회계연도부터 미국의 소득통산형과 유사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사실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완벽히 갖추려면 세법이 복잡하게 되고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를 차선의 방안으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Kim, Jin Soo  
and June-Q Lee

There is a growing trend of setting international standard for the firm accounting system and each country is making effort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 The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is a corporate tax system, which derives a conglomerated corporate's tax base by summing up profits and losses of all the company that are unified as business conglomerate – the holding company and all the affiliated companies. This system is becoming an international standard, and reflecting this trend, more than two thirds of OECD member countries are operating this system. Korea also needs this system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 the corporate taxing system. Having operated the holding company system since 1999, Korea has not yet introduced the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The major reason for this reluctance is the concern about the large decrease in corporate tax revenue and the possibility that some firms use the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as a tool of tax evasion.

With all these unfavorable side effects, it is expected Korea will eventually introduce this system to maintain the tax neutrality that make business decisions be motivated by economic rather than tax considerations. Korean government recognized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the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by stating it will introduce the system in the near future.

This study proposes two types of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which are suitable for Korea; the one as the US type and the other as the German–UK type. Among these Korea must choose one that is simpler, easy to prevent tax evasion and leakage, and closer to the current Korean corporate tax system. In terms of simplicity, German–UK system has more attraction, but it is not fit for the purpose of the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Despite its complexity, the US type has merits in that it emphasizes the unity of business conglomerate, and has theoretical advantage because it can handle such concepts as offset of loss against profit, loss deduction, and deferral of gain or loss of intercompany transactions.

It is notable that Japan, which shares a similar corporate tax system to that of Korea, introduces the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of the US type, after several years of preparation period. Under the current system it would be better for Korea to adopt the US type of the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However, since the tax laws become complicated and administration costs and compliance costs become higher too much under the US type of the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it is possible for

Korea to adopt the German–UK type of the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as the second best policy

<著者略歷>

金 珍 洙

韓國外國語大學校 貿易學科 卒業  
美國 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經濟學 碩·博士  
現, 韓國租稅研究院 先任研究委員

李 俊 奎

建國大學校 經營學科 卒業  
美國 Chicago大 經營學 碩士(MBA)  
建國大學校 經營學 博士  
韓國公認會計士 및 美國公認會計士  
現, 韓國租稅研究院 招聘研究委員  
慶熙大學校 經營大學 教授

政策報告書 02-01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

2002年 9月 28日 印刷

2002年 9月 31日 發行

著 者 金珍洙·李俊奎

發行人 宋大熙

發行處 韓國租稅研究院

☐13☐8-☐77☐4 서울特別市 松坡區 可樂洞 79-6

電話 : 2186-2114(代), 팩시밀리 : 2186-2179

登 錄 1993年 7月 15日 第21-466號

組版및 (주) 천 세

印 刷

© 韓國租稅研究院 2002

ISBN 89-8191-218-1

---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8,000원